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2019. 12

BJFEZ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목 차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05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0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07
   가. 용도지역 / 07
   나. 용도지구 / 07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07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08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34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36
   가. 주택건설용지 / 36
   나. 상업·업무용지 / 58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66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변경)도(S=1/5,000) / 73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74
   가. 주택건설용지 / 74
   나. 상업·업무용지 / 80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90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05
가. 교통처리계획 / 105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107
다. 기타계획 / 109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12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 112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128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 133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52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 / 152
나.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153
다. 특별계획구역 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158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변경)도(S=1/5,000) / 158

■ 별첨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변경)도(S=1/5,000)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변경)도(S=1/5,000)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6,398,271	-	6,398,271	지식경제부 고시 제230호 (08.12.31)	1단계: 4,476,271㎡ 2단계: 1,922,00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5,000)

- 별첨 1-가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단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2단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2단계	
합계		6,398,271.0	1,607,058.3	964,780.1	1,904,432.6	1,922,000.0	-	-	-	-1,622,746.6	1,622,746.6	-	6,398,271.0	1,607,058.3	964,780.1	281,686.0	1,622,746.6	1,922,000.0	100.0
주거지역	소계	2,943,035.2	1,295,296.4	266,922.8	396,451.4	984,364.6	16,635.5	4,151.1	-1,291.9	-299,492.4	297,960.5	15,308.2	2,959,670.7	1,299,447.5	265,630.9	96,959.0	297,960.5	999,672.8	46.2
	제1종전용주거지역	39,291.1	3,072.4	809.1	35,409.6	-	-	-	-	-34,864.6	34,864.6	-	39,291.1	3,072.4	809.1	545.0	34,864.6	-	0.6
	제1종일반주거지역	449,912.9	86,302.6	161,104.5	25,188.3	177,317.5	7,471.3	4,150.6	-1,291.9	-19,827.3	15,673.1	8,766.8	457,384.2	90,453.2	159,812.6	5,361.0	15,673.1	186,084.3	7.2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7,327.4	668,446.2	54,461.1	208,427.7	675,992.4	-6,124.5	0.2	-	-147,718.7	147,838.3	-6,244.3	1,601,202.9	668,446.4	54,461.1	60,709.0	147,838.3	669,748.1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409,326.6	375,779.2	-	33,547.4	-	1,654.5	-	-	-9,727.4	11,381.9	-	410,981.1	375,779.2	-	23,820.0	11,381.9	-	6.4
	준주거지역	437,177.2	161,696.0	50,548.1	93,878.4	131,054.7	13,634.2	0.3	-	-87,354.4	88,202.6	12,785.7	450,811.4	161,696.3	50,548.1	6,524.0	88,202.6	143,840.4	7.0
상업지역	소계	1,899,710.8	132,778.9	615,433.7	492,804.2	658,694.0	-7,369.2	-	1,289.8	-416,852.2	408,198.1	-4.9	1,892,341.6	132,778.9	616,723.5	75,952.0	408,198.1	658,689.1	29.6
	중심상업지역	1,454,338.4	122,485.8	384,292.0	321,436.5	626,124.1	-1,009,519.7	-112,192.7	-153,150.3	-317,158.5	166,536.0	-593,554.2	444,818.7	10,293.1	231,141.7	4,278.0	166,536.0	32,569.9	7.0
	일반상업지역	445,372.4	10,293.1	231,141.7	171,367.7	32,569.9	1,002,150.5	112,192.7	154,440.1	-99,693.7	241,662.1	593,549.3	1,447,522.9	122,485.8	385,581.8	71,674.0	241,662.1	626,119.2	22.6
녹지지역	소계	1,555,525.0	311,761.9	697,857.3	1,507,981.2	937,635.4	-9,266.3	-136,930.0	-615,431.6	-1,399,206.2	916,588.0	-673,997.3	1,546,258.7	174,831.9	82,425.7	108,775.0	916,588.0	263,638.1	24.2
	자연녹지지역	1,555,525.0	311,761.9	697,857.3	1,507,981.2	937,635.4	-9,266.3	-136,930.0	-615,431.6	-1,399,206.2	916,588.0	-673,997.3	1,546,258.7	174,831.9	82,425.7	108,775.0	916,588.0	263,638.1	24.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단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2단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지구 단위계획구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39,291.1	3,072.4	809.1	35,409.6	-	39,291.1	3,072.4	809.1	545.0	34,864.6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43호(2019.07.31.)로 고시된 용도지역 오기사항 정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1단계 단계구분
	제1종일반주거지역	449,912.9	86,302.6	161,104.5	25,188.3	177,317.5	457,384.2	90,453.2	159,812.6	5,361.0	15,673.1	186,084.3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7,327.4	668,446.2	54,461.1	208,427.7	675,992.4	1,601,202.9	668,446.4	54,461.1	60,709.0	147,838.3	669,748.1	
	제3종일반주거지역	409,326.6	375,779.2	-	33,547.4	-	410,981.1	375,779.2	-	23,820.0	11,381.9	-	
	준주거지역	437,177.2	161,696.0	50,548.1	93,878.4	131,054.7	450,811.4	161,696.3	50,548.1	6,524.0	88,202.6	143,840.4	
	중심상업지역	1,454,338.4	122,485.8	384,292.0	321,436.5	626,124.1	444,818.7	10,293.1	231,141.7	4,278.0	166,536.0	32,569.9	
	일반상업지역	445,372.4	10,293.1	231,141.7	171,367.7	32,569.9	1,447,522.9	122,485.8	385,581.8	71,674.0	241,662.1	626,119.2	
	자연녹지지역	1,555,525.0	311,761.9	697,857.3	1,507,981.2	937,635.4	1,546,258.7	174,831.9	82,425.7	108,775.0	916,588.0	263,638.1	

나. 용도지구 : 해당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별첨 1-나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기정)

구분	합 계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단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단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단계
합계	389 (362)	113	111	40	125	59,973	18,312	15,546	6,532	19,583	1,314,826.0	414,166.8	270,053.7	198,158.5	432,447.0
광로	9 (5)	1	-	4	4	6,830	1,341	-	2,457	3,032	294,295.5	57,663.0	-	105,530.0	131,102.5
대로	18 (12)	7	2	6	3	9,369	5,639	1,649	1,105	976	298,537.9	173,001.0	53,563.0	38,406.6	33,567.3
중로	135 (121)	34	38	16	47	29,365	8,012	8,359	1,615	11,379	531,847.1	135,898.0	149,849.0	32,420.7	213,679.4
소로	227 (224)	71	71	14	71	14,409	3,320	5,538	1,355	4,196	133,287.5	29,318.5	52,411.0	12,548.0	39,010.0
기타(가감속차로 등)											56,858.0	18,286.3	14,230.7	9,253.2	15,087.8

구분	1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단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단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단계
합계	145 (132)	27	45	22	51	21,909	4,145	6,765	2,401	8,598	354,640.6	63,628.0	97,891.0	42,777.2	150,344.4
광로	-	-	-	-	-	-	-	-	-	-	-	-	-	-	-
대로	3 (2)	-	-	2	1	423	-	-	186	237	15,652.0	-	-	6,527.5	9,124.5
중로	36 (27)	5	6	10	15	10,090	1,706	2,344	1,136	4,904	225,028.6	39,238.0	53,681.0	25,459.7	106,649.9
소로	106 (103)	22	39	10	35	11,396	2,439	4,421	1,079	3,457	113,960.0	24,390.0	44,210.0	10,790.0	34,570.0

구분	2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단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단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단계
합계	99 (93)	23	40	10	26	20,952	6,649	6,759	1,290	6,254	441,264.4	161,836.0	123,301.0	37,151.1	118,976.3
광로	-	-	-	-	-	-	-	-	-	-	-	-	-	-	-
대로	10 (6)	3	1	4	2	5,526	2,964	904	919	739	190,545.9	100,776.0	33,448.0	31,879.1	24,442.8
중로	67 (65)	13	27	4	23	14,220	3,416	5,008	314	5,482	241,070.5	58,908.0	83,077.0	4,816.0	94,269.5
소로	22 (22)	7	12	2	1	1,206	269	847	57	33	9,648.0	2,152.0	6,776.0	456.0	264.0

구분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단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단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단계
합계	145 (137)	63	26	8	48	17,112	7,518	2,022	2,841	4,731	462,063.0	170,416.5	34,631.0	108,977.0	148,038.5
광로	9 (5)	1	-	4	4	6,830	1,341	-	2,457	3,032	294,295.5	57,663.0	-	105,530.0	131,102.5
대로	5 (4)	4	1	-	-	3,420	2,675	745	-	-	92,340.0	72,225.0	20,115.0	-	-
중로	32 (29)	16	5	2	9	5,055	2,890	1,007	165	993	65,748.0	37,752.0	13,091.0	2,145.0	12,760.0
소로	99 (99)	42	20	2	35	1,807	612	270	219	706	9,679.5	2,776.5	1,425.0	1,302.0	4,176.0

※ ( )는 단계별 구분 중복노선을 제외한 노선의 합계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합 계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1-4 단계	2 단계	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1-4 단계	2 단계	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1-4 단계	2 단계
합계	391 (362)	113	111	12	30	125	59,973	18,312	15,546	1,977	4,555	19,583	1,314,820.0	414,166.8	270,053.7	44,390.0	153,762.5	432,447.0
광로	9 (5)	1	-	-	4	4	6,830	1,341	-	-	2,457	3,032	294,295.5	57,663.0	-	-	105,530.0	131,102.5
대로	19 (12)	7	2	2	5	3	9,369	5,639	1,649	274	831	976	298,537.9	173,001.0	53,563.0	10,003.0	28,403.6	33,567.3
중로	136 (121)	34	38	4	13	47	29,365	8,012	8,359	1,001	614	11,379	531,847.1	135,898.0	149,849.0	21,543.0	10,877.7	213,679.4
소로	227 (224)	71	71	6	8	71	14,409	3,320	5,538	702	653	4,196	133,287.5	29,318.5	52,411.0	6,018.0	6,530.0	39,010.0
기타(가감속차로 등)													56,852.0	18,286.3	14,230.7	6,826.0	2,421.2	15,087.8

구분	1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1-4 단계	2 단계	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1-4 단계	2 단계	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1-4 단계	2 단계
합계	146 (132)	27	45	5	18	51	21,909	4,145	6,765	1,279	1,122	8,598	354,640.6	63,628.0	97,891.0	23,879.0	18,898.2	150,344.4
광로	-	-	-	-	-	-	-	-	-	-	-	-	-	-	-	-	-	-
대로	3 (2)	-	-	-	2	1	423	-	-	-	186	237	15,652.0	-	-	-	6,527.5	9,124.5
중로	37 (27)	5	6	3	8	15	10,090	1,706	2,344	853	283	4,904	225,028.6	39,238.0	53,681.0	19,619.0	5,840.7	106,649.9
소로	106 (103)	22	39	2	8	35	11,396	2,439	4,421	426	653	3,457	113,960.0	24,390.0	44,210.0	4,260.0	6,530.0	34,570.0

구분	2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1-4 단계	2 단계	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1-4 단계	2 단계	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1-4 단계	2 단계
합계	100 (93)	23	40	4	7	26	20,952	6,649	6,759	331	959	6,254	441,264.4	161,836.0	123,301.0	10,459.0	26,692.1	118,976.3
광로	-	-	-	-	-	-	-	-	-	-	-	-	-	-	-	-	-	-
대로	11 (6)	3	1	2	3	2	5,526	2,964	904	274	645	739	190,545.9	100,776.0	33,448.0	10,003.0	21,876.1	24,442.8
중로	67 (65)	13	27	-	4	23	14,220	3,416	5,008	-	314	5,482	241,070.5	58,908.0	83,077.0	-	4,816.0	94,269.5
소로	22 (22)	7	12	2	-	1	1,206	269	847	57	-	33	9,648.0	2,152.0	6,776.0	456.0	-	264.0

구분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1-4 단계	2 단계	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1-4 단계	2 단계	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1-4 단계	2 단계
합계	145 (137)	63	26	3	5	48	17,112	7,518	2,022	367	2,474	4,731	462,063.0	170,416.5	34,631.0	3,226.0	105,751.0	148,038.5
광로	9 (5)	1	-	-	4	4	6,830	1,341	-	-	2,457	3,032	294,295.5	57,663.0	-	-	105,530.0	131,102.5
대로	5 (4)	4	1	-	-	-	3,420	2,675	745	-	-	-	92,340.0	72,225.0	20,115.0	-	-	-
중로	32 (29)	16	5	1	1	9	5,055	2,890	1,007	148	17	993	65,748.0	37,752.0	13,091.0	1,924.0	221.0	12,760.0
소로	99 (99)	42	20	2	-	35	1,807	612	270	219	-	706	9,679.5	2,776.5	1,425.0	1,302.0	-	4,176.0

※ ( )는 단계별 구분 중복노선을 제외한 노선의 합계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	40~46	주간선도로	2,030	대로2-107	대로1-16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4단계
기정	광로	3	2	40~46	주간선도로	1,789	대로2-111	대로1-16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1341 1-4단계:285 2단계:163
기정	광로	3	3	42~45	주간선도로	1,154	광로3-4	지구계 북측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광로	3	4	42~45	주간선도로	1,257	광로3-5	광로3-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14 2단계:1,243
기정	광로	3	5	42	주간선도로	600	대로2-111	대로2-11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128 2단계:472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도로	181 (9,664)	제74호 광장	송정동 부산시계	일반도로		건고제379호 (81.10.12)	1-4단계
기정	대로	1	17	37~40	주간선도로	242	광로3-4	광로3-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5 2단계:237
기정	대로	2	107	34~40	주간선도로	1,133	지구계 남측	광로3-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904 1-3단계:229
기정	대로	2	110	34	주간선도로	910	지구계 동측	광로3-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대로	2	111	34	주간선도로	1,987	지구계 동측	광로3-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1,366 1-3단계:45 1-4단계:576
기정	대로	2	112	34	주간선도로	688	대로3-197	대로2-11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대로	2	113	32.6	주간선도로	245	광로3-5	광로3-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8 2단계:237
기정	대로	2	114	32.6~34	주간선도로	563	광로3-2	광로3-5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61 2단계:502
기정	대로	3	196	27	보조간선도로	515	대로3-197	대로2-11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대로	3	197	27	보조간선도로	2,032	대로2-107	대로2-11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1,287 1-2단계:745
기정	대로	3	198	27	보조간선도로	699	대로2-111	대로2-110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대로	3	199	27	보조간선도로	174	지구계 남측	대로3-197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1	461	23	집산도로	1,067	중로1-465	광로3-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477 1-3단계:590
기정	중로	1	462	23	집산도로	852	대로3-197	대로2-11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1	463	23	집산도로	109	대로3-197	제375호 연결녹지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93 1-3단계:16
기정	중로	1	464	20	집산도로	77	지구계 서측	중로1-465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1	465	23	집산도로	332	중로1-464	대로2-107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1	466	23	집산도로	247	중로1-461	대로2-107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3단계
기정	중로	1	467	23	집산도로	245	중로1-462	대로2-107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1	468	23	집산도로	361	중로1-462	대로2-11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1	469	23	집산도로	463	대로3-196	대로2-11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1	470	23	집산도로	475	지구계 동측	광로3-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468 1-4단계:7
기정	중로	1	471	23	집산도로	465	대로3-198	광로3-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1	472	23	집산도로	217	제1061호 근린공원	대로3-198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1	473	20.6	집산도로	481	중로 1-476	중로2-59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74	20.6	집산도로	143	제672호 완충녹지	중로2-60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1	475	20.3-20.6	집산도로	261	중로2-602	중로1-477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1	476	23.6	집산도로	524	광로3-3	광로3-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6 2단계:518
기정	중로	1	477	23.6	집산도로	567	광로3-2	광로3-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16 2단계:551
기정	중로	1	478	20.6	집산도로	100	중로1-479	중로1-47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1	479	20.6	집산도로	773	중로1-480	중로1-480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1	480	23.6	집산도로	519	광로3-3	광로3-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5 2단계:514
기정	중로	1	481	20	집산도로	262	중로1-477	중로2-60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1	482	20	집산도로	331	중로2-604	광로3-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1	483	23.6	집산도로	243	광로3-4	광로3-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9 2단계:234
기정	중로	1	484	20	집산도로	369	광로3-4	대로2-11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1	485	20.5	집산도로	37	광로3-2	중로2-605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17 2단계:20
기정	중로	1	486	23.6	집산도로	281	광로3-5	대로2-11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6 2단계:275
기정	중로	1	487	20	집산도로	289	대로2-114	대로2-11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217 2단계:72
기정	중로	2	550	16	집산도로	383	중로1-464	중로1-46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51	16	집산도로	253	중로2-550	중로1-465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52	16	집산도로	162	중로2-553	중로1-46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53	16	집산도로	527	중로1-461	중로1-46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54	18	집산도로	243	중로1-462	대로2-107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55	18	집산도로	391	중로1-462	대로3-197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56	18	집산도로	201	중로2-555	중로1-46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57	16	집산도로	178	중로2-558	중로2-558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58	16	집산도로	420	중로1-465	중로1-465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59	18	집산도로	620	대로3-197	대로3-197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61	18	집산도로	205	중로2-562	광로3-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2	562	18	집산도로	615	중로1-470	대로2-110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2	563	16	집산도로	407	중로2-562	대로2-110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33 1-2단계:374
기정	중로	2	564	18	집산도로	383	중로1-471	대로2-110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2	565	18	집산도로	293	중로1-471	대로2-11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2	566	16	집산도로	201	중로2-565	광로3-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2	567	16	집산도로	245	중로2-565	대로3-198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2	568	16	집산도로	187	제1061호 근린공원	대로3-198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569	16	집산도로	204	중로2-572	대로3-196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2	570	16	집산도로	245	중로2-572	대로3-197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2	571	16	집산도로	175	제1062호 근린공원	대로3-197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2	572	18	집산도로	427	대로3-197	대로2-11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2	573	18	집산도로	203	중로2-572	대로3-196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2	574	15	집산도로	44	지구계 동측	중로2-56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75	15	특수도로	46	중로2-550	중로2-551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76	15	특수도로	46	중로2-551	중로1-461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77	15	특수도로	138	중로1-461	중로2-578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78	15	특수도로	25	중로2-577	중로2-553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79	15	특수도로	69	중로2-553	대로2-107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80	15	특수도로	50	제372호 연결녹지	중로2-553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81	15	특수도로	64	중로2-553	중로2-552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82	15	특수도로	38	중로2-552	중로2-577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83	15	특수도로	38	중로2-577	중로2-553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84	15	특수도로	65	중로2-553	중로1-465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85	15	특수도로	42	중로1-465	중로2-557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86	15	특수도로	65	중로2-557	중로2-558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87	15	특수도로	51	중로2-558	제375호 연결녹지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2	588	15	집산도로	66	제131호 전기공급 설비시설	광로3-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4단계
기정	중로	2	589	15	집산도로	102	중로2-588	제877호 근린공원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4단계
기정	중로	2	590	18	집산도로	410	중로1-468	중로1-46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4.4.16)	1-2단계
기정	중로	2	591	16	집산도로	65	대로2-107	중로2-55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58호 (15.10.21)	1-2단계
기정	중로	2	592	18	집산도로	90	중로2-594	광로3-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593	18	집산도로	149	중로1-473	중로2-59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594	16	집산도로	756	중로1-473	중로1-47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595	16	집산도로	52	소로1-220	중3-489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596	16	집산도로	114	중로3-489	중로2-597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597	18	집산도로	246	광로3-3	중로1-47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598	16	집산도로	248	광로3-3	중로1-47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599	16	집산도로	221	소로3-500	중로1-47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600	16	집산도로	201	중로2-611	중로1-47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601	16	집산도로	91	중로2-600	중로2-60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602	18	집산도로	526	광로3-2	광로3-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603	19	집산도로	255	제677호완충녹지	중로1-475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604	18	집산도로	515	중로2-605	광로3-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605	18	집산도로	351	제670호연결녹지	광로3-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606	18	집산도로	277	중로1-482	광로3-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607	18	집산도로	369	광로3-4	대로2-11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608	16	집산도로	331	중로2-609	중로2-609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609	19.5	집산도로	267	광로3-5	중로1-48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610	16	집산도로	319	중로2-609	중로2-609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106 2단계:213
기정	중로	2	611	16	특수도로	22	중로2-600	광로3-2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612	15	특수도로	35	광로3-5	중로2-608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613	15	특수도로	80	중로2-608	중로2-609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614	15	특수도로	73	중로2-609	중로2-610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2	615	15	특수도로	40	중로2-610	대로2-111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
기정	중로	3	466	13	집산도로	318	중로2-550	중로1-46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3	468	13	집산도로	290	중로1-470	광로3-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273 1-4단계:17
기정	중로	3	469	13	집산도로	189	제383호 완충녹지	중로3-468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3	470	13	집산도로	195	소로1-172	중로1-470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3	471	13	집산도로	109	중로3-470	중로2-56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중로	3	472	13	집산도로	153	지구계 동측	대로2-110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33 1-2단계:120
기정	중로	3	473	13	집산도로	205	중로3-472	중로2-56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3	474	13	집산도로	304	지구계 동측	중로3-47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39 1-2단계:265
기정	중로	3	475	13	집산도로	245	중로2-564	대로3-198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3	476	13	집산도로	229	중로3-478	대로3-198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3	477	13	집산도로	212	중로3-478	대로3-198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3	478	13	집산도로	361	중로3-484	중로1-47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3	479	13	집산도로	234	소로2-736	중로2-57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3	480	13	집산도로	131	소로1-209	대로3-197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중로	3	483	13	집산도로	251	중로2-563	중로2-56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중로	3	484	13	집산도로	247	중로3-478	대로3-19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485	13	집산도로	32	소로1-209	대로3-197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중로	3	486	14	집산도로	182	명지동 3404	대로3-197	일반도로		경자청고제58호 (15.10.21)	1-1단계
기정	중로	3	487	13	집산도로	148	중로1-461	소로1-21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58호 (15.10.21)	1-3단계
기정	중로	3	488	13	집산도로	27	소로1-210	소로1-209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중로	3	489	14	집산도로	172	소로1-221	중로1-47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3	490	13	집산도로	89	중로2-598	중로2-599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3	491	13	집산도로	23	중로2-599	중로1-47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3	492	12	집산도로	90	중로2-598	중로2-599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3	493	14	집산도로	115	소로1-230	중로2-60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3	494	14	집산도로	67	중로2-603	중로2-60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3	495	12	집산도로	158	중로2-603	중로3-49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3	496	12	집산도로	255	소로1-242	중로1-475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중로	3	497	13	집산도로	24	중로3-496	중로1-477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5	10	국지도로	18 (89)	지구계 동측	제423호 학교	일반도로		부고제2006-454호 (06.12.27)	1-1단계
기정	소로	1	150	10	국지도로	143	소로1-175	소로1-17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소로	1	151	10	국지도로	118	소로3-452	중로3-484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소로	1	152	10	국지도로	68	소로1-154	소로1-15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소로	1	153	10	국지도로	136	중로3-484	중로3-476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소로	1	154	10	국지도로	136	중로3-484	중로3-476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소로	1	155	10	국지도로	52	중로3-477	중로1-47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소로	1	156	10	국지도로	268	중로1-472	대로3-198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4단계
기정	소로	1	159	10	국지도로	240	중로2-568	중로1-47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4단계
기정	소로	1	160	10	국지도로	99	중로3-480	중로2-57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소로	1	161	10	국지도로	147	소로1-209	중로3-480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소로	1	162	10	국지도로	91	제877호 근린공원	광로3-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63	10	국지도로	180	중로3-466	중로3-46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64	10	국지도로	96	소로1-163	중로3-46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65	10	국지도로	206	소로1-168	중로3-46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66	10	국지도로	40	소로1-165	소로1-16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67	10	국지도로	48	소로1-168	소로1-165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68	10	국지도로	497	중로3-468	중로3-46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69	10	국지도로	86	소로1-171	중로3-46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70	10	국지도로	106	소로1-169	중로3-46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1	171	10	국지도로	117	소로2-731	중로3-46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1	172	10	국지도로	162	소로3-428	소로1-215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73	10	국지도로	15	지구계 동측	소로1-150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74	10	국지도로	38	제884호 어린이공원	소로1-150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75	10	국지도로	353	중로2-563	중로2-56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76	10	국지도로	154	소로1-177	소로1-17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77	10	국지도로	69	소로1-175	소로1-17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78	10	국지도로	99	소로1-175	중로2-56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79	10	국지도로	82	소로1-182	소로1-180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80	10	국지도로	101	소로1-175	중로2-56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81	10	국지도로	82	소로1-183	소로1-180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82	10	국지도로	68	소로1-180	소로1-17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83	10	국지도로	69	소로1-180	소로1-175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84	10	국지도로	78	소로3-451	소로1-189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85	10	국지도로	68	소로1-191	소로1-189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86	10	국지도로	67	소로1-191	중로2-56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87	10	국지도로	77	소로1-184	중로3-48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88	10	국지도로	75	소로1-184	중로3-48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89	10	국지도로	103	중로3-483	중로2-56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90	10	국지도로	75	소로1-185	중로3-48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91	10	국지도로	103	중로3-483	중로2-56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92	10	국지도로	67	소로1-191	중로2-56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93	10	국지도로	116	중로3-473	중로2-57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94	10	국지도로	54	소로1-196	소로1-19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95	10	국지도로	54	소로1-196	소로1-19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96	10	국지도로	250	중로3-473	중로3-47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97	10	국지도로	92	소로1-198	중로3-47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98	10	국지도로	87	소로1-196	중로3-47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199	10	국지도로	201	중로3-474	중로3-47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1	200	10	국지도로	108	소로1-202	중로3-48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1	201	10	국지도로	108	소로1-152	중로3-48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02	10	국지도로	70	소로1-153	소로1-15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1	203	10	국지도로	53	소로1-154	중로3-47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1	204	10	국지도로	47	소로1-154	중로3-47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1	205	10	국지도로	99	중로3-480	중로2-57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1	206	10	국지도로	99	중로3-480	중로2-57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1	207	10	국지도로	51	소로1-161	중로3-480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1	209	10	국지도로	277	중로2-571	중로3-485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1	210	10	국지도로	347	소로1-209	중로2-57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1	211	10	국지도로	97	소로3-487	중로2-57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1	213	10	국지도로	137	광로3-1	중로3-487	일반도로		경자청고제58호 (15.10.21)	1-3단계
기정	소로	1	214	10	국지도로	52	소로1-168	소로1-165	일반도로		경자청고제58호 (15.10.21)	1-2단계
기정	소로	1	215	10	국지도로	190	소로1-150	중로3-470	일반도로		경자청고제58호 (15.10.21)	1-2단계
기정	소로	1	216	10	국지도로	19	소로1-175	지구계 동측	일반도로		경자청고제58호 (15.10.21)	1-2단계
기정	소로	1	219	10	국지도로	289	중로1-463	명지동 2795-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5호 (16.6.15)	1-3단계
기정	소로	1	220	10	국지도로	478	중로3-489	중로2-59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21	10	국지도로	92	소로1-220	소로1-22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22	10	국지도로	75	소로1-224	중로2-59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23	10	국지도로	77	소로1-220	중로2-59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24	10	국지도로	169	중로3-489	중로2-59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25	10	국지도로	115	중로2-597	중로2-59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26	10	국지도로	115	중로2-597	중로2-59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27	10	국지도로	89	중로2-598	중로2-599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28	10	국지도로	78	중로1-227	중로3-490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29	10	국지도로	78	중로3-492	중로3-490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30	10	국지도로	319	소로1-233	소로1-23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31	10	국지도로	58	소로1-230	소로1-23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32	10	국지도로	50	소로1-230	소로1-23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33	10	국지도로	122	소로3-519	중로3-49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34	10	국지도로	104	중로3-493	중로1-47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35	10	국지도로	157	소로1-233	중로3-49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36	10	국지도로	124	중로3-493	소로1-23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37	10	국지도로	15	소로1-238	중로1-47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38	10	국지도로	230	소로1-240	소로1-240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39	10	국지도로	57	소로1-238	소로1-23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40	10	국지도로	106	중로2-600	중로2-60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41	10	국지도로	125	소로1-240	소로1-240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42	10	국지도로	139	중로3-496	중로2-60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43	10	국지도로	20	소로1-251	중로2-60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44	10	국지도로	20	소로1-252	중로2-60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45	10	국지도로	20	소로1-254	중로2-610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46	10	국지도로	20	소로1-255	중로2-610	일반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
기정	소로	1	247	10	특수도로	121	중로2-594	지구계 북측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48	10	특수도로	23	중로2-594	중로1-476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49	10	특수도로	99	중로1-479	중로1-476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50	10	특수도로	99	중로1-479	중로1-476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51	10	특수도로	15	소로1-243	광로3-5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52	10	특수도로	15	소로1-244	광로3-5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1	253	10	특수도로	58	중로2-610	제137호 광장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
기정	소로	1	254	10	특수도로	20	소로1-245	대로2-111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12 2단계:8
기정	소로	1	255	10	특수도로	20	소로1-246	대로2-111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
기정	소로	1	256	10	특수도로	40	중로2-605	광로3-2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17 2단계:23
기정	소로	1	257	10	특수도로	40	중로2-607	광로3-2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1-4단계:18 2단계:22
기정	소로	2	718	8	국지도로	87	지구계 동측	중로3-474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소로	2	719	8	국지도로	107	소로1-211	중로3-479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소로	2	720	8	특수도로	49	제372호 연결녹지	중로2-554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소로	2	721	8	특수도로	48	중로2-554	소로2-722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소로	2	722	8	특수도로	242	대로2-107	중로1-462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소로	2	723	8	특수도로	104	중로2-555	중로2-556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소로	2	724	8	특수도로	97	중로1-462	소로2-723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소로	2	725	8	특수도로	97	소로2-723	중로2-555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소로	2	727	8	특수도로	28	소로1-168	제136호 광장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3단계
기정	소로	2	728	8	특수도로	29	제136호 광장	소로1-168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3단계
기정	소로	2	729	8	특수도로	10	소로1-168	지구계 동측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소로	2	730	8	특수도로	10	소로1-168	지구계 동측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731	8	특수도로	26	광로3-2	소로1-171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소로	2	732	8	특수도로	40	중로3-468	소로1-170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소로	2	733	8	특수도로	36	소로1-170	소로1-171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소로	2	734	8	특수도로	30	소로1-171	중로1-470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소로	2	735	8	특수도로	20	중로3-474	제375호 연결녹지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소로	2	736	8	특수도로	10	중로3-479	대로3-197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소로	2	737	8	특수도로	17	제877호 근린공원	중로3-466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소로	2	738	8	특수도로	20	소로1-163	제372호 연결녹지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소로	2	741	8	특수도로	66	중로2-590	대로2-111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6호 (14.4.16)	1-2단계
기정	소로	2	742	8	특수도로	33	중로2-600	지구계북측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428	6	국지도로	21	소로1-172	지구계 동측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소로	3	429	6	특수도로	24	소로1-196	중로3-472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소로	3	430	6	특수도로	20	중로3-472	소로1-199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2단계
기정	소로	3	431	6	특수도로	10	소로3-447	소로1-175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3	432	6	특수도로	10	소로3-448	소로1-175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3	433	6	특수도로	10	소로3-449	중로2-562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3	434	6	특수도로	10	소로3-450	중로2-562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3	435	6	특수도로	10	소로3-451	중로2-562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3	436	6	특수도로	24	중로3-483	대로2-110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3	437	6	특수도로	21	중로3-483	대로2-110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3	438	6	특수도로	20	중로3-473	대로2-110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3	439	6	특수도로	23	중로3-484	대로2-110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3	440	6	국지도로	20	중로3-484	대로2-110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3	441	6	특수도로	23	소로1-151	대로3-198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3	442	6	특수도로	24	소로3-452	중로3-476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3	443	6	특수도로	48	제881호 어린이공원	중로3-479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3	444	6	특수도로	20	소로2-719	중로2-572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3	445	6	특수도로	25	소로1-209	소로1-161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3	446	6	특수도로	26	소로1-210	소로1-209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1단계
기정	소로	3	447	6	국지도로	8	소로3-431	소로1-179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3	448	6	국지도로	10	소로3-432	소로1-18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3	449	6	국지도로	8	소로3-433	소로1-17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50	6	국지도로	8	소로3-434	소로1-17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3	451	6	국지도로	8	소로3-435	소로1-18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3	452	6	국지도로	8	소로3-442	소로1-15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1-2단계
기정	소로	3	453	4	국지도로	36	소로1-172	지구계 동측	일반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2단계
기정	소로	3	454	3	특수도로	12	제423호 학교	중로3-468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55	3	특수도로	10	중로1-470	명지동 241-9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2단계
기정	소로	3	456	3	특수도로	10	중로1-470	명지동 3325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57	3	특수도로	12	광로3-2	명지동 3325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58	3	특수도로	15	광로3-2	명지동 3328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59	3	특수도로	12	대로2-110	명지동 3328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60	3	특수도로	10	중로2-570	명지동 342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61	3	특수도로	10	중로2-569	명지동 3415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62	3	특수도로	10	대로3-196	명지동 3415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63	3	특수도로	10	대로3-196	명지동 3417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64	3	특수도로	14	대로2-111	명지동 3400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65	3.3	특수도로	15	대로2-111	명지동 3399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시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66	3	특수도로	10	대로3-196	명지동 3400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67	3	특수도로	9	대로3-196	명지동 3404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68	3	특수도로	10	대로3-196	제482호 학교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69	3	특수도로	4	대로3-198	제480호 학교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3단계
기정	소로	3	470	3	특수도로	7	대로3-198	명지동 3361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71	3	특수도로	10	중로1-471	명지동 3361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72	3	특수도로	10	중로2-567	명지동 3361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73	3	특수도로	10	중로1-471	명지동 3354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74	3	특수도로	15	광로3-2	명지동 3354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75	3	특수도로	10	중로2-566	명지동 3354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78	6	특수도로	7	대로3-198	제477호 학교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79	3	특수도로	15	대로2-110	명지동 3347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80	3	특수도로	10	대로3-198	명지동 3347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81	3	특수도로	7	대로3-198	명지동 3350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82	3	특수도로	8	대로3-198	명지동 3350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83	3	특수도로	12	대로2-110	명지동 334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84	3	특수도로	15	광로3-2	명지동 334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85	6	특수도로	15	광로3-2	명지동 3344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86	3	특수도로	12	광로3-2	명지동 3344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10호 (15.3.25)	1-1단계
기정	소로	3	487	6	특수도로	8	소로1-211	대로3-197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1-1단계
기정	소로	3	488	6	특수도로	10	소로3-490	중로2-562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58호 (15.10.21)	1-2단계
기정	소로	3	489	6	특수도로	10	소로3-491	중로2-562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58호 (15.10.21)	1-2단계
기정	소로	3	490	6	국지도로	8	소로3-488	소로1-215	일반도로		경자청고제58호 (15.10.21)	1-2단계
기정	소로	3	491	6	국지도로	8	소로3-489	소로1-215	일반도로		경자청고제58호 (15.10.21)	1-2단계
기정	소로	3	494	6	국지도로	215	중로1-463	명지동 2755-1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5호 (16.6.15)	1-3단계
기정	소로	3	495	3	특수도로	31	중로3-474	소로1-199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5호 (16.6.15)	1-2단계
기정	소로	3	496	6	국지도로	11	소로3-509	소로1-220	국지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497	6	국지도로	14	제671호 완충녹지	소로1-220	국지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498	6	국지도로	10	소로3-514	소로1-224	국지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499	6	국지도로	10	소로3-515	소로1-220	국지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00	6	국지도로	12	소로3-518	중로2-599	국지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01	6	국지도로	10	소로3-520	소로1-230	국지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02	6	국지도로	11	소로3-522	소로1-230	국지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03	6	국지도로	10	소로3-523	소로1-235	국지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04	6	국지도로	10	소로3-524	소로1-236	국지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05	6	국지도로	10	소로3-526	소로1-238	국지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06	6	국지도로	17	소로3-527	소로1-241	국지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07	6	국지도로	11	소로3-528	소로1-238	국지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08	6	국지도로	11	소로3-529	중로3-495	국지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09	6	특수도로	70	소로3-496	지구계 북측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10	6	특수도로	80	소로1-220	지구계 북측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11	5	특수도로	30	소로1-220	중로1-47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12	5	특수도로	30	소로1-224	중로1-47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13	6	특수도로	30	소로1-220	광로3-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14	6	특수도로	10	소로3-498	중로2-597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15	6	특수도로	10	소로3-499	중로2-597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16	6	특수도로	30	소로1-225	소로1-226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17	6	특수도로	30	소로1-226	광로3-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518	6	특수도로	12	소로3-500	광로3-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19	6	특수도로	37	소로1-233	광로3-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20	6	특수도로	11	소로3-501	제672호 완충녹지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21	6	특수도로	20	소로1-230	제672호 완충녹지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22	6	특수도로	10	소로3-502	제672호 완충녹지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23	6	특수도로	8	소로3-503	중로2-602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24	6	특수도로	8	소로3-504	중로2-602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25	6	특수도로	33	중로2-600	지구계 북측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26	6	특수도로	8	소로3-505	중로2-600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27	6	특수도로	9	소로3-506	중로2-601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28	6	특수도로	8	소로3-507	중로2-602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29	6	특수도로	8	소로3-508	중로2-602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기정	소로	3	530	6	특수도로	67	중로2-602	중로2-60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43호 (19.07.31)	2단계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6,821.5	-	46,821.5		
기정	573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024-2일원	1,379.0	-	1,379.0	지고제230호 (08.12.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1-3단계
기정	574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587-1일원	2,506.0	-	2,506.0	지고제230호 (08.12.31)	일반상업지역 1-2단계
기정	575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592-1일원	3,234.1	-	3,234.1	지고제230호 (08.12.31)	일반상업지역 1-2단계
기정	578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603-8일원	4,463.6	-	4,463.6	지고제230호 (08.12.31)	일반상업지역 1-2단계
기정	580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459	1,643.0	-	1,643.0	지고제230호 (08.12.31)	준주거지역 1-1단계
기정	582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412-6	1,818.1	-	1,818.1	지고제230호 (08.12.31)	일반상업지역 1-1단계
기정	583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358-1	1,818.9	-	1,818.9	지고제230호 (08.12.31)	일반상업지역 1-1단계
기정	585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388-1	1,024.6	-	1,024.6	지고제230호 (08.12.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단계
기정	586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368-1	706.1	-	706.1	지고제230호 (08.12.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1-1단계
기정	587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374-1	706.3	-	706.3	지고제230호 (08.12.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1-1단계
기정	588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520-5일원	669.5	-	669.5	지고제230호 (08.12.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단계
기정	589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517-4일원	430.3	-	430.3	지고제230호 (08.12.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단계
기정	590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494-3일원	567.7	-	567.7	지고제230호 (08.12.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단계
기정	591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484-1일원	1,397.0	-	1,397.0	지고제230호 (08.12.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1-2단계
기정	592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321-2	2,184.5	-	2,184.5	지고제230호 (08.12.31)	준주거지역 1-1단계
기정	594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462-1일원	1,324.9	-	1,324.9	지고제230호 (08.12.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단계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906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503-5일원	590.8	-	590.8	경자청고제33호 (13.7.24)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단계
기정	907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507-5일원	590.9	-	590.9	경자청고제33호 (13.7.24)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단계
기정	950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597-5일원	2,308.2	-	2,308.2	경자청고제58호 (15.10.21)	일반상업지역 1-2단계
기정	951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97-6일원	1,123.0	-	1,123.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2단계
기정	952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533-9일원	609.0	-	609.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2단계
기정	953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522-4일원	1,647.0	-	1,647.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2단계
기정	954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602-6일원	1,257.0	-	1,257.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2단계
기정	955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722-3일원	2,471.0	-	2,471.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일반상업지역 2단계
기정	956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678-6일원	2,895.0	-	2,895.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일반상업지역 2단계
기정	957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074-6일원	2,120.0	-	2,120.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일반상업지역 1-4단계:1,016 2단계:1,104
기정	958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876-4일원	2,120.0	-	2,120.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일반상업지역 1-4단계:957 2단계:1,163
기정	959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972-14일원	3,216.0	-	3,216.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일반상업지역 1-4단계:427 2단계:2,789

3) 항만(변경없음)

■ 항만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885.0	-	10,885.0		
기정	1	항만 (신전항)	어항	-	강서구 명지동 2033-7일원	10,885.0	-	10,885.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자연녹지지역 1-3단계

■ 항만 (신전항) 조성계획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0,885	100.0	
야 적 장	8,303	76.3	
위 판 장	1,639	15.1	
복 지 회 관	287	2.6	
도 로	656	6.0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광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993.0	-	12,993.0		
기정	136	광장	일반 광장	강서구 명지동 367-3일원	11,295.0	-	11,295.0	지고제230호 (08.12.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1-4단계
기정	137	광장	일반 광장	강서구 명지동 977-3일원	1,698.0	-	1,698.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일반상업지역 1-4단계:1,665 2단계:33

2) 녹지(변경없음)

■ 녹지 총괄표

구 분	시설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3	-	23	455,740.9	-	455,740.9	
연결녹지	7	-	7	216,393.2	-	216,393.2	
완충녹지	16	-	16	239,347.7	-	239,347.7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55,740.9	-	455,740.9		
기정	372	녹지	연결 녹지1	강서구 명지동 3601일원	20,245.7	-	20,245.7	지고제230호 (08.12.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2단계
기정	374	녹지	연결 녹지3	강서구 명지동 3351-6	14,960.8	-	14,960.8	지고제230호 (08.12.31)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단계
기정	375	녹지	연결 녹지4	강서구 명지동 3436일원	129,957.7	-	129,957.7	지고제230호 (08.12.31)	자연녹지지역 1-1단계 : 19,305.5㎡ 1-2단계 : 46,236.2㎡ 1-3단계 : 21,287.0㎡ 1-4단계 : 43,129.0㎡
기정	667	녹지	연결 녹지5	강서구 명지동 267-4일원	4,749.0	-	4,749.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일반상업용지 2단계
기정	668	녹지	연결 녹지6	강서구 명지동 723-7일원	33,124.0	-	33,124.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용지 1-4단계 : 345.0㎡ 2단계 : 32,779.0㎡
기정	669	녹지	연결 녹지7	강서구 명지동 987-11일원	5,483.0	-	5,483.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2단계
기정	670	녹지	연결 녹지8	강서구 명지동 766-1일원	7,873.0	-	7,873.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1-4단계 : 236.0㎡ 2단계 : 7,637.0㎡
기정	376	녹지	완충 녹지1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2,179.0	-	2,179.0	지고제230호 (08.12.31)	제3종일반 주거지역 1-4단계
기정	377	녹지	완충 녹지2	강서구 명지동 3579-7일원	1,884.6	-	1,884.6	지고제230호 (08.12.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단계 : 1,119.6㎡ 1-3단계 : 765.0㎡
기정	378	녹지	완충 녹지3	강서구 명지동 3607일원	3,814.1	-	3,814.1	지고제230호 (08.12.31)	준주거지역 1-2단계
기정	379	녹지	완충 녹지4	강서구 명지동 3418-1일원	26,494.5	-	26,494.5	지고제230호 (08.12.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1단계 : 23,103.0㎡ 1-2단계 : 3,391.5㎡
기정	380	녹지	완충 녹지5	강서구 명지동 3360-1일원	14,213.4	-	14,213.4	지고제230호 (08.12.31)	제1종전용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1-1단계 : 12,808.4㎡ 1-3단계 : 1,405.0㎡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81	녹지	완충녹지6	강서구 명지동 3342-1	13,568.7	-	13,568.7	지고제230호 (08.12.3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1단계
기정	382	녹지	완충녹지7	강서구 명지동 3513-1일원	34,028.1	-	34,028.1	지고제230호 (08.12.3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1-1단계 : 11,638.5㎡ 1-2단계 : 9,883.6㎡ 1-3단계 : 12,506.0㎡
기정	383	녹지	완충녹지8	강서구 명지동 3471일원	8,135.3	-	8,135.3	지고제230호 (08.12.31)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1-1단계 : 2,678.5 1-2단계 : 1,950.8㎡ 1-3단계 : 2,188.0㎡ 1-4단계 : 1,318.0㎡
기정	666	녹지	완충녹지10	강서구 명지동 1994일원	2,374.0	-	2,374.0	경자청고제58호 (15.10.21)	제2종일반주거지역 1-4단계
기정	671	녹지	완충녹지11	강서구 명지동 392일원	29,884.0	-	29,884.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2단계
기정	672	녹지	완충녹지12	강서구 명지동 531-8일원	24,144.0	-	24,144.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1-4단계 : 2,098.0㎡ 2단계 : 22,046.0㎡
기정	673	녹지	완충녹지13	강서구 명지동 805일원	20,614.0	-	20,614.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2종일반주거지역 1-4단계 : 3,183.0㎡ 2단계 : 17,431.0㎡
기정	674	녹지	완충녹지14	강서구 명지동 866일원	9,791.0	-	9,791.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2종일반주거지역 2단계
기정	675	녹지	완충녹지15	강서구 명지동 1798-1일원	25,583.0	-	25,583.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2종일반주거지역 1-4단계 : 21,897.0㎡ 2단계 : 3,686.0㎡
기정	676	녹지	완충녹지16	강서구 명지동 744일원	12,433.0	-	12,433.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2종일반주거지역 2단계
기정	677	녹지	완충녹지17	강서구 명지동 516-53일원	10,207.0	-	10,207.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단계

3) 공원(변경없음)

■ 공원 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시설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5	-	25	1,260,221.5	-	1,260,221.5	
근린공원	7	-	7	1,229,209.2	-	1,229,209.2	
어린이공원	10	-	10	18,787.5	-	18,787.5	
소공원	7	-	7	11,536.6	-	11,536.6	
문화공원	1	-	1	688.2	-	688.2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60,221.5	-	1,260,221.5		
기정	877	근린공원	근린공원1	강서구 명지동 3633일원	812,539.0	-	812,539.0	지고제230호 (08.12.31)	자연녹지지역 1-2단계 : 6,999.9㎡ 1-4단계 : 805,539.1㎡
기정	878	근린공원	근린공원2	강서구 명지동 3403	17,477.5	-	17,477.5	지고제230호 (08.12.31)	제2종일반주거지역 1-1단계
기정	1060	근린공원	근린공원3	강서구 명지동 3398	9,147.0	-	9,147.0	경자청고제33호 (13.7.24)	제3종일반주거지역 1-1단계
기정	1061	근린공원	근린공원4	강서구 명지동 3392	102,287.8	-	102,287.8	경자청고제33호 (13.7.24)	자연녹지지역 1-1단계 : 65,807.8㎡ 1-3단계 : 22,264.0㎡ 1-4단계 : 14,216.0㎡
기정	1062	근린공원	근린공원5	강서구 명지동 3439	75,680.9	-	75,680.9	경자청고제33호 (13.7.24)	자연녹지지역 1-1단계 : 47,009.9㎡ 1-3단계 : 23,756.0㎡ 1-4단계 : 4,915.0㎡
기정	1134	근린공원	근린공원7	강서구 명지동 975-4일원	201,876.0	-	201,876.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자연녹지지역 2단계
기정	1135	근린공원	근린공원9	강서구 명지동 1892일원	10,201.0	-	10,201.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2종일반주거지역 1-4단계 : 5,443.0㎡ 2단계 : 4,758.0㎡
기정	881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3	강서구 명지동 3428-4	2,189.3	-	2,189.3	지고제230호 (08.12.31)	준주거지역 1-1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82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4	강서구 명지동 3349	1,566.7	-	1,566.7	지고제230호 (08.12.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단계
기정	883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5	강서구 명지동 3513-3	1,509.0	-	1,509.0	지고제230호 (08.12.31)	자연녹지지역 1-2단계
기정	884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6	강서구 명지동 3483-4	2,071.4	-	2,071.4	지고제230호 (08.12.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단계
기정	885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7	강서구 명지동 3313-9	1,512.7	-	1,512.7	지고제230호 (08.12.31)	자연녹지지역 1-1단계
기정	1063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8	강서구 명지동 3406	2,358.1	-	2,358.1	경자청고제33호 (13.7.24)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단계
기정	1064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9	강서구 명지동 3409	1,981.2	-	1,981.2	경자청고제33호 (13.7.24)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단계
기정	1112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10	강서구 명지동 3577-1	2,018.1	-	2,018.1	경자청고제58호 (15.10.21)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단계
기정	1136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11	강서구 명지동 395일원	1,955.0	-	1,955.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2단계
기정	1137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12	강서구 명지동 602-1일원	1,626.0	-	1,626.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2단계
기정	1066	소공원	소공원 2	강서구 명지동 3455-5	295.2	-	295.2	경자청고제33호 (13.7.24)	제1종일반 주거지역 1-1단계
기정	1121	소공원	소공원 3	강서구 명지동 3602-3	5,020.1	-	5,020.1	경자청고제35호 (16.6.15)	일반상업지역 1-2단계
기정	1122	소공원	소공원 4	강서구 명지동 3575-1	2,287.9	-	2,287.9	경자청고제35호 (16.6.15)	제2종일반 주거지역 1-2단계
기정	1123	소공원	소공원 5	강서구 명지동 3604-4	1,334.4	-	1,334.4	경자청고제35호 (16.6.15)	일반상업지역 1-2단계
기정	1138	소공원	소공원 6	강서구 명지동 531-1일원	322.0	-	322.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2단계
기정	1139	소공원	소공원 7	강서구 명지동 536-6일원	880.0	-	880.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2단계
기정	1140	소공원	소공원 8	강서구 명지동 558-3일원	1,397	-	1,397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2단계
기정	1133	문화 공원	문화 공원1	강서구 명지동 3483-5일원	688.2	-	688.2	경자청고제31호 (17.4.12)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단계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열공급설비(변경없음)

■ 열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985	-	20,985		
기정	5	열공급설비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20,985	-	20,985	지고제230호 (08.12.31)	제3종일반 주거지역 1-3단계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35	-	2,835		
기정	131	전기공급설비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2,835	-	2,835	지고제230호 (08.12.31)	제3종일반 주거지역 1-3단계

3)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5	-	85		
기정	28	가스공급설비	강서구 명지동 2009-1일원	25	-	25	경자청고제33호 (13.7.24)	제1종일반 주거지역 1-3단계
기정	33	가스공급설비	강서구 명지동 3340	60	-	60	경자청고제10호 (15.3.25)	자연녹지지역 1-1단계

4) 시 장(변경없음)

■ 시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037.7	-	17,037.7		
기정	117	시장	대규모 점포	강서구 명지동 3438	17,037.7	-	17,037.7	경자청고제41호 (14.8.6)	준주거지역 1-1단계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2,878.1	-	62,878.1		
기정	235	공공청사	공공청사1	강서구 명지동 607-5일원	9,930.6	-	9,930.6	지고제230호 (08.12.31)	준주거지역 1-2단계 강서경찰서 (존치)
기정	237	공공청사	공공청사3	강서구 명지동 3321-1	3,598.2	-	3,598.2	지고제230호 (08.12.31)	준주거지역 1-1단계
기정	288	공공청사	공공청사4	강서구 명지동 3584	324.0	-	324.0	경자청고제33호 (13.7.24)	준주거지역 1-2단계 해양파출소
기정	289	공공청사	공공청사5	강서구 명지동 3602-4	1,002.5	-	1,002.5	경자청고제33호 (13.7.24)	일반상업지역 1-2단계 경찰파출소
기정	295	공공청사	공공청사6	강서구 명지동 3600-1	18,175.8	-	18,175.8	경자청고제16호 (14.4.16)	중심상업지역 1-2단계 서부지청
기정	296	공공청사	공공청사7	강서구 명지동 3600-2	18,174.0	-	18,174.0	경자청고제16호 (14.4.16)	중심상업지역 1-2단계 서부지원
기정	297	공공청사	공공청사9	강서구 명지동 969-6일원	2,635.0	-	2,635.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일반상업지역 1-4단계 : 227.0 2단계 : 2,408.0
기정	298	공공청사	공공청사10	강서구 명지동 969-3일원	2,459.0	-	2,459.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일반상업지역 2단계
기정	299	공공청사	공공청사11	강서구 명지동 747일원	6,579.0	-	6,579.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일반상업지역 2단계

2) 학교(변경없음)

■ 학교 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시설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	-	17	285,063.5	-	285,063.5	
초등학교	7	-	7	106,158.2	-	106,158.2	
중학교	5	-	5	66,498.1	-	66,498.1	
고등학교	4	-	4	58,227.2	-	58,227.2	
외국교육기관	1	-	1	54,180.0	-	54,180.0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85,063.5	-	285,063.5		
기정	475	학교	초등학교5	강서구 명지동 1793-10일원	16,000.0	-	16,000.0	지고제230호 (08.12.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1-4단계
기정	476	학교	초등학교4	강서구 명지동 3405	13,003.9	-	13,003.9	지고제230호 (08.12.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단계
기정	477	학교	초등학교2	강서구 명지동 3385	13,304.1	-	13,304.1	지고제230호 (08.12.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단계
기정	478	학교	초등학교1	강서구 명지동 3477-2	13,339.2	-	13,339.2	지고제230호 (08.12.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1-2단계
기정	479	학교	초등학교3	강서구 명지동 3427	13,799.0	-	13,799.0	지고제230호 (08.12.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단계
기정	516	학교	초등학교6	강서구 명지동 872-2일원	18,961.0	-	18,961.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2단계
기정	517	학교	초등학교7	강서구 명지동 584-3일원	17,751.0	-	17,751.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2단계
기정	482	학교	중학교2	강서구 명지동 3408	13,531.3	-	13,531.3	지고제230호 (08.12.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단계
기정	483	학교	중학교1	강서구 명지동 3386	14,376.8	-	14,376.8	지고제230호 (08.12.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단계
기정	500	학교	중학교3	강서구 명지동 630-2일원	13,589.0	-	13,589.0	경자청고제33호 (13.7.24)	제2종일반 주거지역 1-3단계
기정	519	학교	중학교4	강서구 명지동 883-2일원	12,501.0	-	12,501.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2단계
기정	520	학교	중학교5	강서구 명지동 592일원	12,500.0	-	12,500.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2단계
기정	480	학교	고등학교1	강서구 명지동 1604일원	15,770.0	-	15,770.0	지고제230호 (08.12.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1-3단계
기정	501	학교	고등학교2	강서구 명지동 1992-1일원	15,694.0	-	15,694.0	경자청고제33호 (13.7.24)	제2종일반 주거지역 1-3단계
기정	423	학교	고등학교4	강서구 명지동 3318-1	9,184.2 (26,524.2)	-	9,184.2 (26,524.2)	부고1995-245 (85.08.21)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단계
기정	518	학교	고등학교3	강서구 명지동 647일원	17,579.0	-	17,579.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제2종일반 주거지역 2단계
기정	515	학교	외국교육기관	강서구 명지동 2009-6일원	54,180.0	-	54,180.0	경자청고제58호 (15.10.21)	일반상업지역 1-3단계

※( )는 구역 외 시설면적 포함임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0,483.5	-	100,483.5		
기정	44	유수지	유수 시설	강서구 명지동 2963일원	4,143.0	-	4,143.0	경자청고제33호 (13.7.24)	자연녹지지역 1-3단계
기정	45	유수지	저류 시설	강서구 명지동 3435	19,991.5	-	19,991.5	경자청고제33호 (13.7.24)	자연녹지지역 1-1단계
기정	46	유수지	저류 시설	강서구 명지동 3525-2일원	5,649.0	-	5,649.0	경자청고제33호 (13.7.24)	자연녹지지역 방수설비30 중복결정 1-2단계
기정	47	유수지	저류 시설	강서구 명지동 3392	43,890.0	-	43,890.0	경자청고제33호 (13.7.24)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4 중복결정 1-1단계:20,074.0㎡ 1-3단계:22,072.0㎡ 1-4단계:1,744.0㎡
기정	58	유수지	저류 시설	강서구 명지동 3439	26,810.0	-	26,810.0	경자청고제16호 (14.4.16)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5 중복결정 1-1단계:2,945.0㎡ 1-3단계:23,865.0㎡

2) 방수설비(변경없음)

■ 방수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75.4	-	1,575.4	-	
기정	29	방수설비	강서구 명지동 1298-12 일원	386.0	-	386.0	경자청고제31호 (17.4.12)	자연녹지지역 1-3단계
기정	30	방수설비	강서구 명지동 3525-1 일원	1,096.0	-	1,096.0	경자청고제31호 (17.4.12)	자연녹지지역 유수지3 중복결정 1-2단계
기정	31	방수설비	강서구 명지동 3525-3 일원	93.4	-	93.4	경자청고제31호 (17.4.12)	자연녹지지역 연결녹지4 중복결정 1-2단계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691.9	-	4,691.9		
기정	130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1	강서구 명지동 3433	2,789.9	-	2,789.9	경자청고제33호 (13.7.24)	자연녹지지역 1-1단계
기정	13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2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1,902.0	-	1,902.0	경자청고제43호 (19.07.31)	자연녹지지역 1-4단계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별첨 1-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변경)도(S=1/5,000)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변경)도(S=1/5,000)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주택건설용지(변경)

1) 단독주택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합계	251,394.6	251,394.6	-	-	251,394.6	-	251,394.6	
H	소계	32,014.0	32,014.0	-	-	32,014.0	-	32,014.0	
H2	-	20,097.0	20,097.0	1	강서구 명지동 1598일원	20,097.0	-	20,097.0	1-4단계
H10	-	11,917.0	11,917.0	1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11,917.0	-	11,917.0	1-4단계
D	소계	219,380.6	219,380.6	-	-	219,380.6	-	219,380.6	
D-1	③	2,195.4	2,195.4	1	강서구 명지동 3576-2일원	275.9	-	275.9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76-3일원	273.5	-	273.5	
				3	강서구 명지동 3576-4일원	273.5	-	273.5	
				4	강서구 명지동 3576-5일원	273.4	-	273.4	
				5	강서구 명지동 3576-6일원	273.6	-	273.6	
				6	강서구 명지동 3576-7일원	273.6	-	273.6	
				7	강서구 명지동 3576-8일원	273.7	-	273.7	
				8	강서구 명지동 3576-9일원	278.2	-	278.2	
	④	1,092.8	1,092.8	1	강서구 명지동 3577-5일원	276.2	-	276.2	
				2	강서구 명지동 3577-4일원	269.2	-	269.2	
				3	강서구 명지동 3577-2일원	276.5	-	276.5	
				4	강서구 명지동 3577-3일원	270.9	-	270.9	
	⑤	3,086.4	3,086.4	1	강서구 명지동 3578-1일원	261.2	-	261.2	
				2	강서구 명지동 3578-12일원	256.9	-	256.9	
				3	강서구 명지동 3578-11일원	256.8	-	256.8	
				4	강서구 명지동 3578-10일원	257.1	-	257.1	
				5	강서구 명지동 3578-9일원	257.0	-	257.0	
				6	강서구 명지동 3578-8일원	256.6	-	256.6	
				7	강서구 명지동 3578-7일원	256.4	-	256.4	
				8	강서구 명지동 3578-6일원	256.9	-	256.9	
				9	강서구 명지동 3578-5일원	257.3	-	257.3	
				10	강서구 명지동 3578-4일원	256.5	-	256.5	
				11	강서구 명지동 3578-3일원	256.8	-	256.8	
				12	강서구 명지동 3578-2일원	256.9	-	256.9	
	⑥	663.3	663.3	1	강서구 명지동 3579-13일원	338.6	-	338.6	
				2	강서구 명지동 3579-12일원	324.7	-	324.7	
	⑦	2,866.1	2,866.1	1	강서구 명지동 3579-1일원	249.6	-	249.6	
				2	강서구 명지동 3579-2일원	286.0	-	286.0	
				3	강서구 명지동 3579-3일원	285.6	-	285.6	
				4	강서구 명지동 3579-4일원	285.7	-	285.7	
				5	강서구 명지동 3579-5일원	285.7	-	285.7	
				6	강서구 명지동 3579-6일원	284.7	-	284.7	

도면 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7	강서구 명지동 3579-8일원	509.6	-	509.6	
				8	강서구 명지동 3579-9일원	339.5	-	339.5	
				9	강서구 명지동 3579-10일원	339.7	-	339.7	
D-2	①	2,355.8	2,355.8	1	강서구 명지동 3444-1	237.9	-	237.9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444-2	234.5	-	234.5	
				3	강서구 명지동 3444-3	234.4	-	234.4	
				4	강서구 명지동 3444-4	234.4	-	234.4	
				5	강서구 명지동 3444-5	238.0	-	238.0	
				6	강서구 명지동 3444-6	235.1	-	235.1	
				7	강서구 명지동 3444-7	234.5	-	234.5	
				8	강서구 명지동 3444-8	234.5	-	234.5	
				9	강서구 명지동 3444-9	234.5	-	234.5	
				10	강서구 명지동 3444-10	238.0	-	238.0	
	②	2,550.8	2,550.8	1	강서구 명지동 3446-1	257.6	-	257.6	
				2	강서구 명지동 3446-2	253.3	-	253.3	
				3	강서구 명지동 3446-3	252.0	-	252.0	
				4	강서구 명지동 3446-4	254.6	-	254.6	
				5	강서구 명지동 3446-5	257.5	-	257.5	
				6	강서구 명지동 3446-6	257.6	-	257.6	
				7	강서구 명지동 3446-7	254.9	-	254.9	
				8	강서구 명지동 3446-8	252.2	-	252.2	
				9	강서구 명지동 3446-9	253.4	-	253.4	
				10	강서구 명지동 3446-10	257.7	-	257.7	
	③	2,423.1	2,423.1	1	강서구 명지동 3448-1	244.4	-	244.4	
				2	강서구 명지동 3448-2	240.7	-	240.7	
				3	강서구 명지동 3448-3	240.8	-	240.8	
				4	강서구 명지동 3448-4	240.7	-	240.7	
				5	강서구 명지동 3448-5	244.5	-	244.5	
				6	강서구 명지동 3448-6	244.7	-	244.7	
				7	강서구 명지동 3448-7	241.0	-	241.0	
				8	강서구 명지동 3448-8	240.9	-	240.9	
				9	강서구 명지동 3448-9	240.9	-	240.9	
				10	강서구 명지동 3448-10	244.5	-	244.5	
	④	2,655.9	2,655.9	1	강서구 명지동 3449-1	268.8	-	268.8	
				2	강서구 명지동 3449-2	263.9	-	263.9	
				3	강서구 명지동 3449-3	263.7	-	263.7	
				4	강서구 명지동 3449-4	263.4	-	263.4	
				5	강서구 명지동 3449-5	268.3	-	268.3	
				6	강서구 명지동 3449-6	268.5	-	268.5	
				7	강서구 명지동 3449-7	263.9	-	263.9	
				8	강서구 명지동 3449-8	263.8	-	263.8	
				9	강서구 명지동 3449-9	263.4	-	263.4	
				10	강서구 명지동 3449-10	268.2	-	268.2	
	⑤	2,195.3	2,195.3	1	강서구 명지동 3455-1	322.9	-	322.9	
				2	강서구 명지동 3455-2	329.2	-	329.2	
				3	강서구 명지동 3455-3	329.2	-	329.2	
				4	강서구 명지동 3455-4	275.0	-	275.0	
				5	강서구 명지동 3455-6	369.5	-	369.5	

도면 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6	강서구 명지동 3455-8	284.6	-	284.6	
				7	강서구 명지동 3455-7	284.9	-	284.9	
	⑥	1,707.4	1,707.4	1	강서구 명지동 3457-5	251.8	-	251.8	
				2	강서구 명지동 3457-4	266.7	-	266.7	
				3	강서구 명지동 3457-1	290.3	-	290.3	
				4	강서구 명지동 3457-2	313.5	-	313.5	
				5	강서구 명지동 3457-3	303.6	-	303.6	
				6	강서구 명지동 3457-6	281.5	-	281.5	
	⑦	1,451.5	1,451.5	1	강서구 명지동 3457-12	230.7	-	230.7	
				2	강서구 명지동 3457-11	220.2	-	220.2	
				3	강서구 명지동 3457-8	231.9	-	231.9	
				4	강서구 명지동 3457-9	254.1	-	254.1	
				5	강서구 명지동 3457-10	250.1	-	250.1	
				6	강서구 명지동 3457-13	264.5	-	264.5	
	⑧	2,206.1	2,206.1	1	강서구 명지동 3461-8	278.9	-	278.9	
				2	강서구 명지동 3461-5	276.0	-	276.0	
				3	강서구 명지동 3461-4	269.3	-	269.3	
				4	강서구 명지동 3461-1	263.7	-	263.7	
				5	강서구 명지동 3461-2	259.1	-	259.1	
				6	강서구 명지동 3461-3	265.1	-	265.1	
				7	강서구 명지동 3461-6	284.5	-	284.5	
				8	강서구 명지동 3461-7	309.5	-	309.5	
	⑨	2,309.8	2,309.8	1	강서구 명지동 3461-17	265.6	-	265.6	
				2	강서구 명지동 3461-14	279.2	-	279.2	
				3	강서구 명지동 3461-13	279.4	-	279.4	
				4	강서구 명지동 3461-10	284.9	-	284.9	
				5	강서구 명지동 3461-11	303.8	-	303.8	
				6	강서구 명지동 3461-12	297.1	-	297.1	
				7	강서구 명지동 3461-15	300.4	-	300.4	
				8	강서구 명지동 3461-16	299.4	-	299.4	
D-3	①	2,408.5	2,408.5	1	강서구 명지동 3368-2일원	240.5	-	240.5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68-3일원	240.5	-	240.5	
				3	강서구 명지동 3368-4일원	240.6	-	240.6	
				4	강서구 명지동 3368-5일원	240.6	-	240.6	
				5	강서구 명지동 3368-6일원	241.8	-	241.8	
				6	강서구 명지동 3368-7일원	241.6	-	241.6	
				7	강서구 명지동 3368-8일원	240.7	-	240.7	
				8	강서구 명지동 3368-9일원	240.8	-	240.8	
				9	강서구 명지동 3368-10일원	240.7	-	240.7	
				10	강서구 명지동 3368-11원	240.7	-	240.7	
	②	3,112.8	3,112.8	1	강서구 명지동 3370-1일원	255.6	-	255.6	
				2	강서구 명지동 3370-2일원	260.7	-	260.7	
				3	강서구 명지동 3370-3일원	260.8	-	260.8	
				4	강서구 명지동 3370-4일원	260.9	-	260.9	
				5	강서구 명지동 3370-5일원	260.7	-	260.7	
				6	강서구 명지동 3370-6일원	257.6	-	257.6	
				7	강서구 명지동 3370-7일원	257.6	-	257.6	
				8	강서구 명지동 3370-5일원	260.6	-	260.6	
				9	강서구 명지동 3370-9일원	260.7	-	260.7	

도면 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10	강서구 명지동 3370-10일원	260.8	-	260.8	
				11	강서구 명지동 3370-11일원	260.9	-	260.9	
				12	강서구 명지동 3370-12일원	255.9	-	255.9	
	③	3,113.9	3,113.9	1	강서구 명지동 3372-1일원	255.7	-	255.7	
				2	강서구 명지동 3372-2일원	260.9	-	260.9	
				3	강서구 명지동 3372-3일원	260.9	-	260.9	
				4	강서구 명지동 3372-4일원	260.8	-	260.8	
				5	강서구 명지동 3372-5일원	260.8	-	260.8	
				6	강서구 명지동 3372-6일원	257.9	-	257.9	
				7	강서구 명지동 3372-7일원	257.9	-	257.9	
				8	강서구 명지동 3372-8일원	260.7	-	260.7	
				9	강서구 명지동 3372-9일원	260.9	-	260.9	
				10	강서구 명지동 3372-10일원	260.9	-	260.9	
				11	강서구 명지동 3372-11일원	260.8	-	260.8	
				12	강서구 명지동 3372-12일원	255.7	-	255.7	
	④	2,408.6	2,408.6	1	강서구 명지동 3374-2	240.6	-	240.6	
				2	강서구 명지동 3374-3	240.6	-	240.6	
				3	강서구 명지동 3374-4	240.6	-	240.6	
				4	강서구 명지동 3374-5	240.6	-	240.6	
				5	강서구 명지동 3374-6	241.6	-	241.6	
				6	강서구 명지동 3374-7	241.7	-	241.7	
				7	강서구 명지동 3374-8	240.7	-	240.7	
				8	강서구 명지동 3374-9	240.7	-	240.7	
				9	강서구 명지동 3374-10	240.7	-	240.7	
				10	강서구 명지동 3374-11	240.8	-	240.8	
	⑤	1,796.7	1,796.7	1	강서구 명지동 3378-1	296.0	-	296.0	
				2	강서구 명지동 3378-2	305.0	-	305.0	
				3	강서구 명지동 3378-3	309.0	-	309.0	
				4	강서구 명지동 3378-4	282.2	-	282.2	
				5	강서구 명지동 3378-5	305.3	-	305.3	
				6	강서구 명지동 3378-6	299.2	-	299.2	
	⑥	1,777.8	1,777.8	1	강서구 명지동 3380-1	288.8	-	288.8	
				2	강서구 명지동 3380-2	294.8	-	294.8	
				3	강서구 명지동 3380-3	323.8	-	323.8	
				4	강서구 명지동 3380-4	286.8	-	286.8	
				5	강서구 명지동 3380-5	294.7	-	294.7	
				6	강서구 명지동 3380-6	288.9	-	288.9	
	⑦	1,277.3	1,277.3	1	강서구 명지동 3365-10	253.0	-	253.0	
				2	강서구 명지동 3365-11	259.0	-	259.0	
				3	강서구 명지동 3365-12	259.1	-	259.1	
				4	강서구 명지동 3365-13	259.2	-	259.2	
				5	강서구 명지동 3365-14	247.0	-	247.0	
	⑧	1,198.9	1,198.9	1	강서구 명지동 3376-1	293.1	-	293.1	
				2	강서구 명지동 3376-2	306.1	-	306.1	
				3	강서구 명지동 3376-3	306.4	-	306.4	
				4	강서구 명지동 3376-4	293.3	-	293.3	
	⑨	2,061.1	2,061.1	1	강서구 명지동 3382-1	300.6	-	300.6	
				2	강서구 명지동 3382-2	307.2	-	307.2	

도면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3	강서구 명지동 3382-3	312.6	-	312.6	
				4	강서구 명지동 3382-4	311.5	-	311.5	
				5	강서구 명지동 3382-7	276.8	-	276.8	
				6	강서구 명지동 3382-6	270.3	-	270.3	
				7	강서구 명지동 3382-5	282.1	-	282.1	
D-4	①	1,959.9	1,959.9	1	강서구 명지동 3511-1일원	318.9	-	318.9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11-2일원	270.0	-	270.0	
				3	강서구 명지동 3511-3일원	269.9	-	269.9	
				4	강서구 명지동 3511-4일원	269.8	-	269.8	
				5	강서구 명지동 3511-5일원	270.0	-	270.0	
				6	강서구 명지동 3511-6일원	270.2	-	270.2	
				7	강서구 명지동 3511-7일원	291.1	-	291.1	
	②	1,069.2	1,069.2	1	강서구 명지동 3512-1일원	392.0	-	392.0	
				2	강서구 명지동 3512-2일원	302.0	-	302.0	
				3	강서구 명지동 3512-3일원	375.2	-	375.2	
	③	1,282.0	1,282.0	1	강서구 명지동 3514-1일원	213.1	-	213.1	
				2	강서구 명지동 3514-2일원	215.0	-	215.0	
				3	강서구 명지동 3514-3일원	212.9	-	212.9	
				4	강서구 명지동 3514-4일원	213.0	-	213.0	
				5	강서구 명지동 3514-5일원	215.0	-	215.0	
				6	강서구 명지동 3514-6일원	213.0	-	213.0	
	④	1,429.0	1,429.0	1	강서구 명지동 3515-1일원	237.6	-	237.6	
				2	강서구 명지동 3515-2일원	238.7	-	238.7	
				3	강서구 명지동 3515-3일원	237.6	-	237.6	
				4	강서구 명지동 3515-4일원	237.8	-	237.8	
				5	강서구 명지동 3515-5일원	239.7	-	239.7	
				6	강서구 명지동 3515-6일원	237.6	-	237.6	
	⑤	1,541.7	1,541.7	1	강서구 명지동 3516-1일원	242.6	-	242.6	
				2	강서구 명지동 3516-2일원	279.6	-	279.6	
				3	강서구 명지동 3516-3일원	276.7	-	276.7	
				4	강서구 명지동 3516-4일원	251.6	-	251.6	
				5	강서구 명지동 3516-5일원	251.6	-	251.6	
				6	강서구 명지동 3516-6일원	239.6	-	239.6	
	⑥	1,145.2	1,145.2	1	강서구 명지동 3517-1일원	286.0	-	286.0	
				2	강서구 명지동 3517-2일원	312.9	-	312.9	
				3	강서구 명지동 3517-3일원	273.1	-	273.1	
				4	강서구 명지동 3517-5일원	273.2	-	273.2	
	⑦	2,002.5	2,002.5	1	강서구 명지동 3518-1일원	322.8	-	322.8	
				2	강서구 명지동 3518-7일원	282.0	-	282.0	
				3	강서구 명지동 3518-6일원	282.0	-	282.0	
				4	강서구 명지동 3518-5일원	277.2	-	277.2	
				5	강서구 명지동 3518-4일원	276.9	-	276.9	
				6	강서구 명지동 3518-3일원	281.7	-	281.7	
				7	강서구 명지동 3518-2일원	279.9	-	279.9	
	⑧	1,576.0	1,576.0	1	강서구 명지동 3519-1일원	361.0	-	361.0	
				2	강서구 명지동 3519-3일원	318.0	-	318.0	
				3	강서구 명지동 3519-4일원	304.0	-	304.0	
				4	강서구 명지동 3519-5일원	304.0	-	304.0	
				5	강서구 명지동 3519-6일원	289.0	-	289.0	

도면 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⑩	1,580.0	1,580.0	1	강서구 명지동 3521-12일원	235.0	-	235.0	
				2	강서구 명지동 3521-11일원	264.0	-	264.0	
				3	강서구 명지동 3521-10일원	269.0	-	269.0	
				4	강서구 명지동 3521-9일원	264.0	-	264.0	
				5	강서구 명지동 3521-8일원	282.0	-	282.0	
				6	강서구 명지동 3521-7일원	266.0	-	266.0	
	⑫	2,836.0	2,836.0	1	강서구 명지동 3522-7일원	263.3	-	263.3	
				2	강서구 명지동 3522-8일원	261.1	-	261.1	
				3	강서구 명지동 3522-9일원	253.9	-	253.9	
				4	강서구 명지동 3522-10일원	239.9	-	239.9	
				5	강서구 명지동 3522-11일원	253.8	-	253.8	
				6	강서구 명지동 3522-1일원	260.4	-	260.4	
				7	강서구 명지동 3522-2일원	260.4	-	260.4	
				8	강서구 명지동 3522-3일원	260.0	-	260.0	
				9	강서구 명지동 3522-4일원	260.1	-	260.1	
				10	강서구 명지동 3522-5일원	260.2	-	260.2	
				11	강서구 명지동 3522-6일원	262.9	-	262.9	
	⑬	870.7	870.7	1	강서구 명지동 3520-2일원	282.9	-	282.9	
				2	강서구 명지동 3520-3일원	296.9	-	296.9	
				3	강서구 명지동 3520-4일원	290.9	-	290.9	
	⑭	1,562.6	1,562.6	1	강서구 명지동 3520-11일원	288.9	-	288.9	
				2	강서구 명지동 3520-10일원	257.8	-	257.8	
				3	강서구 명지동 3520-9일원	257.9	-	257.9	
				4	강서구 명지동 3520-8일원	266.0	-	266.0	
				5	강서구 명지동 3520-7일원	246.0	-	246.0	
				6	강서구 명지동 3520-6일원	246.0	-	246.0	
	⑮	1,933.8	1,933.8	1	강서구 명지동 3523-1일원	298.0	-	298.0	
				2	강서구 명지동 3523-2일원	264.0	-	264.0	
				3	강서구 명지동 3523-3일원	264.0	-	264.0	
				4	강서구 명지동 3523-4일원	264.0	-	264.0	
				5	강서구 명지동 3523-5일원	264.0	-	264.0	
				6	강서구 명지동 3523-6일원	264.0	-	264.0	
				7	강서구 명지동 3523-7일원	315.8	-	315.8	
	⑯	2,171.2	2,171.2	1	강서구 명지동 3521-1일원	272.9	-	272.9	
				2	강서구 명지동 3521-15일원	271.9	-	271.9	
				3	강서구 명지동 3521-14일원	268.9	-	268.9	
				4	강서구 명지동 3521-13일원	270.9	-	270.9	
				5	강서구 명지동 3521-5일원	270.9	-	270.9	
				6	강서구 명지동 3521-4일원	272.0	-	272.0	
				7	강서구 명지동 3521-3일원	270.8	-	270.8	
				8	강서구 명지동 3521-2일원	272.9	-	272.9	
D-5	②	1,652.7	1,652.7	1	강서구 명지동 3483-6일원	315.4	-	315.4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483-7일원	327.5	-	327.5	
				3	강서구 명지동 3483-8일원	244.5	-	244.5	
				4	강서구 명지동 3483-11일원	244.5	-	244.5	
				5	강서구 명지동 3483-10일원	260.5	-	260.5	
				6	강서구 명지동 3483-9일원	260.3	-	260.3	
	③	927.9	927.9	1	강서구 명지동 3487-1일원	246.5	-	246.5	

도면 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2	강서구 명지동 3487-2일원	233.4	-	233.4	
				3	강서구 명지동 3487-3일원	233.5	-	233.5	
				4	강서구 명지동 3487-4일원	214.5	-	214.5	
	④	867.8	867.8	1	강서구 명지동 3488-1일원	220.2	-	220.2	
				2	강서구 명지동 3488-2일원	216.2	-	216.2	
				3	강서구 명지동 3488-3일원	216.2	-	216.2	
				4	강서구 명지동 3488-4일원	215.2	-	215.2	
	⑤	984.7	984.7	1	강서구 명지동 3489-1일원	246.1	-	246.1	
				2	강서구 명지동 3489-4일원	246.2	-	246.2	
				3	강서구 명지동 3489-3일원	246.2	-	246.2	
				4	강서구 명지동 3489-2일원	246.2	-	246.2	
	⑥	2,289.2	2,289.2	1	강서구 명지동 3491-1일원	288.0	-	288.0	
				2	강서구 명지동 3491-8일원	282.9	-	282.9	
				3	강서구 명지동 3491-7일원	283.0	-	283.0	
				4	강서구 명지동 3491-6일원	285.9	-	285.9	
				5	강서구 명지동 3491-5일원	285.8	-	285.8	
				6	강서구 명지동 3491-4일원	283.8	-	283.8	
				7	강서구 명지동 3491-3일원	283.9	-	283.9	
				8	강서구 명지동 3491-2일원	295.9	-	295.9	
	⑦	2,022.1	2,022.1	1	강서구 명지동 3492-1일원	257.3	-	257.3	
				2	강서구 명지동 3492-8일원	246.1	-	246.1	
				3	강서구 명지동 3492-7일원	246.3	-	246.3	
				4	강서구 명지동 3492-6일원	255.3	-	255.3	
				5	강서구 명지동 3492-5일원	255.4	-	255.4	
				6	강서구 명지동 3492-4일원	246.2	-	246.2	
				7	강서구 명지동 3492-3일원	246.3	-	246.3	
				8	강서구 명지동 3492-2일원	269.2	-	269.2	
	⑧	596.0	596.0	1	강서구 명지동 3493-1일원	297.5	-	297.5	
				2	강서구 명지동 3493-2일원	298.5	-	298.5	
	⑨	647.8	647.8	1	강서구 명지동 3494-1일원	323.9	-	323.9	
				2	강서구 명지동 3494-2일원	323.9	-	323.9	
	⑩	631.9	631.9	1	강서구 명지동 3496-1일원	309.4	-	309.4	
				2	강서구 명지동 3496-2일원	322.5	-	322.5	
	⑪	1,215.2	1,215.2	1	강서구 명지동 3498-1일원	303.8	-	303.8	
				2	강서구 명지동 3498-4일원	303.8	-	303.8	
				3	강서구 명지동 3498-3일원	303.8	-	303.8	
				4	강서구 명지동 3498-2일원	303.8	-	303.8	
	⑫	1,824.7	1,824.7	1	강서구 명지동 3497-1일원	282.8	-	282.8	
				2	강서구 명지동 3497-2일원	306.8	-	306.8	
				3	강서구 명지동 3497-3일원	338.7	-	338.7	
				4	강서구 명지동 3497-4일원	348.8	-	348.8	
				5	강서구 명지동 3497-5일원	278.8	-	278.8	
				6	강서구 명지동 3497-6일원	268.8	-	268.8	
	⑬	1,800.5	1,800.5	1	강서구 명지동 3490-1일원	257.8	-	257.8	
				2	강서구 명지동 3490-2일원	257.9	-	257.9	
				3	강서구 명지동 3490-3일원	257.8	-	257.8	
				4	강서구 명지동 3490-4일원	257.7	-	257.7	
				5	강서구 명지동 3490-5일원	257.7	-	257.7	

도면 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6	강서구 명지동 3490-6일원	257.8	-	257.8	
				7	강서구 명지동 3490-7일원	253.8	-	253.8	
	⑭	1,267.7	1,267.7	1	강서구 명지동 3495-1일원	246.3	-	246.3	
				2	강서구 명지동 3495-2일원	258.3	-	258.3	
				3	강서구 명지동 3495-3일원	258.4	-	258.4	
				4	강서구 명지동 3495-4일원	258.3	-	258.3	
				5	강서구 명지동 3495-5일원	246.4	-	246.4	
	⑮	1,302.8	1,302.8	1	강서구 명지동 3499-1일원	251.9	-	251.9	
				2	강서구 명지동 3499-2일원	264.9	-	264.9	
				3	강서구 명지동 3499-3일원	265.0	-	265.0	
				4	강서구 명지동 3499-4일원	265.0	-	265.0	
				5	강서구 명지동 3499-5일원	256.0	-	256.0	
D-6	①	4,054.0	4,054.0	1	강서구 명지동 3463-1일원	266.9	-	266.9	1-1단계 : 6,835.7 1-2단계: 16,569.8
				2	강서구 명지동 3463-14일원	272.3	-	272.3	
				3	강서구 명지동 3463-13일원	284.9	-	284.9	
				4	강서구 명지동 3463-12일원	291.7	-	291.7	
				5	강서구 명지동 3463-11일원	298.9	-	298.9	
				6	강서구 명지동 3463-10일원	305.7	-	305.7	
				7	강서구 명지동 3463-9일원	305.5	-	305.5	
				8	강서구 명지동 3463-8일원	307.1	-	307.1	
				9	강서구 명지동 3463-7일원	308.0	-	308.0	
				10	강서구 명지동 3463-6일원	301.0	-	301.0	
				11	강서구 명지동 3463-5일원	293.8	-	293.8	
				12	강서구 명지동 3463-4일원	286.8	-	286.8	
				13	강서구 명지동 3463-3일원	279.8	-	279.8	
				14	강서구 명지동 3463-2일원	251.6	-	251.6	
	②	2,123.3	2,123.3	1	강서구 명지동 3464-1일원	343.5	-	343.5	
				2	강서구 명지동 3464-6일원	359.1	-	359.1	
				3	강서구 명지동 3464-5일원	359.9	-	359.9	
				4	강서구 명지동 3464-4일원	360.3	-	360.3	
				5	강서구 명지동 3464-3일원	358.0	-	358.0	
				6	강서구 명지동 3464-2일원	342.5	-	342.5	
	③	1,832.4	1,832.4	1	강서구 명지동 3467-1일원	260.2	-	260.2	
				2	강서구 명지동 3467-2일원	260.2	-	260.2	
				3	강서구 명지동 3467-3일원	260.1	-	260.1	
				4	강서구 명지동 3467-4일원	260.2	-	260.2	
				5	강서구 명지동 3467-5일원	260.1	-	260.1	
				6	강서구 명지동 3467-6일원	260.1	-	260.1	
				7	강서구 명지동 3467-7일원	271.5	-	271.5	
	④	2,365.1	2,365.1	1	강서구 명지동 3462-9일원	297.2	-	297.2	
				2	강서구 명지동 3462-8일원	297.3	-	297.3	
				3	강서구 명지동 3462-7일원	297.4	-	297.4	
				4	강서구 명지동 3462-6일원	291.1	-	291.1	
				5	강서구 명지동 3462-2일원	297.0	-	297.0	
				6	강서구 명지동 3462-3일원	297.1	-	297.1	
				7	강서구 명지동 3462-4일원	297.2	-	297.2	
				8	강서구 명지동 3462-5일원	290.8	-	290.8	
	⑤	3,851.5	3,851.5	1	강서구 명지동 3466-1일원	250.1	-	250.1	

도면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2	강서구 명지동 3466-14일원	276.6	-	276.6	
				3	강서구 명지동 3466-13일원	276.6	-	276.6	
				4	강서구 명지동 3466-12일원	276.6	-	276.6	
				5	강서구 명지동 3466-11일원	276.6	-	276.6	
				6	강서구 명지동 3466-10일원	276.5	-	276.5	
				7	강서구 명지동 3466-9일원	291.4	-	291.4	
				8	강서구 명지동 3466-8일원	293.4	-	293.4	
				9	강서구 명지동 3466-7일원	276.7	-	276.7	
				10	강서구 명지동 3466-6일원	276.7	-	276.7	
				11	강서구 명지동 3466-5일원	276.7	-	276.7	
				12	강서구 명지동 3466-4일원	276.7	-	276.7	
				13	강서구 명지동 3466-3일원	276.7	-	276.7	
				14	강서구 명지동 3466-2일원	250.2	-	250.2	
	⑥	1,664.0	1,664.0	1	강서구 명지동 3311-1	268.6	-	268.6	
				2	강서구 명지동 3311-2	274.9	-	274.9	
				3	강서구 명지동 3311-3	274.8	-	274.8	
				4	강서구 명지동 3311-4	274.7	-	274.7	
				5	강서구 명지동 3311-5	276.0	-	276.0	
				6	강서구 명지동 3311-6	295.0	-	295.0	
	⑦	1,643.7	1,643.7	1	강서구 명지동 3313-1	273.1	-	273.1	
				2	강서구 명지동 3313-4	264.1	-	264.1	
				3	강서구 명지동 3313-5	284.3	-	284.3	
				4	강서구 명지동 3313-6	284.7	-	284.7	
				5	강서구 명지동 3313-3	264.3	-	264.3	
				6	강서구 명지동 3313-2	273.2	-	273.2	
	⑧	1,476.4	1,476.4	1	강서구 명지동 3315-1	242.1	-	242.1	
				2	강서구 명지동 3315-4	239.1	-	239.1	
				3	강서구 명지동 3315-5	256.7	-	256.7	
				4	강서구 명지동 3315-6	257.2	-	257.2	
				5	강서구 명지동 3315-3	239.2	-	239.2	
				6	강서구 명지동 3315-2	242.1	-	242.1	
	⑨	2,050.5	2,050.5	1	강서구 명지동 3315-8	255.3	-	255.3	
				2	강서구 명지동 3315-9	256.4	-	256.4	
				3	강서구 명지동 3315-10	256.3	-	256.3	
				4	강서구 명지동 3315-11	254.7	-	254.7	
				5	강서구 명지동 3315-12	259.9	-	259.9	
				6	강서구 명지동 3315-13	256.3	-	256.3	
				7	강서구 명지동 3315-14	256.3	-	256.3	
				8	강서구 명지동 3315-15	255.3	-	255.3	
	⑩	2,344.6	2,344.6	1	강서구 명지동 3465-1일원	379.8	-	379.8	
				2	강서구 명지동 3465-6일원	391.8	-	391.8	
				3	강서구 명지동 3465-5일원	397.9	-	397.9	
				4	강서구 명지동 3465-4일원	399.3	-	399.3	
				5	강서구 명지동 3465-3일원	395.8	-	395.8	
				6	강서구 명지동 3465-2일원	380.0	-	380.0	
D-7	①	1,706.3	1,706.3	1	강서구 명지동 3501-1일원	243.7	-	243.7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01-2일원	244.8	-	244.8	
				3	강서구 명지동 3501-3일원	244.8	-	244.8	

도면 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4	강서구 명지동 3501-4일원	244.7	-	244.7	
				5	강서구 명지동 3501-5일원	244.8	-	244.8	
				6	강서구 명지동 3501-6일원	244.7	-	244.7	
				7	강서구 명지동 3501-7일원	238.8	-	238.8	
	②	1,197.2	1,197.2	1	강서구 명지동 3505-1일원	231.7	-	231.7	
				2	강서구 명지동 3505-2일원	244.7	-	244.7	
				3	강서구 명지동 3505-3일원	244.6	-	244.6	
				4	강서구 명지동 3505-4일원	244.6	-	244.6	
				5	강서구 명지동 3505-5일원	231.6	-	231.6	
	③	1,172.3	1,172.3	1	강서구 명지동 3508-1일원	287.8	-	287.8	
				2	강서구 명지동 3508-2일원	299.8	-	299.8	
				3	강서구 명지동 3508-3일원	299.8	-	299.8	
				4	강서구 명지동 3508-4일원	284.9	-	284.9	
	④	1,397.9	1,397.9	1	강서구 명지동 3502-1일원	278.0	-	278.0	
				2	강서구 명지동 3502-2일원	284.0	-	284.0	
				3	강서구 명지동 3502-3일원	284.0	-	284.0	
				4	강서구 명지동 3502-4일원	283.9	-	283.9	
				5	강서구 명지동 3502-5일원	268.0	-	268.0	
	⑤	1,552.6	1,552.6	1	강서구 명지동 3503-1일원	255.5	-	255.5	
				2	강서구 명지동 3503-7일원	260.4	-	260.4	
				3	강서구 명지동 3503-6일원	260.3	-	260.3	
				4	강서구 명지동 3503-4일원	260.4	-	260.4	
				5	강서구 명지동 3503-3일원	260.5	-	260.5	
				6	강서구 명지동 3503-2일원	255.5	-	255.5	
	⑥	2,145.9	2,145.9	1	강서구 명지동 3504-1일원	260.8	-	260.8	
				2	강서구 명지동 3504-8일원	271.8	-	271.8	
				3	강서구 명지동 3504-7일원	271.8	-	271.8	
				4	강서구 명지동 3504-6일원	268.6	-	268.6	
				5	강서구 명지동 3504-5일원	268.8	-	268.8	
				6	강서구 명지동 3504-4일원	271.6	-	271.6	
				7	강서구 명지동 3504-3일원	271.7	-	271.7	
				8	강서구 명지동 3504-2일원	260.8	-	260.8	
	⑦	2,145.8	2,145.8	1	강서구 명지동 3506-1일원	260.8	-	260.8	
				2	강서구 명지동 3506-8일원	271.7	-	271.7	
				3	강서구 명지동 3506-7일원	271.7	-	271.7	
				4	강서구 명지동 3506-6일원	268.8	-	268.8	
				5	강서구 명지동 3506-5일원	268.7	-	268.7	
				6	강서구 명지동 3506-4일원	271.7	-	271.7	
				7	강서구 명지동 3506-3일원	271.7	-	271.7	
				8	강서구 명지동 3506-2일원	260.7	-	260.7	
	⑧	1,553.6	1,553.6	1	강서구 명지동 3507-1일원	255.6	-	255.6	
				2	강서구 명지동 3507-7일원	260.6	-	260.6	
				3	강서구 명지동 3507-6일원	260.6	-	260.6	
				4	강서구 명지동 3507-4일원	260.7	-	260.7	
				5	강서구 명지동 3507-3일원	260.6	-	260.6	
				6	강서구 명지동 3507-2일원	255.5	-	255.5	
	⑨	2,111.6	2,111.6	1	강서구 명지동 3509-1일원	263.9	-	263.9	
				2	강서구 명지동 3509-2일원	264.0	-	264.0	

도면 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3	강서구 명지동 3509-3일원	263.9	-	263.9	
				4	강서구 명지동 3509-4일원	264.0	-	264.0	
				5	강서구 명지동 3509-5일원	264.0	-	264.0	
				6	강서구 명지동 3509-6일원	263.9	-	263.9	
				7	강서구 명지동 3509-7일원	263.9	-	263.9	
				8	강서구 명지동 3509-8일원	264.0	-	264.0	
	⑩	2,172.2	2,172.2	1	강서구 명지동 3510-1일원	272.2	-	272.2	
				2	강서구 명지동 3510-2일원	272.2	-	272.2	
				3	강서구 명지동 3510-3일원	272.2	-	272.2	
				4	강서구 명지동 3510-4일원	272.1	-	272.1	
				5	강서구 명지동 3510-5일원	269.5	-	269.5	
				6	강서구 명지동 3510-6일원	272.3	-	272.3	
				7	강서구 명지동 3510-7일원	272.3	-	272.3	
				8	강서구 명지동 3510-8일원	269.4	-	269.4	
D-8	①	1,545.3	1,545.3	1	강서구 명지동 3497-1일원	253.4	-	253.4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497-2일원	261.5	-	261.5	
				3	강서구 명지동 3497-3일원	261.4	-	261.4	
				4	강서구 명지동 3497-4일원	261.4	-	261.4	
				5	강서구 명지동 3497-5일원	261.3	-	261.3	
				6	강서구 명지동 3497-6일원	246.3	-	246.3	
	②	1,282.8	1,282.8	1	강서구 명지동 3480-1일원	252.6	-	252.6	
				2	강서구 명지동 3480-2일원	259.3	-	259.3	
				3	강서구 명지동 3480-3일원	259.3	-	259.3	
				4	강서구 명지동 3480-4일원	259.3	-	259.3	
				5	강서구 명지동 3480-5일원	252.3	-	252.3	
	③	731.0	731.0	1	강서구 명지동 3483-1일원	246.6	-	246.6	
				2	강서구 명지동 3483-2일원	245.7	-	245.7	
				3	강서구 명지동 3483-3일원	238.7	-	238.7	
	④	615.0	615.0	1	강서구 명지동 3482-1일원	307.5	-	307.5	
				2	강서구 명지동 3482-2일원	307.5	-	307.5	
	⑤	2,246.5	2,246.5	1	강서구 명지동 3481-1일원	277.1	-	277.1	
				2	강서구 명지동 3481-2일원	284.0	-	284.0	
				3	강서구 명지동 3481-3일원	284.1	-	284.1	
				4	강서구 명지동 3481-4일원	278.2	-	278.2	
				5	강서구 명지동 3481-8일원	277.1	-	277.1	
				6	강서구 명지동 3481-7일원	284.0	-	284.0	
				7	강서구 명지동 3481-6일원	284.0	-	284.0	
				8	강서구 명지동 3481-5일원	278.0	-	278.0	
D-9	①	1,621.0	1,621.0	1	강서구 명지동 601-1일원	270.0	-	270.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601-2일원	271.0	-	271.0	
				3	강서구 명지동 602일원	269.0	-	269.0	
				4	강서구 명지동 602일원	270.0	-	270.0	
				5	강서구 명지동 601-2일원	271.0	-	271.0	
				6	강서구 명지동 601-1일원	270.0	-	270.0	
	②	812.0	812.0	1	강서구 명지동 595-3일원	272.0	-	272.0	
				2	강서구 명지동 596일원	270.0	-	270.0	
				3	강서구 명지동 596일원	270.0	-	270.0	
	③	811.0	811.0	1	강서구 명지동 596-2일원	270.0	-	270.0	

도면 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2	강서구 명지동 596-2일원	270.0	-	270.0	
				3	강서구 명지동 596-3일원	271.0	-	271.0	
	④	1,320.0	1,320.0	1	강서구 명지동 718일원	258.0	-	258.0	
				2	강서구 명지동 718-1일원	264.0	-	264.0	
				3	강서구 명지동 718-2일원	264.0	-	264.0	
				4	강서구 명지동 718-3일원	264.0	-	264.0	
				5	강서구 명지동 718-5일원	270.0	-	270.0	
	⑤	3,057.0	3,057.0	1	강서구 명지동 647-4일원	307.0	-	307.0	
				2	강서구 명지동 647-5일원	308.0	-	308.0	
				3	강서구 명지동 647-5일원	307.0	-	307.0	
				4	강서구 명지동 647-5일원	308.0	-	308.0	
				5	강서구 명지동 647-5일원	308.0	-	308.0	
				6	강서구 명지동 647-5일원	307.0	-	307.0	
				7	강서구 명지동 647-5일원	303.0	-	303.0	
				8	강서구 명지동 653일원	303.0	-	303.0	
				9	강서구 명지동 718-2일원	303.0	-	303.0	
				10	강서구 명지동 718-1일원	303.0	-	303.0	
	⑥	1,823.0	1,823.0	1	강서구 명지동 602-6일원	303.0	-	303.0	
				2	강서구 명지동 602-6일원	307.0	-	307.0	
				3	강서구 명지동 602-6일원	307.0	-	307.0	
				4	강서구 명지동 602-7일원	302.0	-	302.0	
				5	강서구 명지동 602-7일원	303.0	-	303.0	
				6	강서구 명지동 602-7일원	301.0	-	301.0	
	⑦	3,036.0	3,036.0	1	강서구 명지동 718-3일원	306.0	-	306.0	
				2	강서구 명지동 718-3일원	311.0	-	311.0	
				3	강서구 명지동 718-3일원	310.0	-	310.0	
				4	강서구 명지동 718-3일원	310.0	-	310.0	
				5	강서구 명지동 653일원	307.0	-	307.0	
				6	강서구 명지동 728일원	297.0	-	297.0	
				7	강서구 명지동 718-5일원	301.0	-	301.0	
				8	강서구 명지동 718-5일원	300.0	-	300.0	
				9	강서구 명지동 718-5일원	300.0	-	300.0	
				10	강서구 명지동 718-5일원	294.0	-	294.0	
	⑧	3,063.0	3,063.0	1	강서구 명지동 603-3일원	295.0	-	295.0	
				2	강서구 명지동 603-3일원	320.0	-	320.0	
				3	강서구 명지동 603-3일원	320.0	-	320.0	
				4	강서구 명지동 603-3일원	321.0	-	321.0	
				5	강서구 명지동 603-3일원	294.0	-	294.0	
				6	강서구 명지동 603-2일원	280.0	-	280.0	
				7	강서구 명지동 603-2일원	318.0	-	318.0	
				8	강서구 명지동 603-2일원	315.0	-	315.0	
				9	강서구 명지동 653일원	314.0	-	314.0	
				10	강서구 명지동 653일원	286.0	-	286.0	
D-10	①	635.0	635.0	1	강서구 명지동 392-7일원	365.0	-	365.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92-2일원	270.0	-	270.0	
	②	1,751.0	1,751.0	1	강서구 명지동 392-7일원	301.0	-	301.0	
				2	강서구 명지동 392-1일원	290.0	-	290.0	
				3	강서구 명지동 392-1일원	290.0	-	290.0	

도면 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4	강서구 명지동 392-6일원	290.0	-	290.0	
				5	강서구 명지동 392-6일원	290.0	-	290.0	
				6	강서구 명지동 392-6일원	290.0	-	290.0	
	③	2,132.0	2,132.0	1	강서구 명지동 394-2일원	267.0	-	267.0	
				2	강서구 명지동 394-2일원	267.0	-	267.0	
				3	강서구 명지동 394-2일원	267.0	-	267.0	
				4	강서구 명지동 397일원	267.0	-	267.0	
				5	강서구 명지동 397일원	267.0	-	267.0	
				6	강서구 명지동 397일원	267.0	-	267.0	
				7	강서구 명지동 397일원	267.0	-	267.0	
				8	강서구 명지동 516-58일원	263.0	-	263.0	
	④	804.0	804.0	1	강서구 명지동 392-3일원	270.0	-	270.0	
				2	강서구 명지동 392-3일원	270.0	-	270.0	
				3	강서구 명지동 392-3일원	264.0	-	264.0	
	⑤	1,868.0	1,868.0	1	강서구 명지동 397일원	351.0	-	351.0	
				2	강서구 명지동 397-2일원	311.0	-	311.0	
				3	강서구 명지동 397-8일원	310.0	-	310.0	
				4	강서구 명지동 397-8일원	313.0	-	313.0	
				5	강서구 명지동 397-2일원	311.0	-	311.0	
				6	강서구 명지동 397일원	272.0	-	272.0	
	⑥	2,270.0	2,270.0	1	강서구 명지동 397-2일원	292.0	-	292.0	
				2	강서구 명지동 397-8일원	286.0	-	286.0	
				3	강서구 명지동 397-9일원	286.0	-	286.0	
				4	강서구 명지동 397-3일원	286.0	-	286.0	
				5	강서구 명지동 397-3일원	286.0	-	286.0	
				6	강서구 명지동 397-9일원	286.0	-	286.0	
				7	강서구 명지동 397-8일원	286.0	-	286.0	
				8	강서구 명지동 397-2일원	262.0	-	262.0	
	⑦	1,320.0	1,320.0	1	강서구 명지동 516-54일원	264.0	-	264.0	
				2	강서구 명지동 516-54일원	264.0	-	264.0	
				3	강서구 명지동 516-54일원	264.0	-	264.0	
				4	강서구 명지동 515일원	264.0	-	264.0	
				5	강서구 명지동 517-5일원	264.0	-	264.0	
	⑧	804.0	804.0	1	강서구 명지동 392-3일원	264.0	-	264.0	
				2	강서구 명지동 392-3일원	270.0	-	270.0	
				3	강서구 명지동 653일원	270.0	-	270.0	
	⑨	2,713.0	2,713.0	1	강서구 명지동 653일원	271.0	-	271.0	
				2	강서구 명지동 395일원	275.0	-	275.0	
				3	강서구 명지동 395일원	276.0	-	276.0	
				4	강서구 명지동 395일원	277.0	-	277.0	
				5	강서구 명지동 395일원	268.0	-	268.0	
				6	강서구 명지동 395일원	263.0	-	263.0	
				7	강서구 명지동 395일원	270.0	-	270.0	
				8	강서구 명지동 395일원	271.0	-	271.0	
				9	강서구 명지동 395일원	272.0	-	272.0	
				10	강서구 명지동 395일원	270.0	-	270.0	
	⑩	1,464.0	1,464.0	1	강서구 명지동 397-3일원	333.0	-	333.0	
				2	강서구 명지동 397-3일원	333.0	-	333.0	

도면 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3	강서구 명지동 397-3일원	266.0	-	266.0	
				4	강서구 명지동 397-3일원	266.0	-	266.0	
				5	강서구 명지동 397-3일원	266.0	-	266.0	
	⑪	817.0	817.0	1	강서구 명지동 643일원	272.0	-	272.0	
				2	강서구 명지동 644일원	272.0	-	272.0	
				3	강서구 명지동 644일원	273.0	-	273.0	
	⑫	2,759.0	2,759.0	1	강서구 명지동 643일원	274.0	-	274.0	
				2	강서구 명지동 643일원	277.0	-	277.0	
				3	강서구 명지동 395일원	277.0	-	277.0	
				4	강서구 명지동 395일원	277.0	-	277.0	
				5	강서구 명지동 395일원	274.0	-	274.0	
				6	강서구 명지동 643일원	275.0	-	275.0	
				7	강서구 명지동 643일원	277.0	-	277.0	
				8	강서구 명지동 643일원	277.0	-	277.0	
				9	강서구 명지동 643일원	277.0	-	277.0	
				10	강서구 명지동 643일원	274.0	-	274.0	
	⑬	1,690.0	1,690.0	1	강서구 명지동 397-6일원	283.0	-	283.0	
				2	강서구 명지동 397-6일원	283.0	-	283.0	
				3	강서구 명지동 397-6일원	280.0	-	280.0	
				4	강서구 명지동 397-7일원	278.0	-	278.0	
				5	강서구 명지동 397-7일원	283.0	-	283.0	
				6	강서구 명지동 397-7일원	283.0	-	283.0	
	⑭	1,568.0	1,568.0	1	강서구 명지동 644일원	264.0	-	264.0	
				2	강서구 명지동 644일원	260.0	-	260.0	
				3	강서구 명지동 644일원	260.0	-	260.0	
				4	강서구 명지동 644일원	260.0	-	260.0	
				5	강서구 명지동 644일원	260.0	-	260.0	
				6	강서구 명지동 644일원	264.0	-	264.0	
	⑮	1,588.0	1,588.0	1	강서구 명지동 601일원	262.0	-	262.0	
				2	강서구 명지동 601일원	265.0	-	265.0	
				3	강서구 명지동 601일원	265.0	-	265.0	
				4	강서구 명지동 601일원	265.0	-	265.0	
				5	강서구 명지동 601일원	265.0	-	265.0	
				6	강서구 명지동 601일원	266.0	-	266.0	
	⑯	1,036.0	1,036.0	1	강서구 명지동 517-2일원	259.0	-	259.0	
				2	강서구 명지동 517-2일원	259.0	-	259.0	
				3	강서구 명지동 517-2일원	259.0	-	259.0	
				4	강서구 명지동 595일원	259.0	-	259.0	
D-11	①	986.0	986.0	1	강서구 명지동 595-3일원	249.0	-	249.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596일원	247.0	-	247.0	
				3	강서구 명지동 596일원	247.0	-	247.0	
				4	강서구 명지동 596-1일원	243.0	-	243.0	
	②	2,188.0	2,188.0	1	강서구 명지동 589일원	271.0	-	271.0	
				2	강서구 명지동 589일원	274.0	-	274.0	
				3	강서구 명지동 589일원	274.0	-	274.0	
				4	강서구 명지동 589일원	274.0	-	274.0	
				5	강서구 명지동 590-6일원	274.0	-	274.0	
				6	강서구 명지동 590-15일원	274.0	-	274.0	

도면 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7	강서구 명지동 589-3일원	274.0	-	274.0	
				8	강서구 명지동 583일원	273.0	-	273.0	
	③	3,917.0	3,917.0	1	강서구 명지동 591일원	276.0	-	276.0	
				2	강서구 명지동 591일원	274.0	-	274.0	
				3	강서구 명지동 591일원	275.0	-	275.0	
				4	강서구 명지동 591일원	276.0	-	276.0	
				5	강서구 명지동 591일원	277.0	-	277.0	
				6	강서구 명지동 591일원	289.0	-	289.0	
				7	강서구 명지동 591일원	282.0	-	282.0	
				8	강서구 명지동 591일원	282.0	-	282.0	
				9	강서구 명지동 591일원	288.0	-	288.0	
				10	강서구 명지동 591일원	279.0	-	279.0	
				11	강서구 명지동 591일원	279.0	-	279.0	
				12	강서구 명지동 591일원	279.0	-	279.0	
				13	강서구 명지동 591일원	279.0	-	279.0	
				14	강서구 명지동 591일원	282.0	-	282.0	
D-12	①	1,506.0	1,506.0	1	강서구 명지동 516-58일원	323.0	-	323.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516-53일원	292.0	-	292.0	
				3	강서구 명지동 516-53일원	292.0	-	292.0	
				4	강서구 명지동 605-6일원	292.0	-	292.0	
				5	강서구 명지동 605-6일원	307.0	-	307.0	
	②	2,502.0	2,502.0	1	강서구 명지동 519일원	280.0	-	280.0	
				2	강서구 명지동 519일원	276.0	-	276.0	
				3	강서구 명지동 519일원	276.0	-	276.0	
				4	강서구 명지동 519일원	276.0	-	276.0	
				5	강서구 명지동 562일원	276.0	-	276.0	
				6	강서구 명지동 521일원	276.0	-	276.0	
				7	강서구 명지동 521일원	276.0	-	276.0	
				8	강서구 명지동 560-3일원	276.0	-	276.0	
				9	강서구 명지동 560-3일원	290.0	-	290.0	
	③	1,687.0	1,687.0	1	강서구 명지동 531일원	280.0	-	280.0	
				2	강서구 명지동 531일원	280.0	-	280.0	
				3	강서구 명지동 531일원	280.0	-	280.0	
				4	강서구 명지동 531일원	280.0	-	280.0	
				5	강서구 명지동 531일원	280.0	-	280.0	
				6	강서구 명지동 531일원	287.0	-	287.0	
	④	1,862.0	1,862.0	1	강서구 명지동 519일원	333.0	-	333.0	
				2	강서구 명지동 519일원	305.0	-	305.0	
				3	강서구 명지동 566일원	314.0	-	314.0	
				4	강서구 명지동 568일원	314.0	-	314.0	
				5	강서구 명지동 565일원	305.0	-	305.0	
				6	강서구 명지동 519일원	291.0	-	291.0	
	⑤	1,631.0	1,631.0	1	강서구 명지동 521-2일원	291.0	-	291.0	
				2	강서구 명지동 521-2일원	262.0	-	262.0	
				3	강서구 명지동 521-2일원	281.0	-	281.0	
				4	강서구 명지동 521-2일원	279.0	-	279.0	
				5	강서구 명지동 521-2일원	263.0	-	263.0	
				6	강서구 명지동 521-2일원	255.0	-	255.0	
	⑥	1,097.0	1,097.0	1	강서구 명지동 521-2일원	282.0	-	282.0	

도면 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2	강서구 명지동 531-2일원	282.0	-	282.0	
				3	강서구 명지동 531-2일원	268.0	-	268.0	
				4	강서구 명지동 521-2일원	265.0	-	265.0	
	⑦	2,606.0	2,606.0	1	강서구 명지동 531-2일원	307.0	-	307.0	
				2	강서구 명지동 531-2일원	288.0	-	288.0	
				3	강서구 명지동 531-2일원	253.0	-	253.0	
				4	강서구 명지동 531-2일원	251.0	-	251.0	
				5	강서구 명지동 531-2일원	250.0	-	250.0	
				6	강서구 명지동 531-2일원	240.0	-	240.0	
				7	강서구 명지동 531-2일원	249.0	-	249.0	
				8	강서구 명지동 531-2일원	237.0	-	237.0	
				9	강서구 명지동 531-2일원	261.0	-	261.0	
				10	강서구 명지동 531-2일원	270.0	-	270.0	
	⑧	811.0	811.0	1	강서구 명지동 533-2일원	279.0	-	279.0	
				2	강서구 명지동 533-4일원	265.0	-	265.0	
				3	강서구 명지동 533-4일원	267.0	-	267.0	
	⑨	975.0	975.0	1	강서구 명지동 517-7일원	315.0	-	315.0	
				2	강서구 명지동 517-7일원	330.0	-	330.0	
				3	강서구 명지동 517-7일원	330.0	-	330.0	
	⑩	2,248.0	2,248.0	1	강서구 명지동 522-1일원	286.0	-	286.0	
				2	강서구 명지동 522-1일원	269.0	-	269.0	
				3	강서구 명지동 569일원	269.0	-	269.0	
				4	강서구 명지동 570-1일원	269.0	-	269.0	
				5	강서구 명지동 522-6일원	284.0	-	284.0	
				6	강서구 명지동 522-6일원	284.0	-	284.0	
				7	강서구 명지동 522-6일원	284.0	-	284.0	
				8	강서구 명지동 522-1일원	303.0	-	303.0	
	⑪	2,727.0	2,727.0	1	강서구 명지동 531-5일원	266.0	-	266.0	
				2	강서구 명지동 531-5일원	265.0	-	265.0	
				3	강서구 명지동 531-5일원	264.0	-	264.0	
				4	강서구 명지동 531-5일원	264.0	-	264.0	
				5	강서구 명지동 531-5일원	266.0	-	266.0	
				6	강서구 명지동 531-5일원	282.0	-	282.0	
				7	강서구 명지동 531-5일원	279.0	-	279.0	
				8	강서구 명지동 531-5일원	279.0	-	279.0	
				9	강서구 명지동 531-5일원	280.0	-	280.0	
				10	강서구 명지동 531-5일원	282.0	-	282.0	
	⑫	2,069.0	2,069.0	1	강서구 명지동 522-1일원	299.0	-	299.0	
				2	강서구 명지동 575일원	297.0	-	297.0	
				3	강서구 명지동 522-3일원	297.0	-	297.0	
				4	강서구 명지동 522-6일원	297.0	-	297.0	
				5	강서구 명지동 522-6일원	297.0	-	297.0	
				6	강서구 명지동 522-4일원	297.0	-	297.0	
				7	강서구 명지동 531-7일원	285.0	-	285.0	
	⑬	1,466.0	1,466.0	1	강서구 명지동 531-7일원	281.0	-	281.0	
				2	강서구 명지동 531-7일원	293.0	-	293.0	
				3	강서구 명지동 531-7일원	293.0	-	293.0	
				4	강서구 명지동 531-7일원	293.0	-	293.0	

도면 번호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5	강서구 명지동 531-7일원	306.0	-	306.0	
	⑭	926.0	926.0	1	강서구 명지동 533-7일원	288.0	-	288.0	
				2	강서구 명지동 533-7일원	304.0	-	304.0	
				3	강서구 명지동 533-8일원	334.0	-	334.0	
D-13	①	716.0	716.0	1	강서구 명지동 533-3일원	253.0	-	253.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533-3일원	235.0	-	235.0	
				3	강서구 명지동 533-9일원	228.0	-	228.0	
	②	1,414.0	1,414.0	1	강서구 명지동 533-3일원	310.0	-	310.0	
				2	강서구 명지동 533-3일원	279.0	-	279.0	
				3	강서구 명지동 536-4일원	279.0	-	279.0	
				4	강서구 명지동 536-4일원	279.0	-	279.0	
				5	강서구 명지동 536-4일원	267.0	-	267.0	
	③	1,153.0	1,153.0	1	강서구 명지동 536-4일원	276.0	-	276.0	
				2	강서구 명지동 536-4일원	288.0	-	288.0	
				3	강서구 명지동 536-4일원	288.0	-	288.0	
				4	강서구 명지동 536-4일원	301.0	-	301.0	
	④	1,188.0	1,188.0	1	강서구 명지동 533-6일원	300.0	-	300.0	
				2	강서구 명지동 533-7일원	294.0	-	294.0	
				3	강서구 명지동 533-7일원	294.0	-	294.0	
				4	강서구 명지동 533-6일원	300.0	-	300.0	
	⑤	1,654.0	1,654.0	1	강서구 명지동 536-6일원	290.0	-	290.0	
				2	강서구 명지동 536-6일원	281.0	-	281.0	
				3	강서구 명지동 536-8일원	278.0	-	278.0	
				4	강서구 명지동 536-8일원	278.0	-	278.0	
				5	강서구 명지동 536-6일원	281.0	-	281.0	
				6	강서구 명지동 536-6일원	246.0	-	246.0	
	⑥	1,409.0	1,409.0	1	강서구 명지동 536-6일원	381.0	-	381.0	
				2	강서구 명지동 536-6일원	338.0	-	338.0	
				3	강서구 명지동 536-8일원	345.0	-	345.0	
				4	강서구 명지동 536-8일원	345.0	-	345.0	
	⑦	888.0	888.0	1	강서구 명지동 533-7일원	272.0	-	272.0	
				2	강서구 명지동 533-7일원	294.0	-	294.0	
				3	강서구 명지동 533-8일원	322.0	-	322.0	
	⑧	1,368.0	1,368.0	1	강서구 명지동 540일원	281.0	-	281.0	
				2	강서구 명지동 540일원	276.0	-	276.0	
				3	강서구 명지동 540일원	275.0	-	275.0	
				4	강서구 명지동 540일원	275.0	-	275.0	
				5	강서구 명지동 540일원	261.0	-	261.0	
	⑨	737.0	737.0	1	강서구 명지동 546일원	241.0	-	241.0	
				2	강서구 명지동 546일원	253.0	-	253.0	
				3	강서구 명지동 546일원	243.0	-	243.0	

※ 필지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내에서만 허용(단, 필지합병계획에 따른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허용)
※ 필지합병의 경우에도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지침도 내용 준수

2) 공동주택 용지(변경)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123,590.1	증) 6.0	1,123,596.1	
A1	A1	강서구 명지동 3328	60,583.0	-	60,583.0	1-1단계
A2	A2	강서구 명지동 3347	37,026.9	-	37,026.9	1-1단계
A3	A3	강서구 명지동 3400	39,517.7	-	39,517.7	1-1단계
A4	A4	강서구 명지동 594일원	61,636.0	-	61,636.0	1-4단계:338 2단계:61,298
A5	A5	강서구 명지동 1957-7일원	48,239.0	증) 6.0	48,245.0	1-4단계:47,846 2단계:399
A6	A6	강서구 명지동 987-8일원	13,034.0	-	13,034.0	1-4단계:8,586 2단계:4,448
B1	B1	강서구 명지동 3399	58,256.0	-	58,256.0	1-1단계
B2	B2	강서구 명지동 3361	51,080.3	-	51,080.3	1-1단계
B3	B3	강서구 명지동 3350	38,966.9	-	38,966.9	1-1단계
B4	B4	강서구 명지동 3415	33,992.9	-	33,992.9	1-1단계
B5	B5	강서구 명지동 3354	40,410.6	-	40,410.6	1-1단계
B6	B6	강서구 명지동 3344	33,009.2	-	33,009.2	1-1단계
B7	B7	강서구 명지동 3343	31,663.3	-	31,663.3	1-1단계
B8	B8	강서구 명지동 3325	48,127.5	-	48,127.5	1-1단계
B9	B9	강서구 명지동 3417	37,923.2	-	37,923.2	1-1단계
B10	B10	강서구 명지동 3423	41,852.9	-	41,852.9	1-1단계
B11	B11	강서구 명지동 764일원	60,598.0	-	60,598.0	특별계획구역9 2단계
B12	B12	강서구 명지동 784-5일원	61,891.0	-	61,891.0	1-4단계:1,092 2단계:60,799
B13	B13	강서구 명지동 949일원	41,096.0	-	41,096.0	특별계획구역10 2단계
B14	B14	강서구 명지동 864일원	63,809.0	-	63,809.0	특별계획구역11 2단계
B15	B15	강서구 명지동 987일원	66,166.0	-	66,166.0	특별계획구역12 2단계
B17	B17	강서구 명지동 985일원	41,777.0	-	41,777.0	특별계획구역13 1-4단계:19,713 2단계:22,064
C2	C2	강서구 명지동 3404	85,785.7	-	85,785.7	1-1단계
E3	E3	강서구 명지동 3478-4일원	27,148.0	-	27,148.0	1-2단계

※ 대지분할선 이외의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A5	강서구 명지동 1957-7 일원	• 면적변경 (증 6.0㎡) - 48,239.0㎡ → 48,245.0㎡	•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조정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합계	74,290.4	74,290.4	-	-	74,290.4	-	74,290.4	
근생1	997.4	997.4	1	강서구 명지동 3425-1	334.2	-	334.2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425-2	331.6	-	331.6	
			3	강서구 명지동 3425-3	331.6	-	331.6	
근생2	999.0	999.0	1	강서구 명지동 3425-5	331.3	-	331.3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425-6	331.3	-	331.3	
			3	강서구 명지동 3425-7	336.4	-	336.4	
근생7	6,731.9	6,731.9	1	강서구 명지동 3440-1	875.1	-	875.1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440-2	926.3	-	926.3	
			3	강서구 명지동 3440-3	931.1	-	931.1	
			4	강서구 명지동 3440-4	995.3	-	995.3	
			5	강서구 명지동 3440-5	1,001.5	-	1,001.5	
			6	강서구 명지동 3440-6	1,001.4	-	1,001.4	
			7	강서구 명지동 3440-7	1,001.2	-	1,001.2	
근생8	7,008.9	7,008.9	1	강서구 명지동 3395-1	991.3	-	991.3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95-2	928.4	-	928.4	
			3	강서구 명지동 3395-3	991.5	-	991.5	
			4	강서구 명지동 3395-4	1,000.4	-	1,000.4	
			5	강서구 명지동 3395-5	1,000.2	-	1,000.2	
			6	강서구 명지동 3395-6	1,000.2	-	1,000.2	
			7	강서구 명지동 3395-7	1,096.9	-	1,096.9	
근생9	1,317.9	1,317.9	1	강서구 명지동 3365-1	416.6	-	416.6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65-2	424.5	-	424.5	
			3	강서구 명지동 3365-3	476.8	-	476.8	
근생10	1,997.2	1,997.2	1	강서구 명지동 3363-1	456.6	-	456.6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63-2	490.5	-	490.5	
			3	강서구 명지동 3363-3	494.5	-	494.5	
			4	강서구 명지동 3363-4	555.6	-	555.6	
근생11	1,681.2	1,681.2	1	강서구 명지동 3363-6	575.1	-	575.1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63-7	572.3	-	572.3	
			3	강서구 명지동 3363-8	533.8	-	533.8	
근생12	1,627.0	1,627.0	1	강서구 명지동 3363-10	496.1	-	496.1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63-11	547.9	-	547.9	
			3	강서구 명지동 3363-12	583.0	-	583.0	
근생13	2,038.3	2,038.3	1	강서구 명지동 3334-1	408.6	-	408.6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34-2	407.5	-	407.5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3	강서구 명지동 3334-3	407.4	-	407.4	
			4	강서구 명지동 3334-4	407.3	-	407.3	
			5	강서구 명지동 3334-5	407.5	-	407.5	
근생14	1,893.2	1,893.2	1	강서구 명지동 3334-7	475.2	-	475.2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34-8	475.4	-	475.4	
			3	강서구 명지동 3334-9	475.3	-	475.3	
			4	강서구 명지동 3334-10	467.3	-	467.3	
근생17	2,193.5	2,193.5	1	강서구 명지동 3317-1	953.7	-	953.7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17-2	568.9	-	568.9	
			3	강서구 명지동 3317-3	670.9	-	670.9	
근생18	1,565.7	1,565.7	1	강서구 명지동 3317-5	489.0	-	489.0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17-6	539.9	-	539.9	
			3	강서구 명지동 3317-7	536.8	-	536.8	
근생19	2,104.9	2,104.9	1	강서구 명지동 3331-1	377.3	-	377.3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31-2	402.5	-	402.5	
			3	강서구 명지동 3331-3	409.4	-	409.4	
			4	강서구 명지동 3331-4	455.4	-	455.4	
			5	강서구 명지동 3331-5	460.3	-	460.3	
근생20	1,806.6	1,806.6	1	강서구 명지동 3331-7	455.2	-	455.2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31-8	455.2	-	455.2	
			3	강서구 명지동 3331-9	455.0	-	455.0	
			4	강서구 명지동 3331-10	441.2	-	441.2	
근생21	1,380.1	1,380.1	1	강서구 명지동 3331-12	461.3	-	461.3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31-13	461.2	-	461.2	
			3	강서구 명지동 3331-14	457.6	-	457.6	
근생22	1,135.0	1,135.0	1	강서구 명지동 3338-1	553.1	-	553.1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38-2	581.9	-	581.9	
근생23	1,352.7	1,352.7	1	강서구 명지동 3365-5	467.4	-	467.4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65-6	439.6	-	439.6	
			3	강서구 명지동 3365-7	445.7	-	445.7	
근생24	2,241.8	2,241.8	1	강서구 명지동 3442-1	426.0	-	426.0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442-2	457.9	-	457.9	
			3	강서구 명지동 3442-3	458.0	-	458.0	
			4	강서구 명지동 3442-4	457.9	-	457.9	
			5	강서구 명지동 3442-5	442.0	-	442.0	
근생25	2,443.1	2,443.1	1	강서구 명지동 3453-1	468.1	-	468.1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453-2	483.0	-	483.0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3	강서구 명지동 3453-3	483.4	-	483.4	
			4	강서구 명지동 3453-4	492.7	-	492.7	
			5	강서구 명지동 3453-5	515.9	-	515.9	
근생29	3,299.0	3,299.0	1	강서구 명지동 377-1일원	847.0	-	847.0	1-3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76일원	625.0	-	625.0	
			3	강서구 명지동 285-1일원	609.0	-	609.0	
			4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609.0	-	609.0	
			5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609.0	-	609.0	
근생30	2,831.0	2,831.0	1	강서구 명지동 367-4일원	780.0	-	780.0	1-4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68-2일원	806.0	-	806.0	
			3	강서구 명지동 373-1일원	612.0	-	612.0	
			4	강서구 명지동 369-3일원	633.0	-	633.0	
근생31	3,019.0	3,019.0	1	강서구 명지동 536-13일원	1,006.0	-	1,006.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536-13일원	1,006.0	-	1,006.0	
			3	강서구 명지동 536-13일원	1,007.0	-	1,007.0	
근생32	3,208.0	3,208.0	1	강서구 명지동 536-3일원	1,069.0	-	1,069.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536-4일원	1,069.0	-	1,069.0	
			3	강서구 명지동 538-1일원	1,070.0	-	1,070.0	
근생33	2,906.0	2,906.0	1	강서구 명지동 538-2일원	828.0	-	828.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538-4일원	1,003.0	-	1,003.0	
			3	강서구 명지동 542일원	1,075.0	-	1,075.0	
근생34	3,318.0	3,318.0	1	강서구 명지동 666-1일원	553.0	-	553.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666-1일원	553.0	-	553.0	
			3	강서구 명지동 666-1일원	553.0	-	553.0	
			4	강서구 명지동 680일원	553.0	-	553.0	
			5	강서구 명지동 680일원	553.0	-	553.0	
			6	강서구 명지동 680일원	553.0	-	553.0	
근생35	2,549.0	2,549.0	1	강서구 명지동 719일원	510.0	-	510.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719일원	510.0	-	510.0	
			3	강서구 명지동 719일원	510.0	-	510.0	
			4	강서구 명지동 719일원	510.0	-	510.0	
			5	강서구 명지동 719일원	509.0	-	509.0	
근생36	2,543.0	2,543.0	1	강서구 명지동 728-1일원	508.0	-	508.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728-2일원	509.0	-	509.0	
			3	강서구 명지동 653일원	509.0	-	509.0	
			4	강서구 명지동 653일원	509.0	-	509.0	
			5	강서구 명지동 597-3일원	508.0	-	508.0	
근생37	2,566.0	2,566.0	1	강서구 명지동 596-5일원	650.0	-	650.0	2단계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2	강서구 명지동 597일원	675.0	-	675.0	
			3	강서구 명지동 597일원	655.0	-	655.0	
			4	강서구 명지동 597-2일원	586.0	-	586.0	
근생38		2,775.0	1	강서구 명지동 593-2일원	555.0	-	555.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593-2일원	555.0	-	555.0	
			3	강서구 명지동 593-2일원	555.0	-	555.0	
			4	강서구 명지동 593-2일원	555.0	-	555.0	
			5	강서구 명지동 593-2일원	555.0	-	555.0	
근생39		2,761.0	1	강서구 명지동 585-1일원	552.0	-	552.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585-1일원	552.0	-	552.0	
			3	강서구 명지동 585-1일원	552.0	-	552.0	
			4	강서구 명지동 585-1일원	552.0	-	552.0	
			5	강서구 명지동 559-7일원	553.0	-	553.0	

※ 필지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내에서만 허용(단, 필지합병계획에 따른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허용)

※ 필지합병의 경우에도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지침도 내용 준수

4) 복합용지(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면 적(㎡) 기정	면 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면 적(㎡) 변경	면 적(㎡) 변경후	
합 계			-	-	321,906.0	-	321,906.0	
복합1	70,087.0	70,087.0	복합1	강서구 명지동 1981일원	70,087.0	-	70,087.0	특별계획구역1 1-4단계 : 44,937 2단계 : 25,150
복합2	57,652.4	57,652.4	복합2	강서구 명지동 3594일원	57,652.4	-	57,652.4	특별계획구역2 1-2단계
복합3	62,546.2	62,546.2	복합3-1	강서구 명지동 3595-3	51,769.6	-	51,769.6	특별계획구역3 1-2단계
			복합3-2	강서구 명지동 3595-2	4,525.8	-	4,525.8	특별계획구역3 1-2단계
			복합3-3	강서구 명지동 3595-1	6,250.8	-	6,250.8	특별계획구역3 1-2단계
복합4	16,632.9	16,632.9	복합4	강서구 명지동 3599-1일원	16,632.9	-	16,632.9	특별계획구역4 1-2단계
복합5	97,694.0	97,694.0	복합5	강서구 명지동 2288일원	97,694.0	-	97,694.0	특별계획구역5 1-4단계
복합6	17,293.5	17,293.5	복합6	강서구 명지동 3599-3일원	17,293.5	-	17,293.5	특별계획구역6 1-2단계

나.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1) 상업용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합계	236,955.3	236,955.3	-	-	236,955.3	-	236,955.3	
상1	5,418.2	5,418.2	1	강서구 명지동 3581-1일원	2,767.0	-	2,767.0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81-2일원	2,651.2	-	2,651.2	
상2	5,381.2	5,381.2	1	강서구 명지동 3582-1일원	1,376.2	-	1,376.2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82-2일원	1,335.0	-	1,335.0	
			3	강서구 명지동 3582-3일원	1,335.0	-	1,335.0	
			4	강서구 명지동 3582-4일원	1,335.0	-	1,335.0	
상3	5,248.1	5,248.1	1	강서구 명지동 3583-1일원	1,286.9	-	1,286.9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83-2일원	1,292.2	-	1,292.2	
			3	강서구 명지동 3583-3일원	1,334.4	-	1,334.4	
			4	강서구 명지동 3583-4일원	1,334.6	-	1,334.6	
상4	5,502.4	5,502.4	1	강서구 명지동 3582-6일원	1,292.6	-	1,292.6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82-7일원	1,288.8	-	1,288.8	
			3	강서구 명지동 3582-8일원	1,288.7	-	1,288.7	
			4	강서구 명지동 3582-9일원	1,632.3	-	1,632.3	
상5	5,196.5	5,196.5	1	강서구 명지동 3583-6일원	1,289.2	-	1,289.2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83-7일원	1,288.0	-	1,288.0	
			3	강서구 명지동 3583-8일원	1,280.1	-	1,280.1	
			4	강서구 명지동 3583-9일원	1,339.2	-	1,339.2	
상6	1,966.6	1,966.6	1	강서구 명지동 3590-1일원	1,010.6	-	1,010.6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90-2일원	956.0	-	956.0	
상7	5,723.3	5,723.3	1	강서구 명지동 3586-1일원	2,926.4	-	2,926.4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86-2일원	2,796.9	-	2,796.9	
상8	5,532.1	5,532.1	1	강서구 명지동 3586-4일원	2,592.5	-	2,592.5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86-5일원	2,939.6	-	2,939.6	
상9	4,822.9	4,822.9	1	강서구 명지동 3587-2일원	803.2	-	803.2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87-3일원	803.5	-	803.5	
			3	강서구 명지동 3587-4일원	803.9	-	803.9	
			4	강서구 명지동 3587-8일원	804.2	-	804.2	
			5	강서구 명지동 3587-9일원	804.0	-	804.0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6	강서구 명지동 3587-10일원	804.1	-	804.1	
상10	1,897.8	1,897.8	1	강서구 명지동 3587-6일원	949.1	-	949.1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87-7일원	948.7	-	948.7	
상11	4,261.1	4,261.1	1	강서구 명지동 3588-1일원	1,288.6	-	1,288.6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88-2일원	1,114.8	-	1,114.8	
			3	강서구 명지동 3588-3일원	919.2	-	919.2	
			4	강서구 명지동 3588-4일원	938.5	-	938.5	
상12	1,092.9	1,092.9	1	강서구 명지동 3588-6일원	1,092.9	-	1,092.9	1-2단계
상13	4,276.7	4,276.7	1	강서구 명지동 3588-13일원	1,292.1	-	1,292.1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88-12일원	1,119.2	-	1,119.2	
			3	강서구 명지동 3588-11일원	923.1	-	923.1	
			4	강서구 명지동 3588-10일원	942.3	-	942.3	
상14	1,088.8	1,088.8	1	강서구 명지동 3588-8일원	1,088.8	-	1,088.8	1-2단계
상15	10,239.5	10,239.5	1	강서구 명지동 3589-10일원	2,350.6	-	2,350.6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89-9일원	2,479.1	-	2,479.1	
			3	강서구 명지동 3589-8일원	2,403.7	-	2,403.7	
			4	강서구 명지동 3589-6일원	3,006.1	-	3,006.1	
상16	7,808.6	7,808.6	1	강서구 명지동 3589-1일원	3,963.7	-	3,963.7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89-2일원	3,844.9	-	3,844.9	
상17	7,764.3	7,764.3	1	강서구 명지동 3589-4일원	2,917.9	-	2,917.9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89-5일원	4,846.4	-	4,846.4	
상18	4,800.9	4,800.9	1	강서구 명지동 3591-1일원	1,556.9	-	1,556.9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91-2일원	1,654.7	-	1,654.7	
			3	강서구 명지동 3591-3일원	1,589.3	-	1,589.3	
상19	1,626.4	1,626.4	1	강서구 명지동 3591-5일원	1,626.4	-	1,626.4	1-2단계
상20	2,729.5	2,729.5	1	강서구 명지동 3592-2일원	682.4	-	682.4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92-3일원	682.4	-	682.4	
			3	강서구 명지동 3592-9일원	682.4	-	682.4	
			4	강서구 명지동 3592-10일원	682.3	-	682.3	
상21	2,703.4	2,703.4	1	강서구 명지동 3592-5일원	633.7	-	633.7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92-6일원	717.3	-	717.3	
			3	강서구 명지동 3592-7일원	718.6	-	718.6	
			4	강서구 명지동 3592-8일원	633.8	-	633.8	
상22	4,901.5	4,901.5	1	강서구 명지동 3593-7일원	1,938.8	-	1,938.8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93-5일원	2,962.7	-	2,962.7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상23	10,226.6	10,226.6	1	강서구 명지동 3593-1일원	2,539.0	-	2,539.0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93-2일원	2,131.9	-	2,131.9	
			3	강서구 명지동 3593-3일원	2,215.3	-	2,215.3	
			4	강서구 명지동 3593-4일원	3,340.4	-	3,340.4	
상24	5,553.8	5,553.8	1	강서구 명지동 3597-1일원	2,876.9	-	2,876.9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97-2일원	2,676.9	-	2,676.9	
상25	3,292.3	3,292.3	1	강서구 명지동 3597-4일원	3,292.3	-	3,292.3	1-2단계
상26	5,479.8	5,479.8	1	강서구 명지동 3598-1일원	2,840.4	-	2,840.4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98-2일원	2,639.4	-	2,639.4	
상27	5,468.7	5,468.7	1	강서구 명지동 3598-4일원	2,641.7	-	2,641.7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598-5일원	2,827.0	-	2,827.0	
상28	4,621.2	4,621.2	1	강서구 명지동 3602-12일원	2,298.7	-	2,298.7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602-2일원	2,322.5	-	2,322.5	
상29	4,497.9	4,497.9	1	강서구 명지동 3603-1일원	2,261.7	-	2,261.7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603-2일원	2,236.2	-	2,236.2	
상30	4,657.5	4,657.5	1	강서구 명지동 3603-4일원	2,274.7	-	2,274.7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603-5일원	2,382.8	-	2,382.8	
상32	7,467.5	7,467.5	1	강서구 명지동 3357-1	979.5	-	979.5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57-2	1,044.6	-	1,044.6	
			3	강서구 명지동 3357-3	1,117.6	-	1,117.6	
			4	강서구 명지동 3357-4	1,121.4	-	1,121.4	
			5	강서구 명지동 3357-5	1,065.5	-	1,065.5	
			6	강서구 명지동 3357-6	1,037.4	-	1,037.4	
			7	강서구 명지동 3357-7	1,101.5	-	1,101.5	
상33	5,748.4	5,748.4	1	강서구 명지동 3412-1	1,099.3	-	1,099.3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412-2	1,110.3	-	1,110.3	
			3	강서구 명지동 3412-3	1,159.2	-	1,159.2	
			4	강서구 명지동 3412-4	1,200.2	-	1,200.2	
			5	강서구 명지동 3412-5	1,179.4	-	1,179.4	
상34	7,216.0	7,216.0	1	강서구 명지동 3358-2	1,091.7	-	1,091.7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358-3	1,047.9	-	1,047.9	
			3	강서구 명지동 3358-4	1,036.8	-	1,036.8	
			4	강서구 명지동 3358-5	1,095.0	-	1,095.0	
			5	강서구 명지동 3358-6	1,052.9	-	1,052.9	
			6	강서구 명지동 3358-7	1,036.8	-	1,036.8	
			7	강서구 명지동 3358-8	854.9	-	854.9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상35	7,330.9	7,330.9	1	강서구 명지동 3420-1	972.9	-	972.9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420-2	1,036.2	-	1,036.2	
			3	강서구 명지동 3420-3	1,055.0	-	1,055.0	
			4	강서구 명지동 3420-4	1,091.4	-	1,091.4	
			5	강서구 명지동 3420-5	1,036.1	-	1,036.1	
			6	강서구 명지동 3420-6	1,049.2	-	1,049.2	
			7	강서구 명지동 3420-7	1,090.1	-	1,090.1	
상36	4,155.0	4,155.0	1	강서구 명지동 800일원	1,385.0	-	1,385.0	1-4단계 : 1,956 2단계 : 2,199
			2	강서구 명지동 802일원	1,385.0	-	1,385.0	
			3	강서구 명지동 803일원	1,385.0	-	1,385.0	
상37	6,087.0	6,087.0	1	강서구 명지동 809일원	1,522.0	-	1,522.0	1-4단계 : 2,502 2단계: 3,585
			2	강서구 명지동 888-2일원	1,522.0	-	1,522.0	
			3	강서구 명지동 888-2일원	1,522.0	-	1,522.0	
			4	강서구 명지동 888-2일원	1,521.0	-	1,521.0	
상38	5,002.0	5,002.0	1	강서구 명지동 879-4일원	1,251.0	-	1,251.0	1-4단계 : 2,089 2단계 : 2,913
			2	강서구 명지동 879-4일원	1,251.0	-	1,251.0	
			3	강서구 명지동 877-2일원	1,250.0	-	1,250.0	
			4	강서구 명지동 876-4일원	1,250.0	-	1,250.0	
상39	6,650.0	6,650.0	1	강서구 명지동 875-1일원	1,330.0	-	1,330.0	1-4단계 : 3,038 2단계 : 3,612
			2	강서구 명지동 863-7일원	1,330.0	-	1,330.0	
			3	강서구 명지동 852-7일원	1,330.0	-	1,330.0	
			4	강서구 명지동 852-7일원	1,330.0	-	1,330.0	
			5	강서구 명지동 854-2일원	1,330.0	-	1,330.0	
상40	5,127.0	5,127.0	1	강서구 명지동 968-4일원	1,282.0	-	1,282.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968-8일원	1,282.0	-	1,282.0	
			3	강서구 명지동 969일원	1,282.0	-	1,282.0	
			4	강서구 명지동 969-1일원	1,281.0	-	1,281.0	
상41	2,392.0	2,392.0	1	강서구 명지동 968-4일원	1,196.0	-	1,196.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972-7일원	1,196.0	-	1,196.0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상42	2,408.0	2,408.0	1	강서구 명지동 972-7일원	1,204.0	-	1,204.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972-7일원	1,204.0	-	1,204.0	
상43	5,600.0	5,600.0	1	강서구 명지동 976-5일원	1,400.0	-	1,400.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976-7일원	1,400.0	-	1,400.0	
			3	강서구 명지동 976-7일원	1,400.0	-	1,400.0	
			4	강서구 명지동 976-9일원	1,400.0	-	1,400.0	
상44	4,879.0	4,879.0	1	강서구 명지동 968-9일원	1,222.0	-	1,222.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972-9일원	1,220.0	-	1,220.0	
			3	강서구 명지동 972-11일원	1,220.0	-	1,220.0	
			4	강서구 명지동 969일원	1,217.0	-	1,217.0	
상45	4,948.0	4,948.0	1	강서구 명지동 972-9일원	1,237.0	-	1,237.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972-9일원	1,237.0	-	1,237.0	
			3	강서구 명지동 972-11일원	1,237.0	-	1,237.0	
			4	강서구 명지동 972-11일원	1,237.0	-	1,237.0	
상47	4,515.0	4,515.0	1	강서구 명지동 969-3일원	1,230.0	-	1,230.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972-13일원	1,028.0	-	1,028.0	
			3	강서구 명지동 972-15일원	1,037.0	-	1,037.0	
			4	강서구 명지동 969-11일원	1,220.0	-	1,220.0	
상48	1,360.0	1,360.0	1	강서구 명지동 972-12일원	680.0	-	680.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1920일원	680.0	-	680.0	
상49	4,216.0	4,216.0	1	강서구 명지동 1915일원	2,108.0	-	2,108.0	1-4단계 : 2,405 2단계 : 1,811
			2	강서구 명지동 977-11일원	2,108.0	-	2,108.0	
상50	2,685.0	2,685.0	1	강서구 명지동 969-15일원	1,342.0	-	1,342.0	1-4단계 : 1,987 2단계 : 698
			2	강서구 명지동 977일원	1,343.0	-	1,343.0	
상51	2,724.0	2,724.0	1	강서구 명지동 977일원	1,362.0	-	1,362.0	1-4단계
			2	강서구 명지동 977-9일원	1,362.0	-	1,362.0	
상52	2,664.0	2,664.0	1	강서구 명지동 977-12일원	2,664.0	-	2,664.0	1-4단계

※ 필지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내에서만 허용(단, 필지합병계획에 따른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허용)

2) 업무용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53,219.8	553,219.8	-	-	553,219.8	-	553,219.8	
업1	45,594.0	45,594.0	1	강서구 명지동 2903-2일원	11,410.0	-	11,410.0	1-4단계
			2	강서구 명지동 2878일원	11,678.0	-	11,678.0	
			3	강서구 명지동 2881일원	11,308.0	-	11,308.0	
			4	강서구 명지동 2883-1일원	11,198.0	-	11,198.0	
업2	44,592.0	44,592.0	1	강서구 명지동 2883-5일원	10,727.0	-	10,727.0	1-4단계
			2	강서구 명지동 2883-9일원	11,265.0	-	11,265.0	
			3	강서구 명지동 2979일원	11,576.0	-	11,576.0	
			4	강서구 명지동 2980-2일원	11,024.0	-	11,024.0	
업3	4,658.5	4,658.5	1	강서구 명지동 3603-7일원	4,658.5	-	4,658.5	1-2단계
업4	13,601.4	13,601.4	1	강서구 명지동 3604-1일원	4,986.5	-	4,986.5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604-2일원	3,608.3	-	3,608.3	
			3	강서구 명지동 3604-5일원	5,006.6	-	5,006.6	
업5	36,923.7	36,923.7	1	강서구 명지동 3605-1일원	5,337.4	-	5,337.4	1-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605-2일원	6,361.8	-	6,361.8	
			3	강서구 명지동 3605-3일원	6,935.0	-	6,935.0	
			4	강서구 명지동 3605-4일원	6,329.8	-	6,329.8	
			5	강서구 명지동 3605-5일원	6,200.2	-	6,200.2	
			6	강서구 명지동 3605-6일원	5,759.5	-	5,759.5	
업6	40,968.2	40,968.2	1	강서구 명지동 3432-1	10,460.8	-	10,460.8	1-1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432-2	8,864.6	-	8,864.6	
			3	강서구 명지동 3432-3	5,790.2	-	5,790.2	
			4	강서구 명지동 3432-4	6,956.7	-	6,956.7	
			5	강서구 명지동 3432-5	8,895.9	-	8,895.9	
업9	15,775.0	15,775.0	1	강서구 명지동 260-4일원	11,104.0	-	11,104.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260-7일원	4,671.0	-	4,671.0	
업10	14,701.0	14,701.0	1	강서구 명지동 265-2일원	5,575.0	-	5,575.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72일원	4,889.0	-	4,889.0	
			3	강서구 명지동 372일원	4,237.0	-	4,237.0	
업11	9,181.0	9,181.0	1	강서구 명지동 267일원	4,605.0	-	4,605.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372-3일원	4,576.0	-	4,576.0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업12	9,502.0	9,502.0	1	강서구 명지동 662일원	5,144.0	-	5,144.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662일원	4,358.0	-	4,358.0	
업13	24,333.0	24,333.0	1	강서구 명지동 662-1일원	5,950.0	-	5,950.0	1-4단계 : 1,134 2단례: 23,199
			2	강서구 명지동 662-3일원	6,247.0	-	6,247.0	
			3	강서구 명지동 664일원	6,083.0	-	6,083.0	
			4	강서구 명지동 666일원	6,053.0	-	6,053.0	
업14	29,319.0	29,319.0	1	강서구 명지동 658-5일원	3,983.0	-	3,983.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657-5일원	3,940.0	-	3,940.0	
			3	강서구 명지동 651-3일원	3,894.0	-	3,894.0	
			4	강서구 명지동 678일원	3,844.0	-	3,844.0	
			5	강서구 명지동 666일원	5,584.0	-	5,584.0	
			6	강서구 명지동 659-1일원	4,037.0	-	4,037.0	
			7	강서구 명지동 658-6일원	4,037.0	-	4,037.0	
업15	22,479.0	22,479.0	1	강서구 명지동 666-3일원	7,811.0	-	7,811.0	1-4단계 : 1,819 2단계: 20,660
			2	강서구 명지동 668일원	7,827.0	-	7,827.0	
			3	강서구 명지동 669일원	6,841.0	-	6,841.0	
업16	14,734.0	14,734.0	1	강서구 명지동 666-4일원	3,544.0	-	3,544.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680-2일원	3,805.0	-	3,805.0	
			3	강서구 명지동 681일원	3,871.0	-	3,871.0	
			4	강서구 명지동 667일원	3,514.0	-	3,514.0	
업17	9,453.0	9,453.0	1	강서구 명지동 722일원	3,516.0	-	3,516.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722일원	2,501.0	-	2,501.0	
			3	강서구 명지동 722-3일원	3,436.0	-	3,436.0	
업18	16,191.0	16,191.0	1	강서구 명지동 658일원	4,435.0	-	4,435.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657일원	4,478.0	-	4,478.0	
			3	강서구 명지동 657일원	3,626.0	-	3,626.0	
			4	강서구 명지동 658-3일원	3,652.0	-	3,652.0	
업19	12,150.0	12,150.0	1	강서구 명지동 723-1일원	6,104.0	-	6,104.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723-1일원	3,283.0	-	3,283.0	
			3	강서구 명지동 723-4일원	2,763.0	-	2,763.0	
업20	8,714.0	8,714.0	1	강서구 명지동 673일원	8,714.0	-	8,714.0	1-4단계 : 519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2단계: 8,195
업21	10,461.0	10,461.0	1	강서구 명지동 724일원	5,257.0	-	5,257.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724일원	5,204.0	-	5,204.0	
업22	4,197.0	4,197.0	1	강서구 명지동 736일원	4,197.0	-	4,197.0	2단계
업23	55,435.0	55,435.0	1	강서구 명지동 904-2일원	55,435.0	-	55,435.0	1-4단계 : 1,430 2단계: 54,005
업24	41,455.0	41,455.0	1	강서구 명지동 905-1일원	41,455.0	-	41,455.0	1-4단계 : 1,352 2단계 40,103
업25	41,551.0	41,551.0	1	강서구 명지동 910-10일원	41,551.0	-	41,551.0	1-4단계 : 1,362 2단계: 40,189
업26	12,530.0	12,530.0	1	강서구 명지동 673일원	6,213.0	-	6,213.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686-1일원	6,317.0	-	6,317.0	
업27	14,721.0	14,721.0	1	강서구 명지동 667일원	4,023.0	-	4,023.0	2단계
			2	강서구 명지동 684일원	7,348.0	-	7,348.0	
			3	강서구 명지동 670일원	3,350.0	-	3,350.0	

※ 필지분할 불허

※ 규제내용이 동일한 연접한 2개 필지의 필지합병계획을 작성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으며, 보행자도로 및 공공보행통로가 사이에 있는 필지간의 합병은 불허

※ 필지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지침도 내용 준수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1) 주차장(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46,821.5	-	46,821.5	
주2	주2	강서구 명지동 2024-2일원	1,379.0	-	1,379.0	1-3단계
주3	주3	강서구 명지동 3587-1일원	2,506.0	-	2,506.0	1-2단계
주4	주4	강서구 명지동 3592-1일원	3,234.1	-	3,234.1	1-2단계
주6	주6	강서구 명지동 3603-8일원	4,463.6	-	4,463.6	1-2단계
주9	주9	강서구 명지동 3459	1,643.0	-	1,643.0	1-1단계
주11	주11	강서구 명지동 3412-6	1,818.1	-	1,818.1	1-1단계
주12	주12	강서구 명지동 3358-1	1,818.9	-	1,818.9	1-1단계
주14	주14	강서구 명지동 3388-1	1,024.6	-	1,024.6	1-1단계
주15	주15	강서구 명지동 3368-1	706.1	-	706.1	1-1단계
주16	주16	강서구 명지동 3374-1	706.3	-	706.3	1-1단계
주17	주17	강서구 명지동 3520-5일원	669.5	-	669.5	1-2단계
주18	주18	강서구 명지동 3517-4일원	430.3	-	430.3	1-2단계
주19	주19	강서구 명지동 3494-3일원	567.7	-	567.7	1-2단계
주20	주20	강서구 명지동 3484-1일원	1,397.0	-	1,397.0	1-2단계
주21	주21	강서구 명지동 3321-2	2,184.5	-	2,184.5	1-1단계
주23	주23	강서구 명지동 3462-1일원	1,324.9	-	1,324.9	1-2단계
주24	주24	강서구 명지동 3503-5일원	590.8	-	590.8	1-2단계
주25	주25	강서구 명지동 3507-5일원	590.9	-	590.9	1-2단계
주26	주26	강서구 명지동 3597-5일원	2,308.2	-	2,308.2	1-2단계
주27	주27	강서구 명지동 397-6일원	1,123.0	-	1,123.0	2단계
주28	주28	강서구 명지동 533-9일원	609.0	-	609.0	2단계
주29	주29	강서구 명지동 522-4일원	1,647.0	-	1,647.0	2단계
주30	주30	강서구 명지동 602-6일원	1,257.0	-	1,257.0	2단계
주32	주32	강서구 명지동 722-3일원	2,471.0	-	2,471.0	2단계
주33	주33	강서구 명지동 678-6일원	2,895.0	-	2,895.0	2단계
주34	주34	강서구 명지동 1074-6일원	2,120.0	-	2,120.0	1-4단계 : 1,016 2단계 : 1,104
주35	주35	강서구 명지동 876-4일원	2,120.0	-	2,120.0	1-4단계 : 957 2단계 : 1,163
주36	주36	강서구 명지동 972-14일원	3,216.0	-	3,216.0	1-4단계 : 427 2단계 : 2,789

2) 공공청사(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62,878.1	-	62,878.1	
공1	공1	강서구 명지동 607-5일원	9,930.6	-	9,930.6	1-2단계 강서경찰서
공3	공3	강서구 명지동 3321-1	3,598.2	-	3,598.2	1-1단계
공4	공4	강서구 명지동 3584	324.0	-	324.0	1-2단계 해양파출소
공5	공5	강서구 명지동 3602-4	1,002.5	-	1,002.5	1-2단계 경찰파출소
공6	공6	강서구 명지동 3600-1	18,175.8	-	18,175.8	1-2단계 서부지청
공7	공7	강서구 명지동 3600-2	18,174.0	-	18,174.0	1-2단계 서부지원
공9	공9	강서구 명지동 969-6일원	2,635.0	-	2,635.0	1-4단계 : 227 2단계 : 2,408
공10	공10	강서구 명지동 969-3일원	2,459.0	-	2,459.0	2단계
공11	공11	강서구 명지동 747일원	6,579.0	-	6,579.0	2단계

3) 교육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302,361.4	-	302,361.4	
유1	유1	강서구 명지동 3313-8	719.6	-	719.6	1-1단계
유2	유2	강서구 명지동 3500-2	1,162.0	-	1,162.0	1-2단계
유3	유3	강서구 명지동 3388-3	1,217.4	-	1,217.4	1-1단계
유4	유4	강서구 명지동 3428-2	1,225.9	-	1,225.9	1-1단계
유5	유5	강서구 명지동 1795일원	3,903.0	-	3,903.0	1-4단계
유6	유6	강서구 명지동 780-2일원	3,901.0	-	3,901.0	2단계
유7	유7	강서구 명지동 583-4일원	3,903.0	-	3,903.0	2단계
유8	유8	강서구 명지동 395일원	1,266.0	-	1,266.0	2단계
초1	초1	강서구 명지동 3477-2	13,339.2	-	13,339.2	1-2단계
초2	초2	강서구 명지동 3385	13,304.1	-	13,304.1	1-1단계
초3	초3	강서구 명지동 3427	13,799.0	-	13,799.0	1-1단계
초4	초4	강서구 명지동 3405	13,003.9	-	13,003.9	1-1단계
초5	초5	강서구 명지동 1793-10일원	16,000.0	-	16,000.0	1-4단계
초6	초6	강서구 명지동 872-2일원	18,961.0	-	18,961.0	2단계
초7	초7	강서구 명지동 584-3일원	17,751.0	-	17,751.0	2단계
중1	중1	강서구 명지동 3386	14,376.8	-	14,376.8	1-1단계
중2	중2	강서구 명지동 3408	13,531.3	-	13,531.3	1-1단계
중3	중3	강서구 명지동 630-2일원	13,589.0	-	13,589.0	1-3단계
중4	중4	강서구 명지동 883-2일원	12,501.0	-	12,501.0	2단계
중5	중5	강서구 명지동 592일원	12,500.0	-	12,500.0	2단계
고1	고1	강서구 명지동 1604일원	15,770.0	-	15,770.0	1-3단계
고2	고2	강서구 명지동 1992-1일원	15,694.0	-	15,694.0	1-3단계
고3	고3	강서구 명지동 647일원	17,579.0	-	17,579.0	2단계
고4	고4	강서구 명지동 3318-1	9,184.2	-	9,184.2	1-1단계
외교	외교	강서구 명지동 2009-6일원	54,180.0	-	54,180.0	1-3단계

4) 열공급설비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20,985	-	20,985	
열1	열1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20,985	-	20,985	1-3단계

5) 전기공급설비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2,835	-	2,835	
전1	전1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2,835	-	2,835	1-3단계

6) 가스공급설비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85.0	-	85.0	
가1	가1	강서구 명지동 2009-1일원	25.0	-	25.0	1-3단계
가2	가2	강서구 명지동 3340일원	60.0	-	60.0	1-1단계

7) 시장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17,037.7	-	17,037.7	
시장1	시장1	강서구 명지동 3438일원	17,037.7	-	17,037.7	1-1단계

8) 종교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10,939.5	-	10,939.5	
종1	종1	강서구 명지동 3429-4	1,751.9	-	1,751.9	1-1단계
종2	종2	강서구 명지동 3388-2	927.0	-	927.0	1-1단계
종4	종4	강서구 명지동 3321-5	2,903.5	-	2,903.5	1-1단계
종5	종5	강서구 명지동 3575-2일원	1,969.1	-	1,969.1	1-2단계
종6	종6	강서구 명지동 392-6일원	1,277.0	-	1,277.0	2단계
종7	종7	강서구 명지동 546일원	866.0	-	866.0	2단계
종8	종8	강서구 명지동 558-5일원	1,245.0	-	1,245.0	2단계

9) 연구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152,551.1	-	152,551.1	
연구1	1	강서구 명지동 2826-2일원	26,649.0	-	26,649.0	1-4단계
	2	강서구 명지동 2834-10일원	29,430.0	-	29,430.0	
연구2	1	강서구 명지동 3608-2일원	17,082.1	-	17,082.1	1-2단계 : 17,082.1 1-4단계: 23,792.0
	2	강서구 명지동 2776-8일원	23,792.0	-	23,792.0	
연구3	연구3	강서구 명지동 893일원	55,598.0	-	55,598.0	2단계

10) 편익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9,503.9	-	9,503.9	
편3	편3	강서구 명지동 3428-3	1,549.0	-	1,549.0	1-1단계
편4	편4	강서구 명지동 3390-1	2,117.7	-	2,117.7	1-1단계
편6	편6	강서구 명지동 3321-3	2,752.9	-	2,752.9	1-1단계
편7	편7	강서구 명지동 3321-4	2,753.3	-	2,753.3	1-1단계
편8	편8	강서구 명지동 3486-1일원	331.0	-	331.0	1-2단계

11) 주유소(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6,991.0	-	6,991.0	
주유2	주유2	강서구 명지동 3604-3일원	2,062.0	-	2,062.0	1-2단계
주유4	주유4	강서구 명지동 3420-8	1,698.0	-	1,698.0	1-1단계
주유5	주유5	강서구 명지동 533-10일원	1,055.0	-	1,055.0	2단계
주유6	주유6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2,176.0	-	2,176.0	1-4단계

12) 의료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71,602.5	-	71,602.5	
의2	의2	강서구 명지동 2160일원	64,370.0	-	64,370.0	1-4단계
의3	의3	강서구 명지동 3632-1일원	7,232.5	-	7,232.5	1-2단계

13) 창고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9,955.0	-	9,955.0	
창1	1	강서구 명지동 2032일원	752.0	-	752.0	1-3단계
	2	강서구 명지동 2033-1일원	752.0	-	752.0	
	3	강서구 명지동 2033-1일원	752.0	-	752.0	
	4	강서구 명지동 2033-7일원	751.0	-	751.0	
	5	강서구 명지동 2033-5일원	751.0	-	751.0	
	6	강서구 명지동 2033-5일원	751.0	-	751.0	
	7	강서구 명지동 2033-10일원	756.0	-	756.0	
창2	1	강서구 명지동 2760일원	780.0	-	780.0	1-3단계
	2	강서구 명지동 2760일원	781.0	-	781.0	
	3	강서구 명지동 2760일원	780.0	-	780.0	
	4	강서구 명지동 2756-1일원	782.0	-	782.0	
	5	강서구 명지동 2756-1일원	782.0	-	782.0	
	6	강서구 명지동 2756-1일원	785.0	-	785.0	

14)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4,691.9	-	4,691.9	
오1	오1	강서구 명지동 3433일원	2,789.9	-	2,789.9	1-1단계
오2	오2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1,902.0	-	1,902.0	1-4단계

15) 방수설비(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1,575.4	-	1,575.4	
방1	방1	강서구 명지동 1293-12일원	386	-	386	1-3단계
방2	방2	강서구 명지동 3525-1일원	1,096	-	1,096	1-2단계 유수지3 중복결정
방3	방3	강서구 명지동 3525-3일원	93.4	-	93.4	1-2단계 연결녹지4 중복결정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변경)도(S=1/5,000)

- 별첨1-라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1) 일반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필지형 단독주택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R1	D1~D13	용도	허용	• 단독주택(필지당 5가구 이하에 한함, 다중주택 제외) • 점포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바목, 아목 내지 하목) •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점포주택 -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사용은 1층과 지하층에 한한다. -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 • 담장 :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 지붕 및 옥탑(권장사항)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옥상녹화시 허용 -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 - 단독주택용지의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 외부에는 노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 다락을 설치할 경우, 다락으로의 출입은 내부계단만 허용하고 다락이 있는 옥상(지붕)으로 출입하는 직통계단(외부계단)은 설치할 수 없다.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일반도로에 면한 변 : 1.0m 건축한계선 지정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용도 지정 표기시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기준은 그 근거법 명칭을 생략한다.

■ **블록형 단독주택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R2	H2, H10	용도	허용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타운하우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타운하우스 - 타운하우스라 함은 둘이상의 독립된 주택이 기타 부대시설을 공유하고 여러 세대의 건축물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연속저층 단독주택을 말한다. - 타운하우스는 3층 이하로서 각 가구를 통하는 독립된 출입구를 설치하여야한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 • 담장 :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 건축물 외부에는 노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 지붕 및 옥탑(권장사항)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옥상녹화시 허용 -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일반도로에 면한 변 : 2.0m 건축한계선 지정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2) 공동주택(변경없음)

■ 연립주택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	E3	용도	허용	•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세대수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함)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 제2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판매시설 중 나목·다목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럭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타운하우스 - 타운하우스라 함은 둘이상의 독립된 주택이 기타 부대시설을 공유하고 여러 세대의 건축물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연속저층 단독주택을 말한다. - 타운하우스는 3층 이하로서 각 가구를 통하는 독립된 출입구를 설치하여야한다. • 주거동의 길이제한 - '주거동의 길이' 라함은 건축물 각 1개층의 호수 및 길이를 말한다. - 4호이하로 한다. -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ㅁ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 • 담장, 계단 -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타운하우스의 경우 담장 높이는 1.0m)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지붕 및 옥탑 - 건축물의 지붕은 조형적 디자인으로 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일반도로에 면한 변 : 5.0m 건축한계선 지정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아파트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1~A6 B1~10 B12 C2	용도	허용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세대수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단,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함)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 제2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판매시설 중 나목·다목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럭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주거동의 길이제한 - '주거동의 길이' 라함은 건축물 각 1개층의 호수 및 길이를 말한다. - 4호이하로 한다. -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ㅁ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 • 담장, 계단 -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지붕 및 옥탑 - 건축물의 지붕은 조형적 디자인으로 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저감방안 인 이격거리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며, 위치 및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별표1> 공동주택의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변경)

필지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호)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 고
		기정	변경					
A1	60㎡이하	60,583.0	60,583.0	1,680	20층이하	30%이하	220%이하	
A2	60㎡이하	37,026.9	37,026.9	1,120	20층이하	30%이하	200%이하	외국인임대
A3	60㎡이하	39,517.7	39,517.7	1,100	20/30층이하	25%이하	220%이하	
A4	60㎡이하	61,636.0	61,636.0	1,250 310	15/20층이하	25%이하	200%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 외국인 임대
A5	60㎡이하	48,239.0	48,245.0	1,200	15/24/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신혼희망타운
A6	60㎡이하	13,034.0	13,034.0	500	23/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행복주택
B1	60~85㎡이하	58,256.0	58,256.0	1,230	20/25층이하	25%이하	220%이하	
B2	60~85㎡이하	51,080.3	51,080.3	980	20층이하	30%이하	200%이하	
B3	60~85㎡이하	38,966.9	38,966.9	750	20층이하	30%이하	200%이하	
B4	60~85㎡이하	33,992.9	33,992.9	650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B5	60~85㎡이하	40,410.6	40,410.6	850	30층이하	25%이하	220%이하	
B6	60~85㎡이하	33,009.2	33,009.2	700	30층이하	25%이하	220%이하	
B7	60~85㎡이하	31,663.3	31,663.3	670	30층이하	25%이하	220%이하	
B8	60~85㎡이하	48,127.5	48,127.5	920	20층이하	30%이하	200%이하	일반임대
B9	60~85㎡이하	37,923.2	37,923.2	660	20층이하	25%이하	180%이하	
B10	60~85㎡이하	41,852.9	41,852.9	800	20층이하	25%이하	200%이하	
B11	60~85㎡이하	60,598.0	60,598.0	1,160	15/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특별계획구역9
B12	60~85㎡이하	61,891.0	61,891.0	1,180	15/20/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
B13	60~85㎡이하	41,096.0	41,096.0	790	16/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특별계획구역10
B14	60~85㎡이하	63,809.0	63,809.0	1,220	20/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특별계획구역11
B15	60~85㎡이하	66,166.0	66,166.0	1,270	28/30층이하	25%이하	200%이하	특별계획구역12
B17	60~85㎡이하	41,777.0	41,777.0	790	20/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특별계획구역13
C2	85㎡초과	85,785.7	85,785.7	1,210	20층이하	25%이하	200%이하	
E3	60~85㎡이하	27,148.0	27,148.0	410	4층이하	50%이하	120%이하	연립주택
복합1	85㎡초과	70,087.0	70,087.0	1,985	30층이하	60%이하	800%이하	특별계획구역1
복합2	85㎡초과	57,652.4	57,652.4	1,470	30층이하	60%이하	800%이하	특별계획구역2
복합3-1	85㎡초과	51,769.6	51,769.6	1,590	40층이하	60%이하	1,000%이하	특별계획구역3
복합4	85㎡초과	16,632.9	16,632.9	470	30층이하	60%이하	800%이하	특별계획구역4
복합6	85㎡초과	17,293.5	17,293.5	490	30층이하	60%이하	800%이하	특별계획구역6

주1)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높이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규모로 계획 할 수 있다.

주2) 대지분할가능선 반영 블록(A1, C2)은 각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세대수 배분함

※ 금회 변경사유 : A-5 면적 변경(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조정)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5">SR</td><td rowspan="15">근생
1,2,
7~14,
17~25,
29~39</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근린생활시설의 부대시설로 필지당 1개층에 한하여 1가구 허용 (단, 근생7,8은 제외)
- 부대시설은 허용용도인 주용도의 기능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총 연면적의 30%이하 적용하며, 지하층 및 1층에는 불허</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td></tr>
<tr><td rowspan="5">규모</td><td>건폐율</td><td colspan="2">60% 이하</td></tr>
<tr><td rowspan="2">용적률</td><td>근생1, 2, 7~14,
17~25, 29,
31~39</td><td>250% 이하</td></tr>
<tr><td>근생30</td><td>180% 이하</td></tr>
<tr><td rowspan="2">높이</td><td>근생1, 2, 7~14,
17~25, 29,
31~39</td><td>5층 이하</td></tr>
<tr><td>근생30</td><td>3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 건축물 외부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지붕 및 옥탑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담장, 대문, 계단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를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건축물 외부에는 노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colspan="2">●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나.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1) 상업시설 용지(변경없음)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1">S1</td><td rowspan="11">상
1,7,8,
16,17,
23~30</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 <별표2>상업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td></tr>
<tr><td>불허</td><td colspan="2">• <별표2>상업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td></tr>
<tr><td rowspan="5">규모</td><td>건폐율</td><td colspan="2">60% 이하</td></tr>
<tr><td rowspan="2">용적률</td><td>상1</td><td>420% 이하</td></tr>
<tr><td>상7,8,16,17,23~30</td><td>800% 이하</td></tr>
<tr><td rowspan="2">높이</td><td>상1</td><td>7층 이하</td></tr>
<tr><td>상7,8,16,17,23~30</td><td>15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colspan="2">•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1	상 2~6, 9~15, 18~22	용도	허용	• <별표2>상업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	• <별표2>상업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1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8">S1-1</td><td rowspan="8">상
40~45
47~52</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 <별표2>상업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td></tr>
<tr><td>불허</td><td colspan="2">● <별표2>상업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td></tr>
<tr><td rowspan="5">규모</td><td>건폐율</td><td colspan="2">60% 이하</td></tr>
<tr><td rowspan="2">용적률</td><td>상40,43,46,49,52</td><td>800% 이하</td></tr>
<tr><td>상41,42,44,45,47,48,50,51</td><td>590% 이하</td></tr>
<tr><td rowspan="2">높이</td><td>상40,43,46,49,52</td><td>15층 이하</td></tr>
<tr><td>상41,42,44,45,47,48,50,51</td><td>10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 아케이드 설치
- “아케이드 설치구간”이라 함은 1층 벽면지정선에 의한 후퇴부로서 보행을 위하여 개방된 통로공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필지의 사업자가 보행동선의 단절이 없도록 건축물 건설시 아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아케이드 설치 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아케이드의 유효 폭은 기둥, 계단 등 구조물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보행통로에 활용되는 폭원을 말하며, 연도형 아케이드의 경우에는 최소 1.5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아케이드의 유효높이는 아케이드 바닥면으로부터 유효 폭내 천장고 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연도형 아케이드의 경우에는 최소 3.5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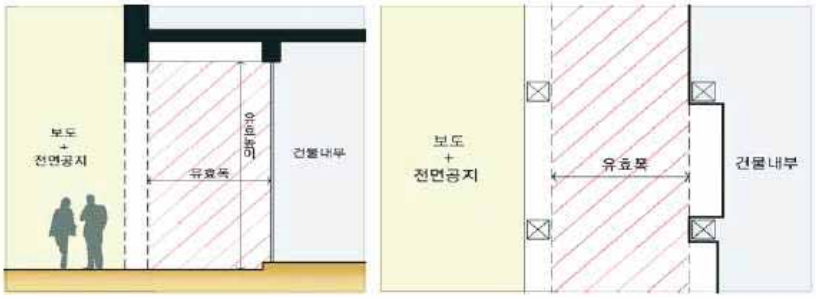

3. 보행자가 우천 등의 기상으로부터 보호되고 24시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하여야 하며, 아케이드의 유효 폭은 영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아케이드 공간 내 바닥면과 인접한 보도의 바닥 포장면은 단차가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5. 인접한 건축물과 단차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할 경우 12분의 1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아케이드 지형차이 극복 〉

</td></tr>
</table>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1-1	상 40~45 47~52	형태 및 외관	6. 연속적인 아케이드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에서 대지경계선까지 아케이드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접획지 건축물과 동일한 마감재로 조성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2	상 32~39	용도	허용	• <별표2>상업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	• <별표2>상업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별표2> 상업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변경없음)

구분	상업시설용지		
	일반상업		노선상업
도면표시	S1	S1-1	S2
해당가구	상1 ~ 30	상40 ~ 45, 47 ~ 52	상32 ~ 39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6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한함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제외	○ 도매시장 제외	○ 상점에 한함
운수시설	○	○	×
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	○
교육연구시설	○ 학원 및 연구소에 한함	○ 학원 및 연구소에 한함	○ 학원 및 연구소에 한함
노유자시설	○	○ 노인복지시설 제외	○ 노인복지시설 제외
운동시설 (운동장 제외)	○	○	○
업무시설	○	○	○
숙박시설	○	×	×
위락시설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 제외)	○	×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제외)	×	×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기타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	○	○
관광휴게시설	○	○	×

※ ○ : 허용용도, × : 불허용도

※ 단, 숙박 및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숙박시설은 100m, 위락시설은 50m 이격하며,(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됨) 주거지역이나 실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2) 업무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1	업 1~6	용도	허용		• <별표3>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		• <별표3>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업1~2	800% 이하
				업3~6	600% 이하
			높이	업1~2	30층 이하
				업3~6	2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2	업 15~17, 19~27	용도	허용		• <별표3>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		• <별표3>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업 15~17, 19~22, 26, 27	600% 이하
				업 23, 24, 25	1,000%이하
			높이	업 15~17, 19~22, 26, 27	20층 이하
				업 23, 24, 25	3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3	업 9~14, 18	용도	권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허용	● <별표3>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	● <별표3>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차목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준용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2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별표3> 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변경없음)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업무시설용지</th></tr>
<tr><th colspan="2">일반업무</th><th>지식업무</th></tr>
<tr><td>도면표시</td><td>U1</td><td>U2</td><td>U3</td></tr>
<tr><td>해당가구</td><td>업1 ~ 6</td><td>업15~17, 19~27</td><td>업9~14, 18</td></tr>
<tr><td>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td><td>×</td><td>×</td><td rowspan="17">● 주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의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부수용도 : 전체시설연면적의 30% 미만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상점 및 유사용도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td></tr>
<tr><td>제1종근린생활시설</td><td>○</td><td>○</td></tr>
<tr><td>제2종근린생활시설</td><td>○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6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한함</td><td>○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td></tr>
<tr><td>문화 및 집회시설</td><td>○</td><td>○</td></tr>
<tr><td>판매시설</td><td>○</td><td>○</td></tr>
<tr><td>운수시설</td><td>○</td><td>○</td></tr>
<tr><td>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td><td>○</td><td>○</td></tr>
<tr><td>교육연구시설</td><td>○</td><td>○</td></tr>
<tr><td>노유자시설</td><td>○</td><td>○
노인복지시설 제외</td></tr>
<tr><td>운동시설
(운동장 제외)</td><td>○</td><td>○</td></tr>
<tr><td>업무시설</td><td>○</td><td>○</td></tr>
<tr><td>숙박시설</td><td>○</td><td>×</td></tr>
<tr><td>위락시설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 제외)</td><td>○</td><td>×</td></tr>
<tr><td>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제외)</td><td>○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td><td>○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td></tr>
<tr><td>기타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td><td>○</td><td>○</td></tr>
<tr><td>관광휴게시설</td><td>×</td><td>×</td></tr>
</table>

※ ○ : 허용용도, × : 불허용도
※ 단, 숙박 및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숙박시설은 100m, 위락시설은 50m 이격한다.(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 업무용지를 20층 이상으로 계획시 조류충돌방지대책 수립(외장 유리창에 조류충돌방지 스티커 부착 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변경없음)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0">P1</td><td rowspan="10">주
3,4,6,
26</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부속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제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30% 이하로 함
- 부속용도의 배치는 지상1,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제외</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td></tr>
<tr><td rowspan="5">규모</td><td>건폐율</td><td colspan="2">70% 이하</td></tr>
<tr><td rowspan="2">용적률</td><td>주3,4,6</td><td>600% 이하</td></tr>
<tr><td>주26</td><td>800% 이하</td></tr>
<tr><td rowspan="2">높이</td><td>주3,4</td><td>10층 이하</td></tr>
<tr><td>주6,26</td><td>15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colspan="2">● 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colspan="2">●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0">P2</td><td rowspan="10">주
11,12</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부속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제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30% 이하로 함
- 부속용도의 배치는 지상1,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제외</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td></tr>
<tr><td rowspan="3">규모</td><td>건폐율</td><td colspan="2">80% 이하</td></tr>
<tr><td>용적률</td><td colspan="2">500% 이하</td></tr>
<tr><td>높이</td><td colspan="2">15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colspan="2">● 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colspan="2">●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3	주2, 15~20, 23~25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부속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제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30% 이하로 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규모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4	주 9, 14, 21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부속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제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30% 이하로 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규모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20% 이하
			높이	4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5	주 27~30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1.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을 부속용도로 건축할 수 있으며, 부속용도는 건축연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제외) 2. 부속용도의 배치는 지상1,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규모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통합디자인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6	주 32, 33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1.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을 부속용도로 건축할 수 있으며, 부속용도는 건축연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제외) 2. 부속용도의 배치는 지상1,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규모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통합디자인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7	주 34, 35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1.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을 부속용도로 건축할 수 있으며, 부속용도는 건축연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제외) 2. 부속용도의 배치는 지상1,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규모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통합디자인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8	주36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1.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을 부속용도로 건축할 수 있으며, 부속용도는 건축연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제외) 2. 부속용도의 배치는 지상1,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규모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1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통합디자인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2) 공공청사(변경없음)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5">G</td><td rowspan="15">공1,
3~7,
9,10</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지역자치센터 · 파출소 · 지구대 · 소방서 · 우체국 · 방송국 · 보건소 · 공공 도서관 · 건강보험공단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부속용도로서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rowspan="9">규모</td><td>건폐율</td><td colspan="2">60% 이하</td></tr>
<tr><td rowspan="4">용적률</td><td>공1,9,10</td><td>300% 이하</td></tr>
<tr><td>공3</td><td>240% 이하</td></tr>
<tr><td>공4,5</td><td>180% 이하</td></tr>
<tr><td>공6,7</td><td>800% 이하</td></tr>
<tr><td rowspan="4">높이</td><td>공1,9,10</td><td>5층 이하</td></tr>
<tr><td>공3</td><td>4층 이하</td></tr>
<tr><td>공4,5</td><td>3층 이하</td></tr>
<tr><td>공6,7</td><td>30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colspan="2">●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1	공11	용도	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지역자치센터 · 파출소 · 지구대 · 소방서 · 우체국 · 방송국 · 보건소 · 공공도서관 · 건강보험공단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허용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불허	• 권장/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1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3) 학교(변경없음)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3">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0">E1
E2
E3
E4</td><td rowspan="10">유1~8
초1~7
중1~5
고1~4</td><td rowspan="2">용도</td><td colspan="2">허용</td><td>• E1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E2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E3 :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 E4 :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td></tr>
<tr><td colspan="2">불허</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rowspan="5">규모</td><td colspan="2">건폐율</td><td>50% 이하</td></tr>
<tr><td rowspan="2">용적률</td><td>유1~8</td><td>200% 이하</td></tr>
<tr><td>초1~7
중1~5
고1~4</td><td>200% 이하
(단, 국제학교 및 BTL·BTO 사업시 250%이하)</td></tr>
<tr><td rowspan="2">높이</td><td>유1~8</td><td>4층 이하</td></tr>
<tr><td>초1~7
중1~5
고1~4</td><td>5층 이하</td></tr>
<tr><td colspan="3">형태 및 외관</td><td>-</td></tr>
<tr><td colspan="3">배치 및 건축선</td><td>-</td></tr>
<tr><td colspan="3">색 채</td><td>•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4) 열공급설비시설(변경없음)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8">Q1</td><td rowspan="8">열1</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발전시설 중 열공급설비시설</td></tr>
<tr><td>불허</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rowspan="3">규모</td><td>건폐율</td><td>50% 이하</td></tr>
<tr><td>용적률</td><td>250% 이하</td></tr>
<tr><td>높이</td><td>5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5) 전기공급설비시설(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Q2	전1	용도	허용	• 발전시설 중 전기공급설비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배치 및 건축선		-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변경	Q2	전1	용도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배치 및 건축선		-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6) 가스공급설비시설(변경없음)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0">Q5</td><td rowspan="10">가1,가2</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 가스공급설비시설</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rowspan="6">규모</td><td rowspan="2">건폐율</td><td>가1</td><td>60% 이하</td></tr>
<tr><td>가2</td><td>20% 이하</td></tr>
<tr><td rowspan="2">용적률</td><td>가1</td><td>150% 이하</td></tr>
<tr><td>가2</td><td>80% 이하</td></tr>
<tr><td rowspan="2">높이</td><td>가1</td><td>3층 이하</td></tr>
<tr><td>가2</td><td>4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colspan="2">•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7) 시장시설(변경없음)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0">MT</td><td rowspan="10">시장1</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td></tr>
<tr><td>불허</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td></tr>
<tr><td rowspan="3">규모</td><td>건폐율</td><td>60% 이하</td></tr>
<tr><td>용적률</td><td>400% 이하</td></tr>
<tr><td>높이</td><td>8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일반도로에 면한 변 : 7 ~ 10m 건축한계선 지정</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8) 종교시설(변경없음)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3">W</td><td rowspan="13">종
1, 2,
4, 5, 6, 7, 8</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부속용도(목회자숙소 등)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rowspan="6">규모</td><td>건폐율</td><td colspan="2">60% 이하</td></tr>
<tr><td rowspan="2">용적률</td><td>종1, 2, 4</td><td>200% 이하</td></tr>
<tr><td>종5, 6, 7, 8</td><td>180% 이하</td></tr>
<tr><td rowspan="3">높이</td><td>종1, 2</td><td>5층 이하</td></tr>
<tr><td>종4</td><td>4층 이하</td></tr>
<tr><td>종5, 6, 7, 8</td><td>3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colspan="2">•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9) 연구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6	연구1 연구2 연구3	용도	허용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교육원 • 부수용도로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6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10) 편익시설(변경없음)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th><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9">C</td><td rowspan="9">편3,4
편6,7,8</td><td rowspan="2">용도</td><td colspan="2">허용</td><td colspan="2">•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경마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td></tr>
<tr><td colspan="2">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td></tr>
<tr><td rowspan="4">규모</td><td colspan="2">건폐율</td><td colspan="2">5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colspan="2">200% 이하</td></tr>
<tr><td rowspan="2">높이</td><td rowspan="2">변경</td><td>편3,4</td><td>5층 이하</td></tr>
<tr><td>편6,7,8</td><td>4층 이하</td></tr>
<tr><td colspan="3">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3">배치 및 건축선</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td></tr>
<tr><td colspan="3">색 채</td><td colspan="2">•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11) 주유소(변경없음)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8">Q3</td><td rowspan="8">주유
2,4,
5,6</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부속용도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물 및 시설에 한함)</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rowspan="4">규모</td><td rowspan="2">건폐율</td><td>주유 2, 4, 5</td><td>60% 이하</td></tr>
<tr><td>주유 6</td><td>50% 이하</td></tr>
<tr><td>용적률</td><td colspan="2">150% 이하</td></tr>
<tr><td>높이</td><td colspan="2">3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colspan="2">•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12) 의료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M	의3	용도	허용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장례식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13) 창고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WA	창 1, 2	용도	허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14)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Q6	오 1,2	용도	허용	• 오수중계펌프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배치 및 건축선		-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15) 방수설비(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Q8	방 1,2,3	용도	허용	• 배수펌프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배치 및 건축선		-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table>
<tr><th>구 분</th><th>계획 내용</th></tr>
<tr><td>단독주택
근린생활용지</td><td>●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 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만 허용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한다. 다만, 한 필지에 진출입허용구간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차량의 출입구는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당 2대이상’과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td></tr>
<tr><td>공동주택</td><td>● 단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 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만 허용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설치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및 공동주택 이외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 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1개소당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table>
<tr><th>구 분</th><th>보관가능대수</th></tr>
<tr><td>주 동</td><td>주동세대당 0.3대</td></tr>
<tr><td>상 가</td><td>30대</td></tr>
<tr><td>복지관 및 관리소</td><td>15대</td></tr>
<tr><td>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td><td>10대</td></tr>
</table>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td></tr>
</table>

구 분	계획 내용
상업용지 업무용지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 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만 허용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대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설치 - 상업·업무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시설용지	• 차량출입구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 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만 허용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주차장 관련기준 -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위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
근린생활용지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공동주택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이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단지내 조경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 30% 이상 2.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 공동주택 : 40% 이상 3.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 50% 이상 4. 주거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단지내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구 분		계획 내용
상업용지 업무용지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대지내 조경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2.연면적 1,000㎡ ~ 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3.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함 • 대지내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투수성 포장’ 을 적극 권장한다.
기타시설용지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다. 기타계획(변경없음)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계획 내용</th></tr>
<tr><td>공통</td><td>생태
면적률
적용</td><td>

● 생태면적률(권장)
-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거 시설별 생태면적률 확보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생태면적률(%)</th></tr>
<tr><td rowspan="2">공동주택지</td><td>연립</td><td>35 이상</td></tr>
<tr><td>아파트</td><td>40 이상</td></tr>
<tr><td colspan="2">단독주택지(블록형포함)</td><td>40 이상</td></tr>
<tr><td colspan="2">상업·업무시설</td><td>30 이상</td></tr>
<tr><td colspan="2">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td><td>50 이상</td></tr>
<tr><td colspan="2">공공건물</td><td>40 이상</td></tr>
<tr><td colspan="2">기타시설</td><td>20 이상</td></tr>
</table>

※ 생태면적률 = $\frac{\text{자연순환 기능 면적}}{\text{전체 대상지 면적}} = \frac{\Sigma(\text{공간유형별 면적} \times \text{가중치})}{\text{전체 대상지 면적}} \times 100(\%)$

</td></tr>
</table>

<별표3>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
전면 공지	• ‘전면공지’ 라 함은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함.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하도록 함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 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 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 • ‘전면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경설치가 가능하다. - 경계부 처리 1.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함 2.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와 경관상세계획에서 별도의 포장계획을 제시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함 - 전면공지에 설치되는 조경을 건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에 맞게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 공지	•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을 말함 -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나 가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공개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진입부의 설치 1.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함 2.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 시설기준 1.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2.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법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3.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 4.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함 5.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함

구 분	계획 내용
공공 조경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함. 이 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하도록 함 • ‘공공조경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 등으로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하며, 공공조경 내 조경시설은 공공조경 면적의 50% 범위내에 설치 가능하고, 설치된 조경시설 중 공개공지와 연계된 부분의 설치면적에 대하여 건축심의 등을 거친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단, 차량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식재는 교목은 1㎡당 0.3본, 관목은 1㎡당 0.5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함.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하고,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함
공공 보행 통로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안 됨 - 공공보행통로 양 끝부분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함.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음.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권역구분

구 분	계획 내용

권역구분

- 권역구분

권역별 해당 블록

권역	블럭명	주요시설기능	권역이미지
A	경1, 근1, 완1•2•9, 어10, 연1,배1, D-1, 공1, 열1, 전1, 가1, 고2, 중3, 의3, 업8, H10	친환경 생태공원, 환경처리시설, 블록형 단독주택	Eco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어울림
B	복합1~6, 업1~6, 주유2, 공4•5•6•7, 연결1•2•4, 완3, 주2~4•6, 광2, 오1, 유수1, 소3•5, 연구1, 의2, 상1~30, 창1, 주26, 외교	워터프론트, 복합시설, 중심상업 및 업무시설	Vitality 미래국제도시의 활력
B-1 복합상업 권역	상40~50, 복합1, 공9, 주36	상업시설, 복합용지	Vitality 명지지구의 중심
C	소1, A-1~3, E-3•5, C-1•2, D-7•8, B-1~10, 근생1•2•17~21•26•27•29•30, 완4~8, 초1•3~5, 중1•2, 경1•2, 주11•12•19~21•24•25, 근2•3, 유1•4, 편3•6~8, 주유1~4, 연결2•3, 종1•4, 어3•4•6~9, 상32~35, 업7, 양1, 광3, 공2•3, 문1	중고층 주거지, 커뮤니티광장, 생태공원	Amenity 도심 생활속 쾌적함
C-1 주거생활 권역	상 36~39, 근생31~33, 35~39, 단독, 공동(A4~6, B12~17)m 초6~7, 중4~5, 고3, 유5~7, 종, 주27~31, 34, 35, 주유, 근7, 9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학교, 유치원, 근린공원	Amenity 도심 생활속 쾌적함
D	주9•18, H-2~4,D-2~6, 근생7~14•17~25 근4•5, 유2•3, 초2, 고1, 공3, 어5, 경2, 완4~6, 유수2•3, 편4, 종2•5, 소2•4, 시장1, 연구2, 연결3~4, 가2, 창2, 방1~3	블록형 단독주거지, 커뮤니티 지원시설, 연결녹지, 수로	Community 안락한 커뮤니티의 편안함
E 중심업무 권역	업9~25, 연구3, 공11, 근생34 주32, 33, 주유6, 오2, 유보1, 근7	업무시설, 연구시설(R&D),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Vitality 국제업무도시의 활력

- 색채계획 적용 방안
  - 색채계획의 적용은 공동주택 및 복합용지(주거부분)를 그 대상으로 하며,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심의내용에 따른다.
  - 색채계획에서 제시된 색상을 기준으로 배색이미지 사례를 가급적 적용하도록 한다.
  - 색채계획 적용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적용 색채적용시 고려사항는 다음과 같다.

■ 권역별 도시이미지

권역	해당블럭	구 분	계 획 내 용
A	경1, 근1, 완1•2•9, 어10, 연1,배1, D-1, 공1, 열1, 전1, 가1, 고2, 중3, 의3, 업8, H-10	계획 방향	 • 서낙동강하구의 매립지를 중심으로 풍부한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의 문화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 매립지 내 건축물 등 대형구조물의 계획을 지양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함을 감안하여 자연환경 복원개념의 공원을 계획한다. 또한 공원부지 및 유보지의 유수와 자생식물의 식생을 활용하여 양호한 조류생육환경을 조성한다. • 생태적으로 중요한 자연환경 복원지역과 시가화 지역이 접하는 중간지점은 집단시설에 의한 생태적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활동성 이용시설의 입지를 자제하고, 대중적이면서 제한적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 열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도시환경시설을 도심과 이격배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호한다. 환경시설은 주요가로변 완충녹지 확보를 통해 시각적 차폐를 유도한다. • 저층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수경관 및 주변 공원의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도시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주조색과 지붕색은 저채도를 적용하여 차분하고 편안한 색채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계획한다. • 국도 24호에서 진입하는 가로축은 유보지의 미래개발에 대비하여 충분한 녹지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도시진입가로경관을 조성한다.

<table>
<tr><th>권역</th><th>해당블럭</th><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A</td><td>경1, 근1,
완1•2•9, 어10,
연1,배1, D-1,
공1, 열1, 전1,
가1, 고2, 중3,
의3, 업8, H-10</td><td>색채
계획</td><td>

• A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7.5R, 7.5Y, 2.5YR
- 명도/채도 (V/C) : 9.0 ~ 9.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7.5R, 7.5Y, 2.5YR
- 명도/채도 (V/C) : 7.0 ~ 9.0 / 1.5 ~ 3.0
- 강조색 : - 색상 (H) : 7.5R, 7.5Y, 2.5YR
- 명도/채도 (V/C) : 6.0 ~ 7.0 / 3.0 ~ 4.0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3">A권역 색채계획</th></tr>
<tr><th colspan="3">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
<tr><td rowspan="4">색
채
이
미
지</td><td rowspan="2">주조색</td><td>1</td><td rowspan="4"></td><td rowspan="4"></td><td rowspan="4"></td></tr>
<tr><td>2</td></tr>
<tr><td rowspan="2">보조색</td><td>3</td></tr>
<tr><td>강조색</td><td>4</td></tr>
</table>

A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A권역 배색예시</th></tr>
<tr><th>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
<tr><td>배
색
이
미
지</td><td></td><td></td><td></td></tr>
</table>

공동주택 배색예시

</td></tr>
</table>

권역	해당블럭	구 분	계 획 내 용
B	복합1~6, 업1~6, 주유2, 공4•5•6•7, 연결1•2•4, 완3, 주2~4•6, 광2, 오1, 유수1, 소3•5, 연구1, 의2, 상1~30, 창1, 주26, 외교	계획 방향	 • 근거리 내 해상경관과 원경의 산을 향한 조망이 가능한 지역현황 특성에 따라 주변경관을 향한 조망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필요하다. 명지지구 자체의 다양한 경관요소 -수변, 도로, 공원·녹지, 수로 등-에 대한 조망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통해 신도시의 CBD가 지닐 수 있는 인공적이며 무미건조한 도시환경을 극복하도록 한다. • 명지지구의 CBD는 국제업무의 교류기능과 중심상업기능, 주상복합기능, 종합의료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지닌 건축물 경관의 수직적/ 수평적인 제어를 통해 조화롭게 계획된 신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한다. • 주변의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차폐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는 권역으로서 공간과 공간 사이에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회랑 등) 건축한계선을 통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남측 명지지구와의 경계부 연결녹지 내 자연친화적인 도심환경을 위한 친수, 친자연적 요소를 적극 활용도모한다. • 도심부 가로활동을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전용가로의 이벤트성을 부여하고, 국제도시에 걸맞는 디자인성 높은 가로시설을 계획한다. • 보행자 중심의 친근한 공간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저층부(지상으로부터 10m 이하) 부분의 지상부 필로티, 차양, 간판, 가로시설 등의 디자인 가이드를 통한 가로환경의 통일성과 미관성을 증진한다.

<table>
<tr><th>권역</th><th>해당블럭</th><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B</td><td>복합1~6, 업1~6, 주유2, 공4•5•6•7, 연결1•2•4, 완3, 주2~4•6, 광2, 오1, 유수1, 소3•5, 연구1, 의2, 상1~30, 창1, 주26, 외교</td><td>색채계획</td><td>

• B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5PB, 5YR ~ 7.5YR
- 명도/채도 (V/C) : 9.0 ~ 9.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5PB, 5YR ~ 7.5YR
- 명도/채도 (V/C) : 7.0 ~ 9.0 / 1.5 ~ 3.0
- 강조색 : - 색상 (H) : 5PB, 5YR ~ 7.5YR
- 명도/채도 (V/C) : 6.0 ~ 7.0 / 3.0 ~ 4.0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3">B권역 색채계획</th></tr>
<tr><th colspan="3">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
<tr><td rowspan="4">색채이미지</td><td>주조색</td><td>1</td><td rowspan="4"></td><td rowspan="4"></td><td rowspan="4"></td></tr>
<tr><td rowspan="2">보조색</td><td>2</td></tr>
<tr><td>3</td></tr>
<tr><td>강조색</td><td>4</td></tr>
</table>

B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B권역 배색예시</th></tr>
<tr><th>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
<tr><td>배색이미지</td><td></td><td></td><td></td></tr>
</table>

공동주택 배색예시

</td></tr>
</table>

권역	해당블럭	구 분	계 획 내 용
B-1	상40~50, 복합1, 공9, 주36	계획 방향	 • 명지지구1단계 복합용지와 연계를 통해 지구중심의 상업지역 경관을 형성하도록 계획한다. • 서낙동강, 근린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서낙동강에 면한 복합용지는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서→동으로 높아지는 중첩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하며, 공원에 면한 상업시설은 근린공원에서 조망 시 이질적이거나 장벽을 형성하는 위압적인 규모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상업지역 내 보행중심축을 계획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거리의 활력 증진을 위해 저층부 아케이드 조성 등 쾌적한 보행자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 트램, 경전철 노선의 결절부는 광장과 연계하여 개방감 있는 중심 공간으로 형성하며,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행동선과 연계 및 아케이드 조성을 권장하는 등 역세권 경관을 형성한다.

권역	해당블럭	구 분	계 획 내 용
B-1	상40~50, 복합1, 공9, 주36	색채 계획	

• B-1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5YR ~ 5GY, 10BG ~ 10B
- 명도/채도 (V/C) : 7.0 ~ 9.0 / 1.0 ~ 2.0
- 보조색 : - 색상 (H) : 5PB ~ 5GY, 10BG ~ 10B
  - 명도/채도 (V/C) : 6.0 ~ 8.0 / 1.5 ~ 6.0
- 강조색 : - 색상 (H) : 5PB ~ 5GY, 10BG ~ 10B
  - 명도/채도(V/C) : 3.0 ~ 6.0 / 1.0 ~ 8.0

구분			B-1권역 색채계획		
색상			가	나	다
색채이미지	주조색	1			
	보조색	2			
		3			
	강조색	4			

B-1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업시설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구분	B-1권역 배색예시		
색상	가	나	다
배색이미지			

상업시설 배색예시

권역	해당블럭	구 분	계 획 내 용
C	소1, A-1~3, E-3•5, C-1•2, D-7•8, B-1~10, 근생1•2•17~21•26•27•29•30, 완4~8, 초1•3~5, 중1•2, 경1•2, 주11•12•19~21•24•25, 근2•3, 유1•4, 편3•6~8, 주유1~4, 연결2•3, 종1•4, 어3•4•6~9, 상32~35, 업7, 양1, 광3, 공2•3 문1	계획 방향	 • 고층형 공동주택단지가 남북으로 형성되는 지역으로 커뮤니티 회랑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간이미지를 형성한다. • 내부간선도로와 커뮤니티회랑의 사이에 공동주택단지가 길게 선형의 입면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어 배경의 송학산, 봉화산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단지를 설계할 때 단지 내에서 을숙도 방향 낙동강하구 수변경관과 커뮤니티 회랑으로의 개방적인 조망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격자형 도시골격이 돋보이는 형태를 취하며 동서방향의 개방형 시각회랑을 확보한다. • 도시기능을 형성하는 B권역과의 경계부에 선형의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남북의 바람길을 형성한다. • 커뮤니티별 공원/광장 등의 조성을 통해 휴식과 녹음을 제공하고 보행동선과 녹지체계를 오픈스페이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table>
<tr><th>권역</th><th>해당블럭</th><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C</td><td>소1, A-1~3, E-3•5, C-1•2, D-7•8, B-1~10, 근생1•2•17~21•26•27•29•30, 완4~8, 초1•3~5, 중1•2, 경1•2, 주11•12•19~21•24•25, 근2•3, 유1•4, 편3•6~8, 주유1~4, 연결2•3, 종1•4, 어3•4•6~9, 상32~35, 업7, 양1, 광3, 공2•3, 문1</td><td>색채계획</td><td>

• C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7.5R, 2.5YR ~ 7.5YR
- 명도/채도 (V/C) : 9.0 ~ 9.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7.5R, 2.5YR ~ 7.5YR
- 명도/채도 (V/C) : 7.0 ~ 9.0 / 1.5 ~ 3.0
- 강조색 : - 색상 (H) : 7.5R, 2.5YR ~ 7.5YR
- 명도/채도(V/C) : 6.0 ~ 7.0 / 3.0 ~ 4.0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3">C권역 색채계획</th></tr>
<tr><th colspan="3">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
<tr><td rowspan="4">색채이미지</td><td rowspan="2">주조색</td><td>1</td><td rowspan="4"></td><td rowspan="4"></td><td rowspan="4"></td></tr>
<tr><td rowspan="2">보조색</td><td>2</td></tr>
<tr><td>3</td></tr>
<tr><td>강조색</td><td>4</td></tr>
</table>

C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C권역 배색예시</th></tr>
<tr><th>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
<tr><td>배색이미지</td><td></td><td></td><td></td></tr>
</table>

공동주택 배색예시

</td></tr>
</table>

권역	해당블럭	구 분	계 획 내 용
C-1	상 36~39, 근생31~33, 35~39, 단독, 공동(A4~6, B12~17), 초6~7, 중4~5, 고3, 유5~7, 종, 주27~31, 34, 35, 주유, 근7, 9	계획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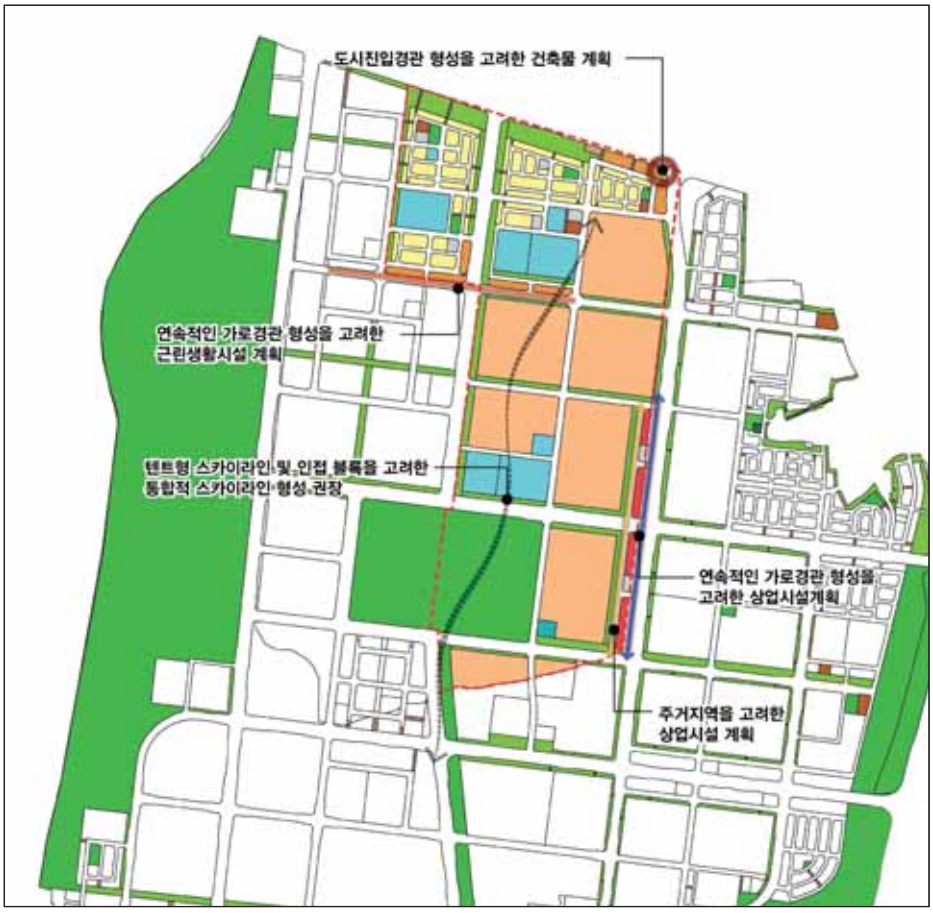 ● 명지지구 1단계구역과 연속성 있는 정연한 주거지경관을 형성한다. - 명지지구 1단계구역과 조화있는 경관형성을 위하여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높이계획과 주변의 공동주택을 고려한 색채계획을 수립하며, 공동주택은 가로와 직각배치를 유도하여 가로의 균형미 있는 연속적인 경관을 형성한다. - 공원, 학교, 경전철과 면하거나 진입경관을 형성하는 공동주택은 국제적인 도시이미지 형성을 고려하여 외관을 계획하며,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정연한 경관을 형성하고 외부공간으로 녹음이 풍부한 주거지경관을 조성한다. ● 안전한 보행환경을 이루는 생활가로를 형성한다. - 공동주택단지를 가로지르는 남북방향의 내부도로를 중심으로 부대 및 복리시설을 배치하여 생활가로 형성을 유도하며, 차량의 진출입 최소화 및 전면공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 단독주택은 보행자전용도로를 중심으로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며, 단지 내 도로에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공동주택은 근린공원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을 계획하며, 경계부에는 수목 등 녹지가 풍부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동선 구조를 명확하게 하여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table>
<tr><th>권역</th><th>해당블럭</th><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2">C-1</td><td rowspan="2">상 36~39,
근생31~33, 35~39,
단독, 공동(A4~6,
B12~17),
초6~7, 중4~5, 고3,
유5~7,
종, 주27~31, 34,
35, 주유, 근7, 9</td><td>계획
방향</td><td>• 상업시설은 경전철에 면하여 전면부가 연속적으로 노출되므로 특색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차별화된 입면을 계획하며, 주요 도로변으로는 건축선 지정을 통하여 가지런한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 낙동남로에서 명지지구로의 진입부는 관문경관을 고려하여 광장과 완충녹지를 조성하며, 계절의 변화와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관문적 특성을 유지하고, 낙동남로와 진입부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은 조형미 있게 외관을 계획한다.</td></tr>
<tr><td>색채
계획</td><td>• C-1권역 공동주택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7.5R, 2.5YR ~ 7.5YR
- 명도/채도 (V/C) : 9.0 ~ 9.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7.5R, 2.5YR ~ 7.5YR
- 명도/채도 (V/C) : 6.0 ~ 8.0 / 1.5 ~ 3.0
- 강조색 : - 색상 (H) : 7.5R, 2.5YR ~ 7.5YR
- 명도/채도 (V/C) : 4.0 ~ 6.0 / 2.0 ~ 4.0
<table><tr><td colspan="3">구분</td><td colspan="3">C-1권역 공동주택 색채계획</td></tr><tr><td colspan="3">색상</td><td>가</td><td>나</td><td>다</td></tr><tr><td rowspan="4">색채이미지</td><td>주조색</td><td>1</td><td rowspan="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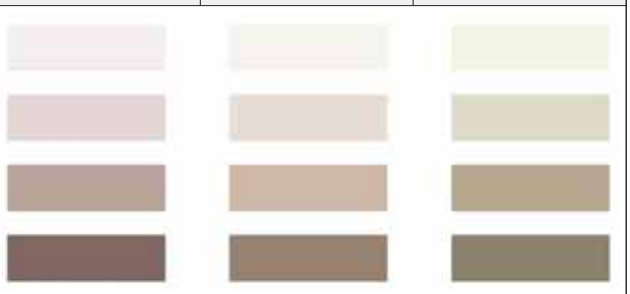 </td></tr><tr><td rowspan="2">보조색</td><td>2</td></tr><tr><td>3</td></tr><tr><td>강조색</td><td>4</td></tr></table>C-1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table><tr><td>구분</td><td colspan="3">C-1권역 공동주택 배색예시</td></tr><tr><td>색상</td><td>가</td><td>나</td><td>다</td></tr><tr><td>배색이미지</td><td colspan="3"> </td></tr></table>공동주택 배색예시</td></tr>
</table>

<table>
<tr><th>권역</th><th>해당블럭</th><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C-1</td><td>상 36~39,
근생31~33, 35~39,
단독, 공동(A4~6,
B12~17),
초6~7, 중4~5, 고3,
유5~7,
종, 주27~31, 34,
35, 주유, 근7, 9</td><td>색채
계획</td><td>

• C-1권역 단독주택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5PB, 5YR ~ 7.5YR, 10B
- 명도/채도 (V/C) : 9.0 ~ 9.5 / 1.0 ~ 2.0
- 보조색 : - 색상 (H) : 5PB, 5YR ~ 7.5YR, 10B
- 명도/채도 (V/C) : 6.0 ~ 8.0 / 1.5 ~ 5.0
- 강조색 : - 색상 (H) : 5PB, 5YR ~ 7.5YR, 10B
- 명도/채도 (V/C) : 3.0 ~ 7.0 / 2.0 ~ 7.0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3">C-1권역 단독주택 색채계획</th></tr>
<tr><th colspan="3">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
<tr><td rowspan="4">색채이미지</td><td rowspan="2">주조색</td><td>1</td><td rowspan="4"></td><td rowspan="4"></td><td rowspan="4"></td></tr>
<tr><td>2</td></tr>
<tr><td rowspan="2">보조색</td><td>3</td></tr>
<tr><td>강조색</td><td>4</td></tr>
</table>

C-1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C-1권역 단독주택 배색예시</th></tr>
<tr><th>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
<tr><td>배색이미지</td><td></td><td></td><td></td></tr>
</table>

단독주택 배색예시

•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색채는 B-1권역의 색채계획을 기준으로 대상지 인근의 용지와 조화있는 색채 사용

</td></tr>
</table>

권역	해당블럭	구 분	계 획 내 용
D	주9•18, H-2~4,D-2~6, 근생7~14•17~25 근4•5, 유2•3, 초2, 고1, 공3, 어5, 경2, 완4~6, 유수2•3, 편4, 종2•5, 소2•4, 시장1, 연구2, 연결3~4, 가2, 창2, 방1	계획 방향	 • 낙동강 하구와 면하는 지역으로 생태녹지와 연접하는 안락한 저층의 주거지역을 계획한다. • 지구 동측과 남북을 에워싼 연결녹지 내 수로경관을 형성하여 하천 주변 공간을 근린 생활 시설물(커뮤니티회랑)과 연계한 친수형 커뮤니티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커뮤니티회랑을 중심으로 명지 거주자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권역으로서 보다 친근하고 쾌적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적인 이미지보다는 자연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도록 건축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 수변공간과 연계하여 자연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색채이미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다른 권역에 비해 체계화된 색채계획 수립 용이) • 수변경관을 따라서 자연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도록 간접조명을 중심으로 한 차분하고 안정된 야간경관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권역으로 진입하는 외곽순환도로에 의해 분리되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속성을 갖는 보행 네트워크 형성. 보행 네트워크와 그린 네트워크를 일치시켜 보행자들이 편안하면서도 자연의 이미지가 풍부한 보행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table>
<tr><th>권역</th><th>해당블럭</th><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2">D</td><td rowspan="2">주9•18,
H-2~4,D-2~6,
근생7~14•17~25
근4•5, 유2•3, 초2,
고1, 공3, 어5,
경2, 완4~6,
유수2•3, 편4,
종2•5, 소2•4,
시장1, 연구2,
연결3~4, 가2, 창2,
방1</td><td>계획
방향</td><td>• 권역 내 보행자 전용가로의 경우 인공소재(콘크리트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소재(점토포장, 잔디포장, 데크)를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행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단, 유지·관리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자연친화적 소재(나무, 벽돌, 흙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 저층의 건축물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는 D권역은 주변의 자연 환경과 조화로운 도시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주조색과 지붕색은 저채도를 적용하여 돌출감, 압박감이 덜 느껴질 수 있는 색채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계획한다.</td></tr>
<tr><td>색채
계획</td><td>• D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10B, 5G
- 명도/채도 (V/C) : 9.0 ~ 9.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10B, 5G
- 명도/채도 (V/C) : 7.0 ~ 9.0 / 1.5 ~ 3.0
- 강조색 : - 색상 (H) : 10B, 5G
- 명도/채도(V/C) : 6.0 ~ 7.0 / 3.0 ~ 4.0
<table><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3">D권역 색채예시</th></tr><tr><th colspan="3">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tr><td rowspan="4">색채이미지</td><td>주조색</td><td>1</td><td rowspan="4"></td><td rowspan="4"></td><td rowspan="4"></td></tr><tr><td rowspan="2">보조색</td><td>2</td></tr><tr><td>3</td></tr><tr><td>강조색</td><td>4</td></tr></table>D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table><tr><th>구분</th><th colspan="3">D권역 배색예시</th></tr><tr><th>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tr><td>배색이미지</td><td></td><td></td><td></td></tr></table>공동주택 배색예시</td></tr>
</table>

권역	해당블럭	구 분	계 획 내 용
E	업9~25, 연구3, 공11, 근생34 주32, 33, 주유6, 오2, 유보1, 근7	계획 방향	 • 서낙동강변 공원·녹지의 자연환경을 도심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수변공원에서 대상지로 유입되는 녹지축을 형성하며, 1단계와 연계를 위하여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남-북, 동-서로 주요 녹지축을 형성한다. • 서낙동강변 근린공원을 따라 풍부한 수림대를 조성하여 수림대와 건축물이 중첩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 상징적인 도시이미지 연출을 위하여 랜드마크와 고층건축물 및 낙동남로 진입부에 면하는 건축물은 조형미 있는 건축물 입면으로 계획한다. • 권역을 연결하는 쾌적한 보행녹지축 조성을 위하여 녹음이 풍부하고 계절변화에 따라 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조경공간을 형성하고, 가로변으로는 휴게시설 및 전면공지를 배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공원, 경전철, 트램에서 업무시설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맥락성 있는 연속적인 경관, 입면변화를 통한 조형미 있는 건축물 경관을 형성한다.

권역	해당블럭	구 분	계 획 내 용
E	업9~25, 연구3, 공11, 근생34 주32, 33, 주유6, 오2, 유보1, 근7	색채 계획	

- E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5PB, 5YR, 5G~10B
    - 명도/채도 (V/C) : 9.0 ~ 9.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5PB, 5YR, 5G~10B
    - 명도/채도 (V/C) : 6.0 ~ 8.0 / 1.0 ~ 3.0
  - 강조색 : - 색상 (H) : 5PB, 5YR, 5G~10B
    - 명도/채도(V/C) : 4.0 ~ 6.0 / 1.0 ~ 4.0

구분			E권역 색채예시		
색상			가	나	다
색채이미지	주조색	1			
	보조색	2			
		3			
	강조색	4			

E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업무, 연구시설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구분	E권역 배색예시		
색상	가	나	다
배색이미지			

업무 · 연구시설 배색예시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본 계획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에 따른다.

구 분		계획 내용
옥외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시설 및 표시제한 - 옥외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9. 그밖에 도로 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 - 특정 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 광고물등의 설치량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 이내로 하며, 2층 이하 벽면이용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약국, 이 · 미용업소에서 표지등(+,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2. 연립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3.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하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의 광고물 • 광고물등의 재질 및 색채 등 - 광고물의 재료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불량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간판에 지양되어야할 재료 1. 금속류를 적용할 경우 반사가 심한 재료와 마감재로서의 사용 지양 2. 돌출간판을 제외한 모든 광고물 등의 재료 및 형태에 있어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사용은 지양 -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색을 사용하되 가급적 명도 5이상 채도 4이하로, 흑색 · 적색의 사용은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동일 건물내 광고물들은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되,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C.I.P)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원색계열의 정의는 한국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기업 · 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하거나 가장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분		계획 내용
옥외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등의 형태 및 규모 등 -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 광고물 등은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 광고물등의 문자 등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 광고물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바탕 높이의 3분의 2 이내가 되도록 한다. -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 주소 · 상호 · 상표 · 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영업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광고물의 표시 면적 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광고물등의 조명연출 방법 -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네온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가로형광고물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등 (“+” ,“약“)의 경우에만 점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조명을 연출할 경우 휘도(광원의 밝기)는 낮게 유지하여 보는 사람들의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조명방식을 유도한다.
	광고물 종류별 세부 표시방법	●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벽면이용간판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축물별로 5층이하([별표2] 참조)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다.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 동일층의 벽면이용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벽면이용간판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구 분		계획 내용
옥외 광고물	광고물 종류별 세부 표시방법	벽면이용간판의 설치형식 -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식은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벽면이용간판은 도형이나 그림보다는 문자가 잘 인지되도록 구성하고, 간판의 여백이 단순한 바탕이 아니라 그림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인지되도록 디자인한다. 2. 벽면이용간판의 수량은 1업소 당 1면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와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하는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 추가 가능하다. 3.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가로폭의 80% 이내로 최대 10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단, 6m가 넘을 경우 입체형으로 설치한다. 4. 광고물의 세로크기는 입체형의 경우 80cm이내, 판류형의 경우 벽면의 80% 이내로 표시한다. 5. 광고물의 두께는 건축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제한한다. 벽면이용간판의 표기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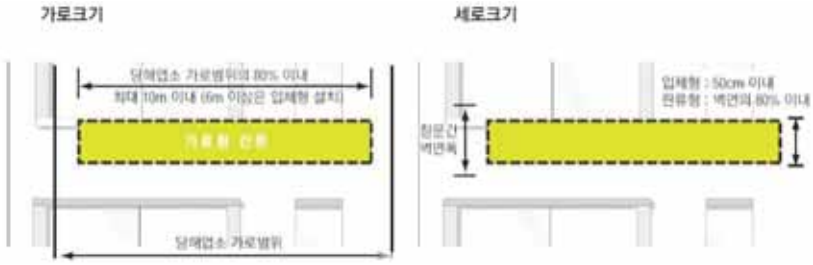 ●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건축물별로 10층이하에 설치([별표2] 참조)되어야 하며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 수부분에는 표시 불가능하다. 단, 최상층이 2층인 건물은 2층에까지 표시한다. -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1줄로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 폭이 20m이상일 경우 건물 양측단에 표시가 가능하며 소형 돌출간판은 안전을 위해 인도에만 표시하되 업소 출입구 좌, 우측 중 한곳에 1개 표시한다.

구 분		계획 내용
옥외 광고물	광고물 종류별 세부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설치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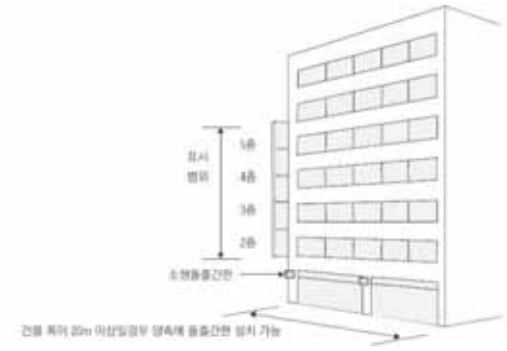 -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2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두께·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 표기내용의 전체 면적은 간판면적의 1/3 이내로 표기하고 주 표기내용의 크기는 평균 가로크기를 간판 가로크기의 1/2 이내로 표기한다. - 간판의 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표기하고 보조 표기내용의 경우 간판면적의 1/6 이내로 표기한다. 영업내용은 업종명이나 대표취급품목 1종만 표기가능하고 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은 표기 불가능하다. 돌출간판물의 표기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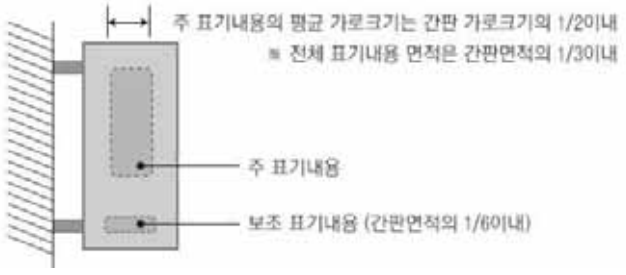 - 소형 돌출간판의 표기면적은 1면 최대 0.36㎡ 이내로 제한하며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80㎝이내로 표시하며 2개 이상의 설치시 돌출 폭을 일치시킨다. 세로크기는 건물의 1개층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지면과의 간격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2.5m 이상) 두께 30cm 이내로 표시한다. 소형돌출간판의 표기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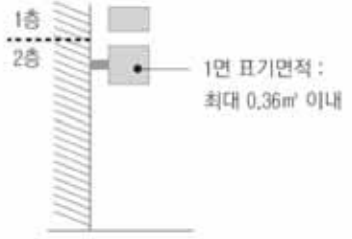

구 분		계획 내용
옥외 광고물	광고물 종류별 세부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간판은 5층 초과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우선이 되도록 디자인하고 불필요한 업소의 정보 표기는 지양하여 업소의 이미지와 관련된 중요 핵심 요소만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 지주이용간판은 시인성 확보와 통행의 보장을 위하여 건축물 주출입구 좌측 또는 우측 중 건축한계선에서 1m 이내에 1개소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전면 공지 내에 조경시설이 있을 경우 조경공간 내에 지주이용간판 설치를 허용한다. - 서체는 크기, 간격 등을 단일 건물 광고물 및 건물 단위로 조화를 유도한다. - 지주이용간판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급적 수직적인 형상 유도하고 입점 업소의 위치를 알리는 문안은 통일성을 가지도록 디자인한다. - 지주이용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1면의 면적은 5㎡ 이내로 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면적 초과가 불가피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옥외광고물 등 설치기준	• 지자체 광고물 관련 조례를 따르되, 신도시에서는 이 지침에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업소와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추가로 1개 설치가능하며, 별도로 5층 초과 건축물에 한하여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가로형 간판,돌출형 간판,지주이용 간판 등은 각각 세부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 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은 표시를 금지한다. • 현수막, 벽보 등 게시 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 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갯수를 정하여 설치한다. • 시장·군수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 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 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허가 및 신고절차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광고물등의 추가 표시방법	• 본 계획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기본방향	• 기본원칙 - 도시 야간경관은 조명을 증가시킴으로서 도시를 밝게 하는 것뿐 아니라, 과잉조명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필요 조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자연경관의 배려 및 보다 매력적인 야간경관 연출 - 상업지역은 도시의 활력과 번화함이 강조될 수 있도록 야경을 연출하고,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 단지는 상대적으로 조도를 낮추어 안정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주거환경 연출 - 주요 경관축으로부터 명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의 입지가 예상되는 지역은 야간 경관조명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문화재보호법」등을 우선 적용 • 야간경관 연출을 위한 권역구분 - 명지지구 야간경관 조명 연출을 위한 권역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A권역: 수변권역 2. B권역: 시가지권역 3. C권역: 주거권역 4. D권역: 자연·녹지권역 • 사용 빛의 선정 - 명지지구 권역별로 선정된 기본빛, 보조빛, 강조빛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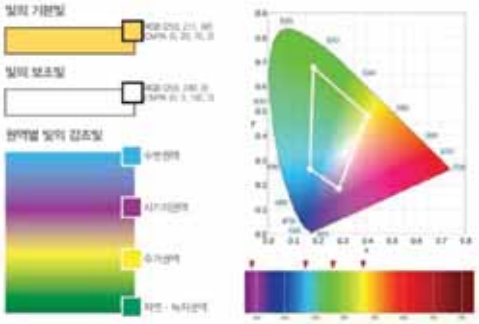
	권역별 빛의 기본방향 및 연출지침	• A권역-수변권역 - 빛의 기본방향 : 진입 경관 특성에 맞는 환영과 어울림의 빛 - 빛의 연출지침 1. 정비되고 쾌적한 조명환경 형성을 위해 계획적인 조명 배치 2. 주변 환경과의 조화된 형태와 색채의 조명기구 적용 3. 빛 공해가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야간경관 형성 4. 생태공원의 야간 안전 및 이용객을 고려한 산책로 조도 확보와 야간 랜드마크 조성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계획 내용</th></tr>
<tr><td>야간
경관</td><td>권역별 빛의
기본방향 및
연출지침</td><td>

- 경관 유형별 빛의 지침

<table>
<tr><th>녹지</th><th>수변</th><th>도로</th></tr>
<tr><td>녹지보전을 고려한
빛공해 방지</td><td>야간에도 시민들이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연출</td><td>컷오프 조명을 권장하고 도로
및 보행로를 밝혀 인지성 확보</td></tr>
<tr><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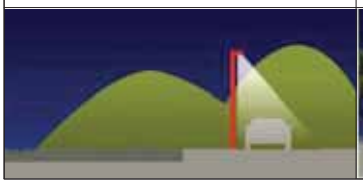 </td><td>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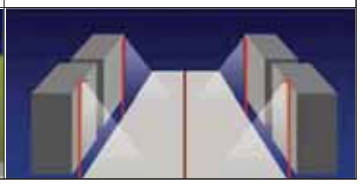 </td></tr>
</table>

- 상세 연출계획

1. 시가지권역 내의 상업·업무 시설의 고층건축물은 저층부, 중고층부, 최상부로 구분하여 조명계획을 계획하고 최상부는 스카이라인 경관 형성을 위하여 강조빛으로 연출한다.
2. 건축물의 저층부는 점포 윈도우에서 새어나가는 자연스러운 빛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밝고 활기 있는 거리 이미지를 조성한다.
3. 고층건축물 저층부 외벽은 낮은 위치의 조명 연출을 권장하고 점포의 창문을 경관화해 활기 있는 이미지를 형성한다.
4. 저층부에서 벽면 라이트업은 설치 가능하고, 상업시설의 상가 사인은 면발광 조명방식은 지양한다.
5. 시가지권역 주요 사거리는 시각이 집중되는 곳으로 적극적인 연출 방법으로 활력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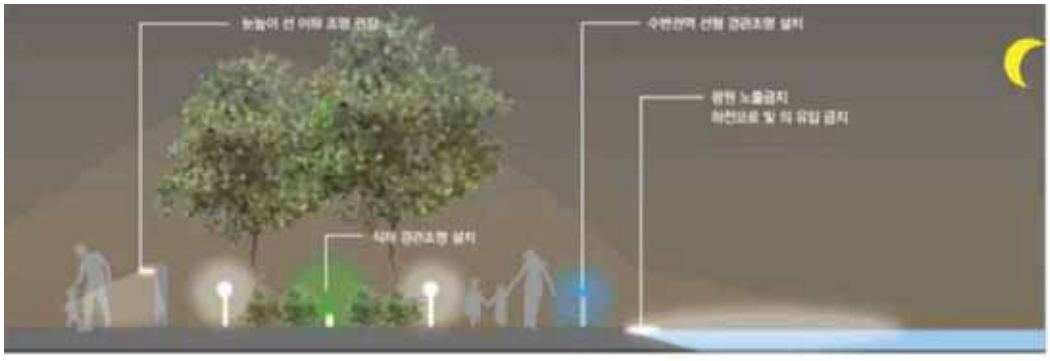

- 권장하여 사용하는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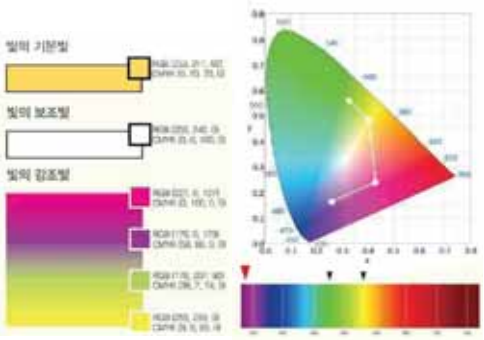

</td></tr>
</table>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권역별 빛의 기본방향 및 연출지침	

• B권역-시가지권역

- 빛의 기본방향 : 활기를 띄는 상권(상업, 업무)과 시설을 고려, 개성과 아름다움이 있는 조명 환경 조성
- 빛의 연출지침
  1. 시가지내 도로는 화려하고 활기찬 빛으로 도시의 선형을 연출하고, 안전한 야간교차로 및 보행로 조성
  2. 야간 조명은 이용자의 안전 및 도시의 야간경관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
  3. 주변의 거리나 상업지역과 조화되고 걷는 즐거움과 볼거리를 느낄 수 있는 세련된 형태의 조명기구, 색채 적용
  4. 시가지내 주요 공원은 야간 안전 및 이용객을 고려한 산책로 조도 확보
- 경관 유형별 빛의 지침

녹지	시가지 및 복합용지	도로
녹지보전을 고려한 빛공해 방지	상업중심으로 세련되고 활기찬 빛	도로 폭 및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 조명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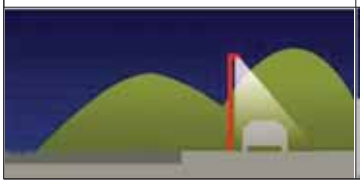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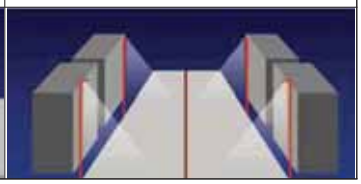

- 상세 연출계획
  1. 시가지권역 내의 상업·업무 시설의 고층건축물은 저층부, 중고층부, 최상부로 구분하여 조명계획을 계획하고 최상부는 스카이라인 경관 형성을 위하여 강조빛으로 연출한다.
  2. 건축물의 저층부는 점포 윈도우에서 새어나가는 자연스러운 빛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밝고 활기 있는 거리 이미지를 조성한다.
  3. 고층건축물 저층부 외벽은 낮은 위치의 조명 연출을 권장하고 점포의 창문을 경관화해 활기 있는 이미지를 형성한다.
  4. 저층부에서 벽면 라이트업은 설치 가능하고, 상업시설의 상가 사인은 면발광 조명방식은 지양한다.
  5. 시가지권역 주요 사거리는 시각이 집중되는 곳으로 적극적인 연출 방법으로 활력을 부여한다.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계획 내용</th></tr>
<tr><td rowspan="1">야간
경관</td><td>권역별 빛의
기본방향 및
연출지침</td><td>

- 권장하여 사용하는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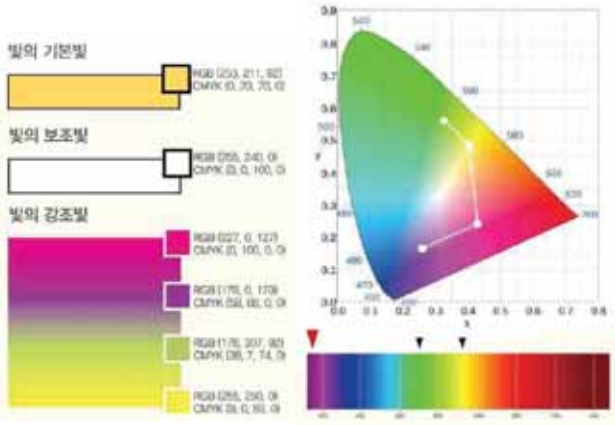

• C권역-주거권역

- 빛의 기본방향 :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주거권역으로 명지지구만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한 조명 환경 조성

- 빛의 연출지침

1. 간접광이나 은은한 조명에 의해 따스함이 있는 부드러운 빛을 내는 조명기구 및 배광 사용
2. 주변의 거리와 조화되고 일체감이 있는 차분한 형태, 모양의 조명기구 적용
3. 광원의 조도나 휘도, 색온도 등을 높이고 주거권역의 영역성을 강화
4. 조명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배치 적용

- 경관 유형별 빛의 지침

<table>
<tr><th>녹지</th><th>건축물</th><th>도로</th></tr>
<tr><td>녹지보전을 고려한
빛공해 방지</td><td>안정성을 고려한
조도 확보</td><td>도로 폭 및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 조명 배치</td></tr>
<tr><td> </td><td> </td><td> </td></tr>
</table>

- 상세 연출계획

1. 건축물 내부로 가로등 빛이 침범하여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각도를 조절하여 빛이 하늘로 향하지 않게 하고, 상층부의 경관조명 설치를 가급적 규제한다.
2. 주거지 건축물의 저층부는 거주자들의 안정성과 인지성을 위하여 진입부에 최소한의 빛으로 조명한다.
3.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시설의 저층부에 점포가 있는 경우 점포내의 빛을 경관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점포 명칭 사인은 벽면 발광 조명방식의 간판을 금지한다.

</td></tr>
</table>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권역별 빛의 기본방향 및 연출지침	 - 권장하여 사용하는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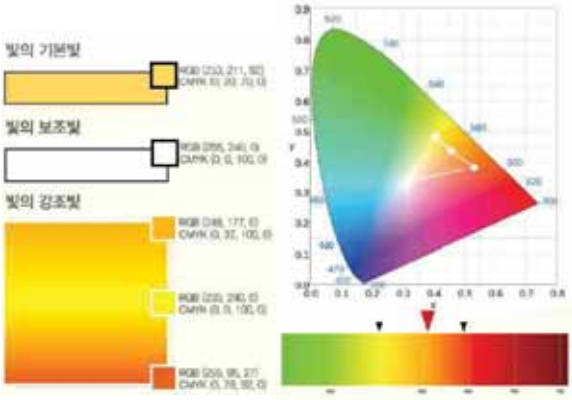 • D권역-자연·녹지권역 - 빛의 기본방향 : 생태계와 야간 보행 환경을 고려하여 자극적이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조명 환경 조성 - 빛의 연출지침 1. 주거지내 도로는 안전하고 따뜻한 빛을 연출하고, 안전한 야간 교차로 및 보행로 조성 2. 야간조명은 이용자의 안전 및 주거지의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계획 3. 주변의 자연환경과 주거지역이 조화되고, 걷는 즐거움과 볼거리를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 조명기구 및 색채 적용 4. 습지공원의 보존과 야간 안전 및 이용객을 고려하여 산책로 조도 확보 - 경관 유형별 빛의 지침

녹지	수변	주거지	도로
녹지보전을 고려한 빛공해 방지	수변으로 빛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존	주거지 중심으로 따뜻한 빛	도로 폭 및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 조명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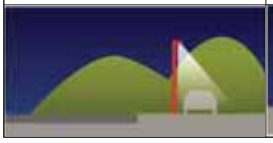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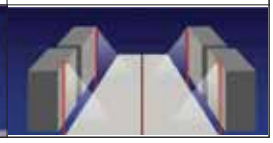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권역별 빛의 기본방향 및 연출지침	- 상세 연출계획 1. 저층 주택의 입구와 주변이 드러나게 하며 벽면 라이트업 조명을 금지하지만, 공공보행통로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조명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2. 안전 확보 가능한 최소 조도를 확보하고 필요 이상의 조명 연출은 지양하며, 눈부심(Glare)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권장하여 사용하는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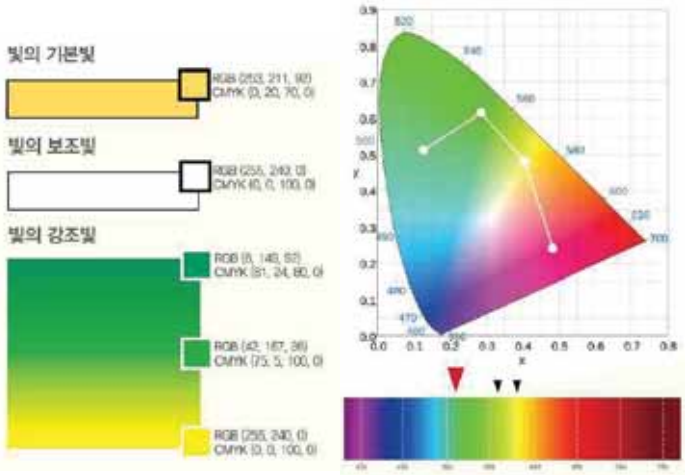
	시설물별 설계지침	● 건축물 야간경관 조명 기본원칙 - LED 조명을 제외한 직접 광원의 노출을 지양하고, 고휘도 광원일 경우 눈부심을 고려하여 후드 및 루버 등 장치를 권장한다. 1.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국부 및 간접 조명 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2. 불쾌, 글래어의 방지를 위하여 지역별 권장 휘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미관을 고려해 조명 기구 설치 시 등기구 노출과 부착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식재 및 건축물과 조화로운 조명 기구 재료와 색채를 적용하여 노출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1. 조명기구가 보일 시에는 건물 색상과 유사한 색상 혹은 재질로 마감하도록 한다. 2. 전선과 관로는 가능한 한 매입되도록 한다. 3. LED 점조명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최대 휘도치(세부 가이드라인 참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원노출이 가능하다.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시설물별 설계지침	- 건축물 외벽에 LED 조명 기구의 설치 시 매입을 권장한다. - 조명색을 이용한 연출 시 원색의 자극적 색채를 지양하고 건축물의 색채와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광원의 색상은 명지지구 기본빛으로 권장하며, 이벤트시 권역별 강조빛에 한하여 색상의 사용과 움직임이 있는 조명연출을 허용한다. 2. 이벤트시 조명색상의 사용과 연출은 심의단계에서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하여 적합성을 결정한다. - 건축물 옥탑부의 강조만을 지양하고 건축물 전체를 고려하여 빛의 단계가 조화롭게 계획한다. 1. 스카이라인 형성의 요소가 되는 건축물(20층 이상)의 상부에 대하여 경관조명을 적극 권장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단계에서 적합성을 판단하여 야간경관 조명을 계획하도록 한다. 2. 주거권역의 건축물은 직접 조명은 규제하도록 한다. - 빛의 반사를 고려하여 외벽에 의한 눈부심 및 인접 건축물로 빛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한다. - 경관조명이 적용되는 건축물 대상은 가이드라인에 권장된 대상으로 한정한다. - 건축물 및 계획 대상에 국한하여 경관조명을 계획하고 허공 등에 빛이 퍼지지 않게 고려한다. -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내구성과 수명이 긴 조명 기구와 방식을 채택하고,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 절감을 위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 건축물 고유의 조형미를 부각하는 조명연출로 공간에 대한 식별성과 개성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색상, 재질 등 디자인 성능 및 물리적성능을 고려하여 경관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 경관조명 상세계획은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건축물 조명방법과 연출효과

조명방법	연출효과
직접투광	•투광기로 대상물을 직접 조명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의 특징은 근대 건축물이나 역사적인 건조물, 탑의 형태 등 전체적인 모습을 강조할 때 사용되며 대상물의 음영이 강조되어 나타남
간접투광	•광원에서 나온 빛을 직접 공간에 투광하지 않고, 벽이나 천장등에 반사시켜서 밝기를 취하는 것으로 공 간 전체의 음영을 완화시켜 사람의 눈에 편안하고 부드러운 조명 환경을 형성
발광	•일루미네이션 장식의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외형이나 특징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음
창면의투광	•실내조명에서 창밖의 야경을 연출하여 활용하는 방법
쇼윈도투광	•폐점 후에도 점등을 통한 거리의 활기를 연출

정면투광방법

창면투광방법

발광방법

구 분		계획 내용

투광기 위치에 따른 조명특성

투광위치	연출효과	설계예시
지면	•조명기구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음 •시공이 용이함 •조명기구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못 하도록 보호커버 등이 필요함 •지중 매립형의 경우 빛이 상공으로 새어나가기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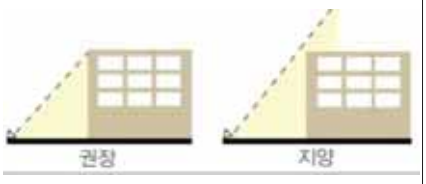
폴 기구	•빛이 사람이나 식물 등에 차단될 우려가 적음 •안정기나 배선을 폴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미관상 간결함 •많은 폴을 설치하면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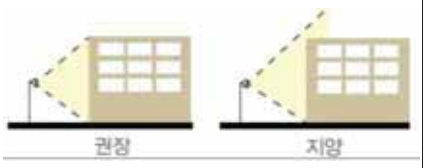
건축물벽면	•정밀한 연출이 가능함 •투광기가 벽면과 가깝기 때문에 보다 밝게 할 수 있음 •시공이 어려움 •조명기구가 노출되기 쉬움 •빛이 상공으로 새어나가기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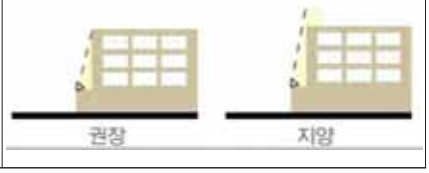

야간 경관 — 시설물별 설계지침

- 주거지역(단독주택,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 종교시설, 주차장 등)
  - 주거지역 건축물 조명 연출방향

투광위치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
연출	•중고층 주택 및 준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한 조명환경조성 •주거환경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양호한 조명환경 형성 •저층주택과 주거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밝기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존하는 조명환경을 조성 •아늑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광해가 없는 조명환경 조성	
조명방법	•공동주택의 로고나 브랜드명에 대한 과도한 조명은 지양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측벽과 함계 옥탑부분 일부를 조명하여 야간 인지성을 확보 •보행자의 시선을 고려하여 불쾌감이 없는 광원을 사용 •상가 내부 조명을 활용하거나 중저층부의 경관 조명 설치를 통하여 조명 연출	•지역의 공공건축물로서 야간에도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명방법 사용 •옥탑조명이나 상향조명 등누광되는 빛을 방지하여 연출하는 조명기구를 권장
조명기구	•노출되는 조명기구는 지양하고 매입형 또는 간접조명방식의 조명 기구 권장 •조명기구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권장	•부드럽고 불쾌감을 주지 않는 기구 권장 •주간경관을 고려하여 노출되지 않고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고려한 조명기구를 선정
악세서리	루버 및 후드 설치 권장	루버 및 후드 설치 권장
휘도대비	1:3 ~ 1:5	1:3 ~ 1:5
컬러연출	컬러연출 일부허용 (보색대비 제외)	컬러연출 일부허용 (보색대비 제외)
연출속도	느린 연출속도 일부허용, 점멸금지	느린 연출속도 일부허용
기타사항	23시 이후는 소등	23시 이후는 소등
최대휘도 / 평균휘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구역별 최대 및 평균휘도 준수 (조명환경관리구역 전에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을 근거로 적용 가능)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 시설물별 설계지침

- 주거지역 조명연출 설계지침

구분	내용
빛방사 허용기준	•휘도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서 제시된 조명환경 관리구역별 제1종~제4종에 맞는 휘도수치(아래표)를 기준으로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전에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을 근거로 적용 가능)
빛공해	•(누출광) 조명설계시 조명대상 외로 새는 빛에 의한 누출광이 발생하지 않는 조명 연출을 한다.
	•(침입광) 조명연출로 인한 침입광 및 주거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안전성	•출입구의 계단 및 입구주변에 조명을 설치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보행동선에는 볼라드 타입 조명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조명연출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간대별 조명계획을 제시한다.
	•직접적인 광원의 노출,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는 조명기구의 노출을 지양한다.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현란하고 빠른 빛의 움직임(색상, 밝기, 점멸 등)을 지양한다.
	•건축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색상은 지양한다.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조명은 지양하고 건축물의 밝기가 조화로워야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빛방사 허용기준(영제2조 제3호의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상업지역(상업시설, 업무시설, R&D 용지, 주차장 등)
  - 상업지역 건축물 조명 연출방향

투광위치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
연출	•상업 및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안전하고 기능성이 높은 조명환경 조성 •주변 상업지역과 조화되는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	
조명방법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측벽과 함께 옥탑부분 일부를 조명하여 야간 인지성을 확보 •상가 내부 조명을 활용하거나 중저층부의 경관 조명 설치를 통하여 조명 연출	•상업기능 및 업무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명기구의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조명방식 사용
조명기구	•노출되는 조명기구는 지양하고 매입형 또는 간접조명방식의 조명 기구 권장	•1kw 이상의 투광기는 특정대상 이외에는 사용을 지양 •주변과 조화되는 조명기구 사용
악세서리	루버 및 후드 설치 권장	루버 및 후드 설치 권장
휘도대비	1:3 ~ 1:7	1:3 ~ 1:7
컬러연출	컬러연출 일부허용 (보색대비 제외)	컬러연출 일부허용 (보색대비 제외)
연출속도	빠른 컬러 변환조명 자제	빠른 컬러 변환조명 자제
기타사항	상업지역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점등시간 허용	상업지역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점등시간 허용
최대휘도 / 평균휘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구역별 최대 및 평균휘도 준수 (조명환경관리구역 전에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을 근거로 적용 가능)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 시설물별 설계지침

- 상업지역 조명연출 설계지침

구분	내용
빛방사 허용기준	•휘도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서 제시된 조명환경 관리구역별 제1종~제4종에 맞는 휘도수치(아래표)를 기준으로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전에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을 근거로 적용 가능)
빛공해	•(누출광) 조명설계시 조명구역 밖으로 새는 빛에 의한 누출광이 발생하지 않는 조명 연출을 한다.
	•(침입광) 조명연출로 인한 침입광 및 주거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눈부심) 보행시 눈부심 등의 영향을 고려한다.
안전성	•하부 보행공간 조도확보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조명연출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간대별 조명계획을 제시한다.
	•일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활성화 및 이용객들을 감안, 영업종료 후 쇼윈도우 점등을 검토한다. (하부 필로티 및 상가를 이용하여 저층부 야간경관 조성 등)
	•직접적인 광원의 노출,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는 조명기구의 노출을 지양한다.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현란하고 빠른 빛의 움직임(색상, 밝기, 점멸 등) 지양한다.
	•건축물의 색채, 재질, 형태 등의 특성을 고려한 연출을 권장한다.
	•조명기구가 외부에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조명기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빛방사 허용기준(영제2조 제3호의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참고사항] 건축물 세부연출 계획

<예시 1>

<예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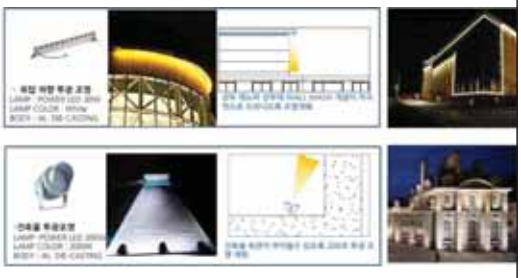

<예시 3>

<예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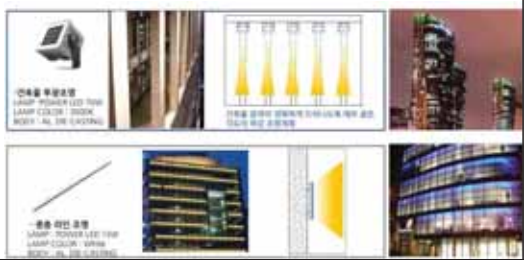

구 분		계획 내용

<예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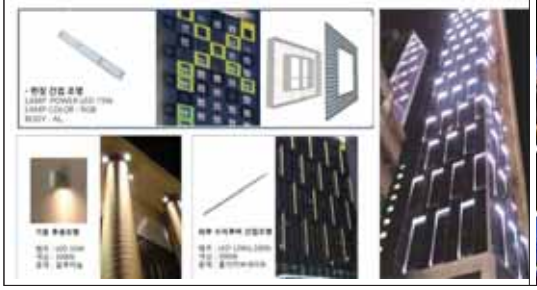

[건축물 연출사례]

야간 경관 — 시설물별 설계지침

● 도로 야간경관 조명 설계지침

■ 도로 야간경관 조명 기본원칙

- 상징적이고 도시의 골격을 나타내는 도로로서 축을 드러나게 하여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빛을 연출
- 주광원은 LED,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사용하여 안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지역은 빛의 산란이 적은 장파장 대역의 나트륨램프 권장
- 차도부 가로등은 직하 방식의 조명기구 권장한다.
  1. 가로등의 높이와 반사판의 다양화 등으로 도로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있는 가로등 설계
  2. 도로조명으로 인하여 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향으로 확산이 제어되는 Cut-off 방식의 조명기구 사용
  3. 가로수의 밀집도로의 경우 Arm 형태의 Pole을 사용하여 수목으로 인한 조도 감소가 없어야 함
- 가로등 조명이 주변 녹지 및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도로 조명은 도로의 종류에 따른 연출방향을 준수하여, 평균 조도뿐 아니라 균제도도 확보되어야 한다.
  1. 도로의 교차점은 주변보다 밝게 하여, 빛으로 강조되도록 한다.
  2. 도로의 기능, 목적에 따라 효율과 연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규모별 도로 구분

구분	세부항목	내 용
광로	1류	폭 70m 이상인 도로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인 도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인 도로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인 도로
	3류	폭 25m 이상 30m 미만인 도로

구분	세부항목	내 용
중로	1류	폭 20m 이상 25m 미만인 도로
	2류	폭 15m 이상 20m 미만인 도로
	3류	폭 12m 이상 15m 미만인 도로
소로	1류	폭 10m 이상 12m 미만인 도로
	2류	폭 8m 이상 10m 미만인 도로
	3류	폭 8m 미만인 도로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시설물별 설계지침	

- 광로·대로 조명 연출방향

구분		내용	비고
권장광원		LED광원 (노면휘도 확보를 위해 메탈할라이드램프 적용 가능)	안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지역 LED, 나트륨램프 등
색온도		3,000K ~ 5,000K(권장)	지역별로 차등 적용 가능
폴높이		8~12m(권장)	폴 간격은 노면 기준에 맞추어 설정 (도로에 따라 높이 변동가능)
조명방식		Cut-off, Semi Cut-off(권장)	
최대허용 상향광등급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라 적용	
노면	노면평균 휘도	1.0 cd/㎡	KS A 3701 기준 근거 (도로조명등급 M3기준, 도로조명등급에 따라 적용 가능)
	종합 균제도	0.4 이상	
	차선축 균제도	0.6 이상	
	눈부심 기준	15 이하	

(광로 및 대로 조명 적용 예시)

- 중로 조명 연출방향

구분		내용	비고
권장광원		LED광원	안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지역 LED, 나트륨램프 등
색온도		3,000K ~ 4,000K(권장)	지역별로 차등 적용 가능
폴높이		8~10m(권장)	폴 간격은 노면 기준에 맞추어 설정 (도로에 따라 높이 변동가능)
조명방식		Cut-off(권장)	
최대허용 상향광등급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라 적용	
노면	노면평균 휘도	1.0 cd/㎡	KS A 3701 기준 근거 (도로조명등급 M3기준, 도로조명등급에 따라 적용 가능)
	종합 균제도	0.4 이상	
	차선축 균제도	0.6 이상	
	눈부심 기준	15 이하	

(중로 조명 적용 예시)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계획 내용</th></tr>
<tr><td>야간
경관</td><td>시설물별
설계지침</td><td>

- 소로 조명 연출방향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
<tr><td colspan="2">권장광원</td><td>LED광원</td><td>안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지역
LED, 나트륨램프 등</td></tr>
<tr><td colspan="2">색온도</td><td>3,000K ~ 4,000K(권장)</td><td>지역별로 차등 적용 가능</td></tr>
<tr><td colspan="2">폴높이</td><td>6~8m(권장)</td><td>폴 간격은 노면 기준에
맞추어 설정
(도로에 따라 높이
변동가능)</td></tr>
<tr><td colspan="2">조명방식</td><td>Cut-off(권장)</td><td></td></tr>
<tr><td colspan="2">최대허용
상향광등급</td><td>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라 적용</td><td></td></tr>
<tr><td rowspan="4">노면</td><td>노면평균
휘도</td><td>0.75 cd/㎡</td><td rowspan="4">KS A 3701 기준 근거
(도로조명등급 M3기준,
도로조명등급에 따라
적용 가능)</td></tr>
<tr><td>종합
균제도</td><td>0.4 이상</td></tr>
<tr><td>차선축
균제도</td><td>0.6 이상</td></tr>
<tr><td>눈부심
기준</td><td>15 이하</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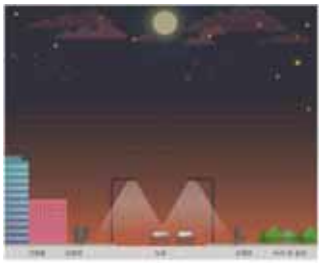
(소로 조명 적용 예시)

- 보행로 조명 연출방향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
<tr><td>권장광원</td><td>LED광원</td><td>안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지역
LED, 나트륨램프 등</td></tr>
<tr><td>색온도</td><td>3,000K ~ 5,000K(권장)</td><td>지역별로 차등 적용 가능</td></tr>
<tr><td>폴높이</td><td>4~6m(권장)</td><td>폴 간격은 노면 기준에 맞추어 설정
(도로에 따라 높이 변동가능)</td></tr>
<tr><td>조명방식</td><td>Cut-off, Semi Cut-off</td><td>확산형 광원을 필요한 지역에 따라 한정 적용</td></tr>
<tr><td>최대허용
상향광등급</td><td>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라 적용</td><td>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전에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을 근거로 적용 가능</td></tr>
<tr><td>주거지역 연직면 조도</td><td>10lx이하</td><td>빛공해방지법</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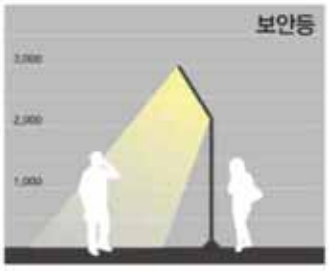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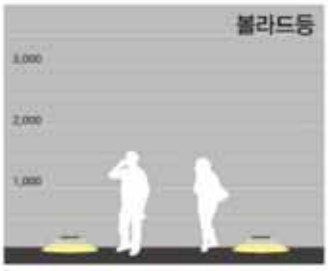

</td></tr>
</table>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시설물별 설계지침	

- 도로 조명연출 설계지침

1.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 조명연출 설계는 아래표를 참고한다.

구분	내용
도로 휘도기준	•도로등급에 다른 평균노면휘도, 종합균제도, 차선축균제도, 눈부심지수 최대허용치를 만족하여야 한다.(아래표 기준)
빛방사 허용기준	•가로등에 의한 주거지 침입광의 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제3종10lx 이하, 제4종 25lx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전에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을 근거로 적용 가능)
빛공해	•(누출광) 조명설계시 도로 밖으로 새는 빛에 의한 누출광이 발생하지 않는 조명연출을 한다. •(상향광) 가로등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상향광등급(U등급)을 갖는 가로등을 사용하고 상향광 등급에 따른다.
안전성	•도로의 가로수가 도로 가로등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암(Arm) 형태의 폴을 사용하여 수목에 의한 빛의 감소가 없도록 한다. •도로의 교차로 및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변보다 밝게 계획하여 빛을 강조한다. •운전자의 시야에 직접적인 눈부심 발생 우려가 있는 조명은 충분한 검토 후에 적용한다.
조명 연출	•권장 광원은 광로, 대로, 중로, 소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색온도는 지역의 특성 및 도로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등기구의 설치 높이 및 간격에 따라 계획한다. •조명기구 형태 및 재질, 색상이 주간 및 야간환경에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주변 공공시설물과 연계성 고려) •신규 가로등 설치 시 도로광학성능 검토서를 작성한다.

조명기준의 차별화 방안

구분	평균노면휘도 (최소허용치, cd/㎡)	휘도 균제도(최소허용치)			눈부심지수 최대허용치 (%)
		마름		젖음	
		종합균제도(U0)	차선축균제도(U1)	종합균제도(U0)	
M1	2.00	0.40	0.70	0.15	10
M2	1.50	0.40	0.70	0.15	10
M3	1.00	0.40	0.60	0.15	15
M4	0.75	0.40	0.60	0.15	15
M5	0.50	0.35	0.40	0.15	1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빛방사 허용기준(영제2조 제3호의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조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0.4	10이하			25이하	lx(lm/㎡)

조명기구의 상향광 등급(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구분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최대 허용 상향광 등급(U등급)	U0	U1	U2	U3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시설물별 설계지침	2. 보행로 조명연출 설계는 아래표를 참고한다.

구분	내용
조도기준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평균노면조도는 교통량에 따라 주택지역 3~5lx, 상업지역, 10~20lx를 만족하여야 하며, 균제도는 0.15를 만족하여야 한다.
빛방사 허용기준	•보안등에 의한 주거지 침입광의 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제3종은 10lx 이하, 제4종 25lx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전에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을 근거로 적용 가능)
빛공해	•(누출광) 조명설계시 보행로 밖으로 새는 빛에 의한 누출광이 발생하지 않는 조명연출을 한다. •(상향광) 보안등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상향광 등급(U등급)을 갖는 보안등을 사용하고 상향광 등급에 따른다.
안전성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은 조명설치를 추가하고 충분한 밝기를 확보하여 안전성을 고려한다. •수평면 조도와 연직면 조도의 조도대비가 크지 않도록 한다.
조명 연출	•LED 램프 사용을 권장한다.(에너지절감 등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명을 지양한다.) •색온도는 지역의 특성 및 도로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폴 높이는 4m에서 6m까지 설정하며, 폴 간격은 노면조도기준에 맞추어 설정한다. •컷오프 또는 세미컷오프형 조명기구를 권장한다. •보행등 디자인에 과도한 상징표시나 디자인은 지양한다.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자료

야간 보행자 교통량	지역	조도(lx)	
		평균노면조도	균제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택지역	5	0.15
	상업지역	20	
교통량이 적은 도로	주택지역	3	
	상업지역	1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빛방사 허용기준(영제2조 제3호의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조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0.4	10이하			25이하	lx(lm/㎡)

조명기구의 상향광 등급(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구분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최대 허용 상향광 등급(U등급)	U0	U1	U2	U3

- 오픈스페이스(공원, 광장 등) 야간경관 조명 설계지침
  - 오픈스페이스 야간경관 조명 기본원칙

    1. 생태보전지역 등에는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여 조명 사용을 최소화한다.
    2. 수변가 주변의 공원 및 광장의 조명기구는 염분에 강한 마감재를 활용한다.
    3. 하천 주변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방진방수(IP:Ingress Protection) 등급 및 도장의 마감처리를 고려하여 기구를 선정한다.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계획 내용</th></tr>
<tr><td>야간
경관</td><td>시설물별
설계지침</td><td>

4. 수목의 수형에 따른 조명기구 배치 및 연출로 대상물 외부로 새어나가는 빛을 최소화한다.
5. 연출하고자 하는 수목 부분에 따라 조명기구 배광 및 설치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6. 공원 내부에 조성되어 있는 파고라 및 벤치를 활용한 조명 연출을 권장한다.

수목의 조명연출방법 예시

<table>
<tr><th>구분</th><th>Wall Wash 조명</th><th>Moonlighting 조명</th><th>Up light 조명</th></tr>
<tr><td>조명연출
예시</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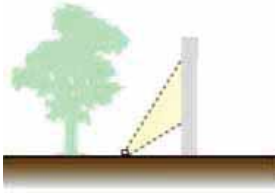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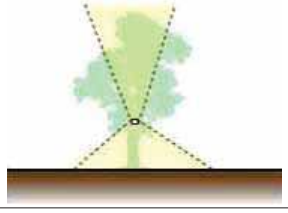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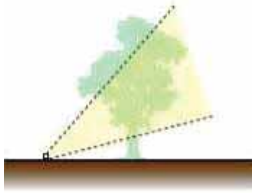 </td></tr>
<tr><td>연출특징</td><td>수목의 실루엣 표현을 통해
다이나믹한 연출 가능</td><td>달빛의 효과를 연출하여
업다운라이팅에 모두 사용</td><td>수목의 상부를 강조하며,
루버 등을 사용하여
눈부심을 방지</td></tr>
</table>

- 오픈스페이스 야간경관 조명 연출방향

<table>
<tr><th>기본방향</th><th>공간별 테마를 부여하고 다양하고 이색적인 야간경관 연출</th></tr>
<tr><td>지침</td><td>

•공원의 이용행태, 기능,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명계획 수립
•수평면 조도를 고려하여 공원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상물의 인지가 용이하도록 계획
•KS A 3011 조도기준 준수

<table>
<tr><th>구분</th><th>장소</th><th>권장조도(lx)</th></tr>
<tr><td rowspan="2">건물</td><td>입구</td><td>30 - 40 - 60</td></tr>
<tr><td>통로</td><td>30 - 40 - 60</td></tr>
<tr><td rowspan="2">공원</td><td>전반</td><td>6 - 10 - 15</td></tr>
<tr><td>주된 장소</td><td>15 - 20 - 30</td></tr>
<tr><td rowspan="4">정원</td><td>길, 집밖, 층계</td><td>6 - 10 - 15</td></tr>
<tr><td>나무, 꽃밭, 석조 정원</td><td>30 - 40 - 60</td></tr>
<tr><td>배경-관목, 나무, 담장</td><td>15 - 20 - 30</td></tr>
<tr><td>전반 조명</td><td>3 - 4 - 6</td></tr>
</table>

•루버 및 악세서리를 이용하여 눈부심을 조절
•수목 배치계획과 주변 상황에 맞는 조명방식을 채택
•과도한 조명에 의한 에너지 낭비, 이산화탄소 배출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35~150W 이하로 설치
•수목이 밀집된 장소는 수목 투사등에 의한 연출 권장
•벌레 유인성을 고려한 조명기구를 선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 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적용

</td></tr>
</table>

</td></tr>
</table>

구 분		계획 내용

야간경관 | 시설물별 설계지침

- 오픈스페이스 조명연출 설계지침

구분	내용
조도기준	•조도기준은 KS A 3011 권장조도기준을 준수한다.
빛방사 허용기준	•공원 및 광장 조명에 의한 주거지 침입과의 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3종 10lx 이하, 제4종 25lx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전에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을 근거로 적용 가능)
빛공해	•(누출광) 조명설계시 조명대상 외로 새는 빛에 의한 누출광이 발생하지 않는 조명 연출을 한다 •(상향광) 공원 및 광장 조명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별로 상향광 등급(U등급)을 갖는 가로등을 사용하고 상향광 등급에 따른다.(수목조명 및 볼라드, 지중등 제외)
안전성	•공원의 산책로 및 기타 녹지 내의 산책로 등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조명설계에 반영한다. •얼굴 인식이 가능하도록 연직면 조도 및 연색성을 고려한 램프를 권장한다.
조명 연출	•LED 램프 사용을 권장한다.(에너지절감 등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명을 지양한다.) •공원 및 광장의 점등 시간은 지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색온도는 공원 및 광장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IP 지수 및 도장의 마감처리를 고려하여 기구를 선정한다. •컷오프 조명기구를 권장한다. •주변환경 및 주변과 조화되는 조명기구를 권장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빛방사 허용기준(영제2조 제3호의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조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0.4	10이하			25이하	lx(lm/㎡)

조명기구의 상향광 등급(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구분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최대 허용 상향광 등급(U등급)	U0	U1	U2	U3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조명 설계지침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기본원칙
    1.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을 참고한다.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조명 설계지침
  -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 조명 기본원칙
    1. 미디어 경관조명의 설치방식은 직접광에 의한 조명방식과 스크린으로 여과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미디어 경관조명의 콘텐츠는 예술작품(수준)으로 작품성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적용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시설물별 설계지침	3. 콘텐츠는 가로경관 및 공공장소의 기능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에 그 내용이 중요함으로 단순한 홍보 및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4. 콘텐츠의 내용의 적합성은 심의 또는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공공성과 상업성의 내용과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며, 내용과 연출에 대한 가상동영상을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5. 미디어 경관조명 상세계획은 위원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6. 고층건물이 집중되어 있는 복합시설이나 중심 상업업무공간을 중심으로 상징적 미디어 경관조명 연출을 집중시켜 도시의 야간 랜드마크로 활용하되, 미디어 경관조명의 선도적 권장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 조명 연출방향 구분 / 내용 하드웨어: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미디어파사드를 향한 조망특성을 고려 •빛공해를 고려하여 조명기구 및 설치위치 등을 선정 소프트웨어: •콘텐츠는 창의적 디자인을 존중하고 주변 여건에 맞는 내용으로 계획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제작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계획 내용</th></tr>
<tr><td rowspan="2">야간
경관</td><td>시설물별
설계지침</td><td>

- 미디어파사드 조명연출 설계지침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빛방사
허용기준</td><td>•공원 및 광장 조명에 의한 주거지 침입과의 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3종 10lx 이하, 제4종 25lx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전에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을 근거로 적용 가능)</td></tr>
<tr><td>빛공해</td><td>•(휘도) 휘도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누출광) 주거지 및 주변 건축물 등 미디어파사드 조명의 영향을 최소화 한다.
•(장해광) 주변 건축물의 높이 등에 따라 미디어파사드의 설치 위치 및 크기는 가로 및 건축물 주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td></tr>
<tr><td>조망성</td><td>•보행자 측면에서 시야각을 고려하여 조망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하여 설치한다.</td></tr>
<tr><td>조명
연출</td><td>•차량 등 교통안전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연출한다.
•기술적 효율이 높은 조명설비의 사용으로 전력소비를 최소화한다.
•미디어파사드의 콘텐츠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미지의 노출을 지양한다.
•미디어파사드의 콘텐츠는 예술작품(수준)으로 작품성 있게 제작 연출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외부 환경과 훼손 등에 대한 내구성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다.</td></tr>
</table>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빛방사 허용기준(영제2조 제3호의 조명기구)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적용시간</th><th rowspan="2">기준값</th><th colspan="4">조명환경관리구역</th><th rowspan="2">단위</th></tr>
<tr><th>제1종</th><th>제2종</th><th>제3종</th><th>제4종</th></tr>
<tr><td rowspan="2">발광표면
휘도</td><td rowspan="2">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td><td>평균값</td><td colspan="2">5이하</td><td>15이하</td><td>25이하</td><td rowspan="2">cd/㎡</td></tr>
<tr><td>최대값</td><td>20이하</td><td>60이하</td><td>180이하</td><td>300이하</td></tr>
</table>

</td></tr>
<tr><td>행정사항</td><td>

● 야간조명의 강화
- 야간의 보행밀도가 높은 상업지역 주변은 보행등 겸 벤치·볼라드를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 상업지역내 간선도로와 면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 수목, 보도바닥)에 조명을 투사하여 야간 경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 설치계획서(옥외광고물 포함), 조명기구사양서, 점등계획서, 유지 및 관리계획서, 조도·휘도 분포도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 사후관리
- 택지 준공,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승인권자에게 야간경관을 설치한 전경 사진 등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한다.
- 개보수 등으로 시설물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고 공사시행자는 시설물 설치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td></tr>
</table>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권장용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1	복합1	주거, 상업복합시설	70,087.0	-	70,087.0	
특2	복합2	주거, 상업복합시설	57,652.4	-	57,652.4	
특3	복합3-1	주거, 상업복합시설 등	51,769.6	-	51,769.6	
	복합3-2	업무시설 등	4,525.8	-	4,525.8	
	복합3-3	호텔, 컨벤션 등	6,250.8	-	6,250.8	
특4	복합4	주거, 상업복합시설	16,632.9	-	16,632.9	
특5	복합5	백화점 등	97,694.0	-	97,694.0	
특6	복합6	주거, 상업복합시설	17,293.5	-	17,293.5	
특7	외교	외국교육기관	54,180.0	-	54,180.0	
특8	의2	의료관련 복합시설	64,370.0	-	64,370.0	
특9	B11	주거시설	60,598.0	-	60,598.0	공동주택
특10	B13	주거시설	41,096.0	-	41,096.0	공동주택
특11	B14	주거시설	63,809.0	-	63,809.0	공동주택
특12	B15	주거시설	66,166.0	-	66,166.0	공동주택
특13	B17	주거시설	41,777..0	-	41,777..0	공동주택

나.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5">특1
특2
특3

특4
특6</td><td rowspan="15">복합1
복합2
복합3-1
복합3-2
복합3-3
복합4
복합6</td><td rowspan="3">용도</td><td>권장</td><td colspan="2">• 주상복합건축물 등</td></tr>
<tr><td rowspan="2">허용</td><td colspa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창고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td></tr>
<tr><td rowspan="5">규모</td><td>건폐율</td><td colspan="2">60% 이하</td></tr>
<tr><td rowspan="2">용적률</td><td>복합1,2,4,6</td><td>800% 이하</td></tr>
<tr><td>복합3</td><td>1,000% 이하</td></tr>
<tr><td rowspan="2">높이</td><td>복합1,2,4,6</td><td>30층 이하</td></tr>
<tr><td>복합3</td><td>40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colspan="2">•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비 고</td><td colspan="2">•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복합용지를 20층 이상으로 계획시 조류충돌방지대책 수립(외장 유리창에 조류충돌방지 스티커 부착 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td></tr>
</table>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5	복합5	용도	권장	• 백화점 등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창고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4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비고		• 복합용지를 20층 이상으로 계획시 조류충돌방지대책 수립(외장 유리창에 조류충돌방지 스티커 부착 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7	외교	용도	권장	• 외국 교육기관
			허용	• 교육연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5층 / 10층 / 2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배치 및 건축선		-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8	의2	용도	권장	• 복합의료시설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의료시설 • 창고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 관광휴게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2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9 특10 특11 특12 특13	B-11 B-13 B-14 B-15 B-17	용도	허용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세대수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단,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함)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 제2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판매시설 중 나목·다목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럭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주거동의 길이제한 - '주거동의 길이' 라함은 건축물 각 1개층의 호수 및 길이를 말한다. - 4호이하로 한다. -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ㅁ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 • 담장, 계단 -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지붕 및 옥탑 - 건축물의 지붕은 조형적 디자인으로 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저감방안 인 이격거리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며, 위치 및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색 채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다. 특별계획구역 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특1 특2 특3 특4 특5 특6 특7 특8 특9 특10 특11 특12 특13	복합1 복합2 복합3 복합4 복합5 복합6 외교 의2 B-11 B-13 B-14 B-15 B-17	교통처리계획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주차장의 설치 - 특별계획구역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주차는 비상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10%이내 범위에서 허용하며, '투수성포장'으로 함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권장) -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거 생태면적률 30%이상 확보 ※ 생태면적률 = $\frac{\text{자연순환 기능 면적}}{\text{전체 대상지 면적}} = \frac{\Sigma(\text{공간유형별 면적} \times \text{가중치})}{\text{전체 대상지 면적}} \times 100(\%)$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기정,변경)도(S=1/5,000)

- 별첨 1-마